

총괄

2019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목 차

2019년 지역사회
통합건강검진사업 안내

제1장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개요	1
제1절	사업개요	3
1.	의의 및 특성	3
2.	사업목적	4
3.	기본방향	5
제2절	추진체계	7
1.	사업 추진체계	7
2.	사업 수행절차	8
제3절	사업 범위	10
1.	시·군·구(기초지방자치단체) 사업	10
2.	시도(광역자치단체) 사업	14

제2장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17
제1절	사업 운영 일정	19
제2절	사업계획 수립	20
1.	계획업무 추진개요	20
2.	사업목표(성과지표) 수립방법	22
3.	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26
제3절	사업평가	28
1.	성과관리	28
2.	평가업무 추진개요	30
3.	평가체계	31
4.	평가방법	34
5.	평가활용	35
6.	평가업무 수행절차	36

목 차

2019년 지역사회 통합건강검진사업 안내

제3장 행정사항	37
제1절 조직 및 인력	39
1. 보건소 조직구성	39
2. 인력의 채용	40
제2절 예산편성 및 유의사항	41
1.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41
2. 사업비 편성 유의사항	43
제3절 사업 관리	45
1. 계획보고	45
2. 사업운영 현황보고	45
3. 결과보고	46
제4절 교육	47
1. 배경 및 추진방법	47
2. 2019년 교육	49
3. 교육훈련기관 교육운영 및 결과보고	52
4.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정보시스템 활용	56
제5절 개인정보보호 안내	58
1. 기본원칙	58
2. 개인정보 보호 필수조치사항	58
3.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59

제4장 관련서식 61

제1절 시·군·구 계획서 작성 서식	63
제2절 시·군·구 결과보고서 작성 서식	72
제3절 시도 계획서 작성 서식	82
제4절 시도 평가보고서 작성 서식	85
제5절 2019년 평가지표 및 지표설명	90
제6절 서비스 참여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99

제5장 부록 103

부록1. 사업영역별 설명서	105
부록2. 사업방법	138
부록3. 핵심성과지표 정의서	147
부록4. 목표치 설정 방법	152
부록5.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가이드라인	154
부록6. 담당자 연락처	174

제1장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개요

- 03 제1절 사업개요
- 07 제2절 추진체계
- 10 제3절 사업 범위

제 1 절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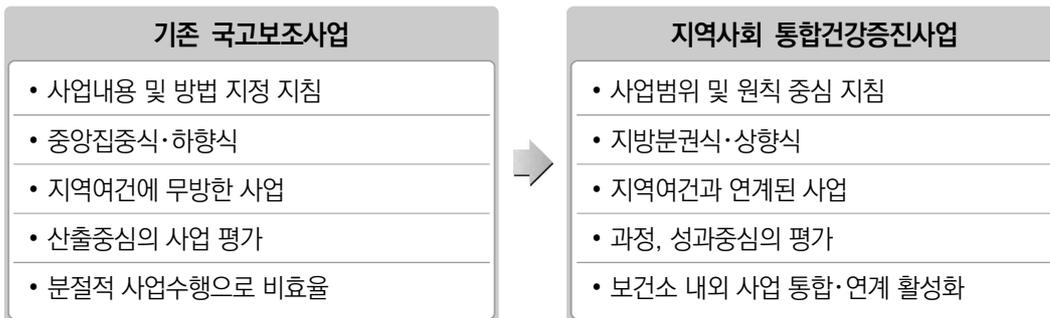
제 1 장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개요

01 의의 및 특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의의

- 지자체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을 기획·추진하는 사업
- 사업 영역은 금연, 음주폐해예방(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예방관리, 구강보건, 심뇌혈관 질환예방관리, 한의약건강증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여성어린이특화, 치매관리, 지역사회 중심재활, 방문건강관리로 구성
- 사업 영역 간 경계를 없애고, 주민 중심으로 사업을 통합·협력하여 수행할 것을 권장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특성



02 사업목적

- ✦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및 건강행태 개선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하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목표 달성
 - 지역별 다양한 특성과 주민 요구와 연계되는 건강증진사업 개발
- ✦ 사업 비전 및 전략



03 기본방향

가. 건강증진사업 통합 및 재편성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

- ❖ 보건소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부합하도록 사업구조 재편성
- ❖ 사업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을 건강영역별 또는 생애주기별로 통합 구성하여 다양한 전략 활용
- ❖ 지역사회 자원과 포괄적 연계·협력을 통한 대상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나.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 ❖ 지자체가 재원의 용도 및 세부내역을 자율적으로 설계·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
- ❖ 지역사회 건강문제 및 특성에 따라 우선순위 사업영역 선정 및 사업량 선택의 자율적 운영

다. 지자체의 책임성 제고

- ❖ 사업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자체 스스로 관리·감독 역할 강화
- ❖ 사업기획, 운영, 평가과정에서 지자체의 자발적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관리체계 운영

2019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방향

• **중장기적 방향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 건강환경 및 국가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설계한 지역사회 차원의 중장기 목표 및 추진방향(지역보건으로 계획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실정에 부합하는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사업성과를 반영한 예산배분**

- 지역 특성, 주민 요구 외 사업성과, 집행률 등을 반영한 예산배분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사업 기획 추진**

- 지역의 건강현황 및 특성에 따라 사업을 계획하며, 내·외부 자원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
- 지역사회 주민참여 사업, 지역사회 자원 연계협력 사업(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의료기관 등), 생활터(학교, 직장, 경로당 등) 및 생애주기별 사업 등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요구를 반영한 사업 발굴·추진 강화
-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개인, 개인 간, 조직/환경, 지역사회, 정책 수준 등)을 고려한 협력적, 참여적 전략 수립 권장

•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체계 강화**

- 사업운영 모니터링 및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과정을 보다 내실화하여 자발적 발전 도모
- 시도 및 시도 지원단 등을 통한 전문적 모니터링 기능 강화로 지역밀착형 성과관리 지원 체계 확립
- 시도 평가결과 우수기관 뿐 아니라 개선기관에까지 포상기회 확대로 지자체의 자발적 활성화 계기 마련

• **교육 운영 관리 내실화**

- 건강증진인력의 역량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체계화된 교육 운영 관리 강화 및 교육과정 내실화
- 교육이수를 달성 여부는 예산배분, 표창, 국외연수 등 사업관리에 반영 계획

• **통합적 서비스 제공과 예산의 별도 관리**

-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서비스, 방문건강관리, 모바일 헬스 케어의 경우 단독 사업이거나 각 영역이 주된 사업내용을 차지하는 경우 해당 영역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집행
 - *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서비스, 방문건강관리, 모바일 헬스케어의 경우 예산 편성, 집행, 정산보고 사항은 별도 관리
- 각 사업 추진 시 대상자 중심 통합서비스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타 영역과 연계·협력하여 추진
- 치매 영역 또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타 영역과 연계·협력하여 추진
 - 치매 영역은 치매안심센터 예산 집행을 원칙으로 하되, 치매 감별검사(혈액 검사, 뇌 영상 촬영 등) 비용에 대해서는 '치매안심센터' 또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집행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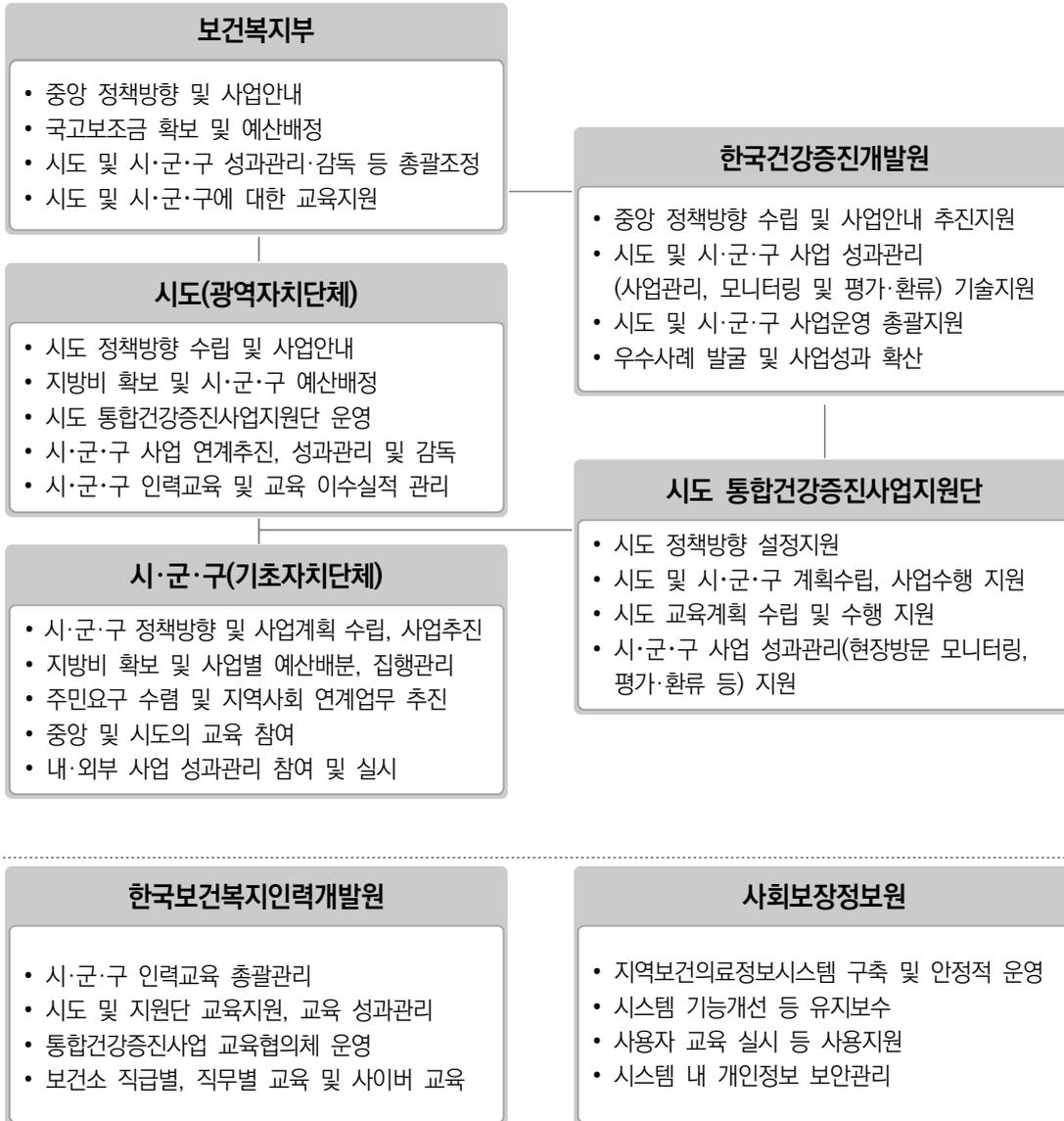
제 2 절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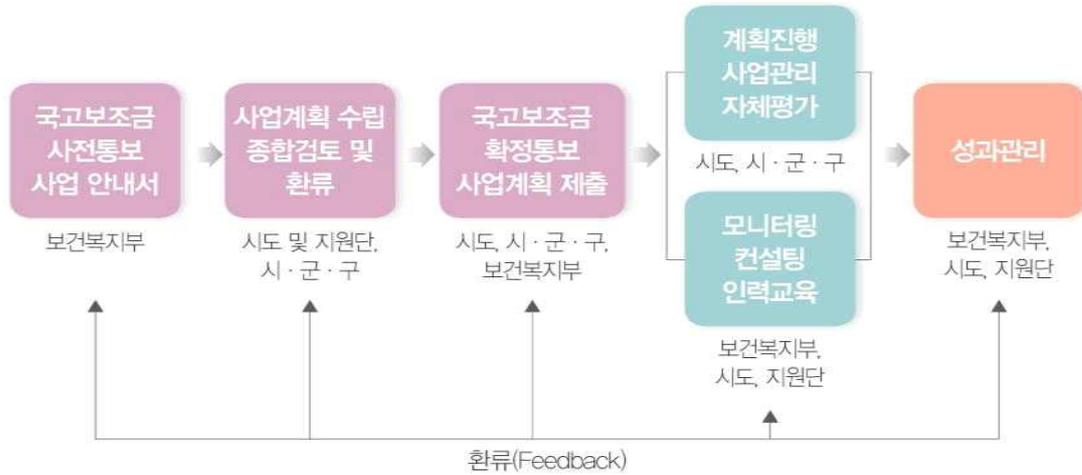


제 1 장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개요

01 사업 추진체계



02 사업 수행절차



가. 국고보조금 사전 통보 및 2019년 사업계획 수립

- ✦ 보건복지부는 시도에 '19년 국고보조금 사전통보(가내 시, 9월)
- ✦ 시도는 관할 시·군·구에 국고보조금 통보
- ✦ 시도 및 시·군·구는 통보받은 국고보조금을 토대로 '19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 ※ 국비에 따른 지방비는 50 % 이상 보조율 대응

예산배정 기준

- ① 배정단위 : 229개 특별자치시 및 시(행정시 포함)·군·자치구
- ② 배정기준 : 전년도 예산배분액을 기준으로 지역여건 변동, 수요 및 사업운영 성과를 토대로 배정
 - 지역여건
 - 인구수 30 %, 재정자립도 30 %, 건강수준(연령표준화 사망률) 20 %,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중위소득 하위 50 %) 10 %, 행정비용(면적) 10 %의 합한 값
 - 그 외 지역 수요 등 고려
 - 사업운영 성과
 -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결과
 - 통합사업 담당인력 교육 이수율 달성 여부
 - 예산집행률(불용률) 등

나. 사업계획 종합검토 및 환류

- ✦ 시·군·구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 제출기한은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군·구에 공문으로 통보
 - 시도는 시도 정책방향, 시도의 역할, 시·군·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도 사업계획 수립
 - 시도 및 지원단은 지방비 부담능력, 시도 정책방향 등을 토대로 관할 시·군·구 사업계획 종합 검토 및 환류 실시
- ✦ 시·군·구 사업계획서를 안내서에 따라 사업 계획서 내용의 적정성, 합리적 성과목표 설정, 예산 편성 유의사항 등을 종합검토
 - 검토 결과에 따라 시·군·구에 해당사항을 환류하여 사업계획을 수정하도록 함
- ✦ 시도는 관할 시·군·구의 사업계획 종합검토 및 환류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
 - ※ 제출시기 및 방법은 관련 공문에 따름

다. 국고보조금 확정통보 및 사업계획서 제출

- ✦ 보건복지부는 '19년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18년 12월)
 - ※ 각 시도에서는 확정 통보된 시도별 국고보조금 총액의 5 % 범위 내에서 자율적 조정가능
- ✦ '19년 사업계획서 보건복지부로 제출('18년 12월말 까지)
 - 시도 및 시·군·구는 확정된 예산(국비 및 지방비 대응비율 확정)에 따라 최종 계획서 작성
 - ※ 시·군·구비 대응이 어려운 경우 즉시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예산을 재배분하는 등 필요한 조치 시행
 - 계획서는 지역적 특성, 주민요구, 평가지표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후 시도 검토 후 시도를 통하여 보건복지부로 제출
 - 지자체 최종 확정계획으로 각종 성과관리 등에 활용됨에 유의

라. 사업운영 및 성과(사업관리, 모니터링, 평가·환류)관리, 결과보고서 제출

- ✦ 사업운영 및 성과관리
 -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운영 현황 및 성과 내·외부 모니터링, 자체평가 실시
 - 자발적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모니터링 및 자체평가 결과환류 실시
- ✦ 평가참여 및 수행, 결과보고서 제출('20년 2월 말 까지)
 - 시·군·구는 사업수행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하며, 시도는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공정한 시도 내 평가 수행
 - 시도는 평가결과는 시·군·구에 환류하여 차년도 사업기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시도 평가결과서 및 시·군·구별 결과보고서 취합자료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함
 - 시도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따른 평가에 참여

제 3 절

사업 범위



01 시·군·구(기초지방자치단체) 사업

가. 사업 범위

1) 사업영역

-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각 시·군·구별로 배분한 예산을 기준으로 일정한 사업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설계하는 사업이며, 사업영역은 사업 내 서비스 대상범위를 의미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역은 금연, 음주폐해예방(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예방관리,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한의약건강증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여성어린이특화, 치매관리, 지역사회중심재활, 방문건강관리로 구성됨
 - 국가가 제시하는 사업유형 및 자체 개발 프로그램으로 운영
 - ※ 세부내용은 <부록 1. 사업영역별 설명서> 참조(102쪽~134쪽)
- ❑ 사업 영역 간 경계를 없애고, 주민 중심으로 사업을 연계·협력하여 수행하는 것을 권장함

2) 사업영역 이외의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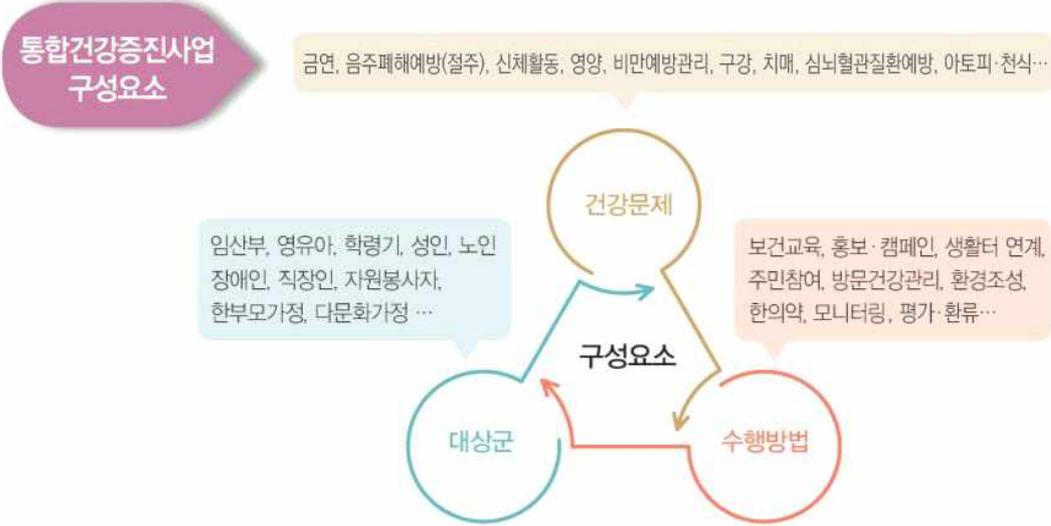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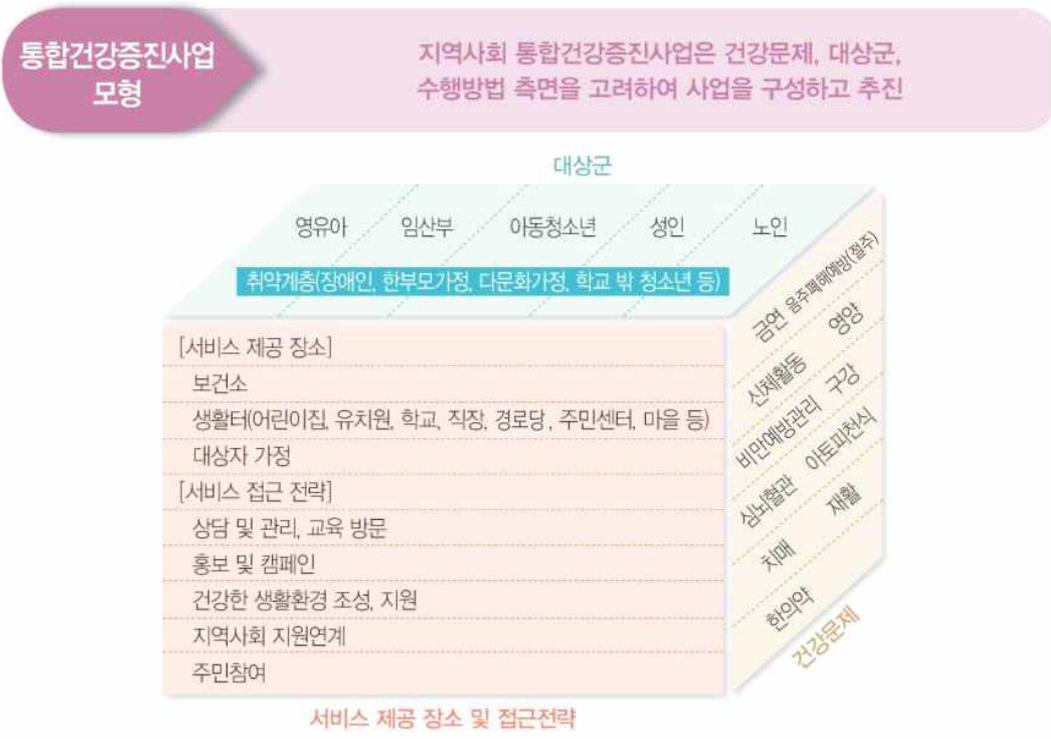
- ☒ 지자체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역 이외의 사업 추진 가능
 - 이 경우 반드시 다음의 점검항목에 의거하여 타당성을 사전점검 후 추진

통합건강증진사업영역 선정 점검항목

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시 다음의 점검 항목에 대한 점검 후 실시

- ①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인지 여부
 - 지역의 건강현황 및 특성에 근거한 사업인지 여부
- ② 투자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여부
 - 통합건강증진사업 외 다른 국고보조사업과 유사·중복적인 설계 여부
 - 사업방식과 내용이 사업목적 달성에 가장 효율적인지 여부
 - 낭비적 요소가 개입된 단순 행사성·전시성 사업이 아닌지 여부
- ③ 시급성 및 집행 가능성 검토
 - '19년도 바로 추진해야할 사업인지 여부
 - '19년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 ④ 물량 및 단가의 적정성 고려
 - 현재의 사업수행 방식의 적정성
 - ※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기준단가 등을 참고
 - 투입예산으로 사업의 기대효과 달성여부가 예측 가능한지 여부

※ (참고) 사업구성 요소



나. 사업 방법

- ❖ 지역사회 건강문제, 주민요구 등 현황분석을 통해 우선순위가 높은 건강문제를 선정하여 목표를 정하며 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사업영역과 사업량 등을 선택

 - 인구집단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며, 생애주기 뿐 아니라 성별 건강행태 및 건강문제 특성과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여, 금연, 음주폐해예방(절주), 신체활동, 영양 등 사업영역 및 전략을 선정함
- ❖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장소를 고려하여 수행

 - 보건소에 직접 내소하거나, 생활터(학교, 직장, 경로당, 마을 등) 연계,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등 다양한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 보건소는 지역사회 내 건강증진사업의 총괄·조정·연계 역할 수행

 - 보건소 내·외 자원의 효과적 파악 및 협력을 위한 보건소 주도의 ‘협의기구’ 구성·운영을 권장함
 -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연계·협력 사업 수행을 권장함
- ❖ 대상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개인, 개인 간, 조직/환경, 지역사회, 정책 수준 등)을 고려하여 포괄적인 전략 수립

 - 개인 수준으로는 상담·교육 등, 개인 간 수준으로는 동아리와 같은 자조집단·건강지도자 형성 등, 지역사회 수준으로 홍보 및 캠페인·지역사회 자원연계·환경 조성, 모니터링 등, 정책 수준으로 건강증진관련 조례제정 등의 다양한 접근전략을 활용함
 - 지역사회 주민이 건강증진사업 기획에 참여하고, 점진적으로 사업 전 과정을 주도하게 하여 지역사회 전반적 변화를 유도하는 주민 참여형 건강증진 전략을 수행할 수 있음

※ 세부내용은 <부록 2. 사업방법> 참조(136쪽~144쪽)

02 시도(광역자치단체) 사업

가. 시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 ❑ 시도 단위에서 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사업을 개발·추진, 관할지역 시·군·구와 ‘공동사업’을 개발하여 추진가능
 - 사업의 목적 및 사업영역, 사업전략 등은 시·군·구와 동일하며 개발한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근거중심의 사업을 수행함
 - 다만, 주로 시·군·구 단위에서 수행하는 것 보다 시도단위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자체적으로 개발·운영을 권장함
 - ※ 예시 : 동일한 슬로건과 디자인을 활용한 시도 및 시·군·구 합동 홍보캠페인 사업 등
 - 관할지역 시·군·구와 ‘공동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경우, 관할지역 시·군·구청장(보건소장)과 충분한 협의 후 실시함
 - ※ 예시 : ○○사망률이 가장 높은 ○○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광역단위 ○○사업’을 기획하였고, 보건소와 공동으로 사업 추진
 - ※ 시도 단위 사업비에 제한은 없으나,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시·군·구 지도감독 및 성과관리 등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 편성

나.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 ❑ (목적 및 역할) 지방자치단체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지역 맞춤형 기술지원 통해 사업 담당자들의 기획 및 수행 역량강화를 지원
- ❑ (근거) 건강증진사업의 기술지원을 위해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구성·운영함
 - ※ 지역보건법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근거함
 - ※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및 관리 책임은 시도에 있음
 - ※ 세부내용은 <부록 5.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152쪽~160쪽)

다.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한 성과관리

- ❑ 관할지역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서 작성현황 및 추진사항, 목표 대비 달성도, 자체평가 결과, 예산집행내용 및 추진사항 등 사업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환류를 통한 성과관리 실시
 -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추진하는 만큼 계획대비 추진 현황 등 철저하게 사업을 관리함

- 분기/반기/연간 등 정기적으로 시·군·구 현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현황 파악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에 환류함
- 시·군·구 대하여 평가계획을 수립,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시·군·구에 환류하여 사업에 반영·개선하도록 유도하고,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함

라. 교육 총괄

- ✦ 시·군·구 사업 담당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계획 수립
 - 시·군·구 보건소 사업내용 및 교육수요를 파악함
 - 교육수요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선정 등 교육을 기획함
 -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사업을 관리함
- ✦ 시도 자체 교육 프로그램 실시
 - 시도 특화사업 등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함
- ✦ 시·군·구 사업 담당인력의 교육이수 실적 관리

제2장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 19 제1절 사업 운영 일정
- 20 제2절 사업계획 수립
- 28 제3절 사업평가

제 1 절

사업 운영 일정



제 2 장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단계	시기	수행 절차	해당 기관
사업 계획	'18. 9월	국고보조금 사전통보	보건복지부
		↓	
	'18. 10월	'19년 사업 설명회	보건복지부
		↓	
	'18. 10~12월	시도 및 시·군·구 사업계획 수립	시도, 시·군·구
		↓	
	'18. 11~12월	시·군·구 사업계획 종합검토 및 기술지원	시도, 지원단
		↓	
	'18. 12월 초	국고보조금 확정통보	보건복지부
		↓	
	'18. 12월	2019년 사업계획 제출	시도, 시·군·구
		↓	
사업 수행	'19.1~12월	사업운영, 사업관리, 자체평가	시도, 시·군·구
		↓	
	'19.1~12월	모니터링 및 환류, 교육	시도, 지원단
		↓	
	시도 자율결정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시·군·구
		↓	
사업 평가 및 성과 환류	'19.12~ '20.2월	평가(정성) 실시	시도, 지원단
		↓	
	'20. 3월	평가(핵심성과지표 달성) 실시	시도, 지원단
		↓	
	'20. 2월말	종합 평가결과 제출(시도→복지부) 및 환류	시도, 지원단
		↓	
	'20. 3~4월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 선정	보건복지부
		↓	
	'20. 4월	성과대회(포상 및 우수사례 확산)	보건복지부

제 2 절

사업계획 수립



01 계획 업무추진 개요

가. 목적

- ❖ 시도 및 시·군·구 단위에서 지역사회 건강문제 및 특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의 사업성과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책임성 있게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실행계획을 수립
 - 본 계획은 예산편성 및 집행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며 사업 모니터링, 성과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됨

나. 수립주체 및 과정

- ❖ 계획수립 주체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 지자체 내 보건소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로 통합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함
 - ※ 작성대상 : 17개 시·도, 229개 특별자치시 및 시(행정시 포함)·군·자치구
- ❖ 시도 및 시·군·구는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운영되기 위하여 내·외부 기획·예산·집행부서간의 긴밀한 협의 및 주민요구도 수렴과정을 거쳐 사업계획 수립
 - ※ 보건소장 등 기관장 및 팀장 이상 관리자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 필요

다. 계획의 기간

- ❖ 시도 및 시·군·구별 '19년 예산을 기초로 1년간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 기간 : 2019년 1월 ~ 12월(1년)
 - ※ 사업의 내용 및 예산편성 내용은 '19년 12월 내에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함

라. 계획수립 절차

절 차	내 용
전담팀 및 협의체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 전담팀을 구성하고, 의견수렴 협의체 구성 • 협의체는 다양한 주민의 요구를 수렴할 수 있도록 구성 • 전담팀은 보건소장, 과장, 팀장 등 관리자는 반드시 참여
지역사회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성과관리(내·외부 모니터링 및 평가)결과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지역사회 건강현황, 건강증진사업 관련 중장기 추진과제를 검토하고, 세부사업계획의 추진 타당성 점검 후, 이를 기반으로 2019년 추진방향 설정(예산편성 방향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계획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유념함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지역사회 협의체 및 주민의견수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팀 및 협의체 구성·운영내용을 계획서에 포함
추진사업선정 우선순위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현황분석,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용을 반영한 2019년도 추진 사업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체 및 시도, 시·군·구 내부 협의를 통한 우선순위 선정 공감대 형성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인력채용 및 운용, 조직 재정비를 감안하여 사업선정
사업별 예산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담당부서(담당자)를 지정하고 예산소요계획 작성 • 예산소요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우선편성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시·군·구별 예산 내에서 사업별 예산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합리적인 배분 원칙을 토대로 배분
사업 계획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 대한 담당부서(담당자)를 지정하여 세부 사업계획 수립 • 지역현황, 성과지표(핵심, 자체) 및 목표치 선정 • 성과지표(목표)에 따른 세부 사업내용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배경, 목적 및 목표, 사업대상(표적대상), 사업내용, 연계협력, 추진일정 • 자원투입계획(예산, 인력) 및 조직운영 계획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편성 제외사항 등 준수 여부 확인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및 시·군·구는 확정 예산에 따른 최종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02 사업목표(성과지표) 수립방법



❖ 사업목표(성과지표)의 의미와 목적

-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성과목표는 핵심성과목표(지표)와 자체성과목표(지표)로 구분할 수 있음
- 핵심성과지표는 중앙에서 제시하는 객관적 정량지표로써,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 격차 감소를 위한 지역의 건강지표관리에 목적이 있음
 - ※ 핵심성과지표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과 연관성 및 영역별 중점목표 등을 고려하여 16개 결과지표 구성됨
- 자체성과지표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세부 사업별로 자율적으로 작성한 성과지표로써, 사업의 운영, 결과에 대하여 자체적인 모니터링 등 성과관리에 목적이 있음

가. 핵심성과지표

2019년 핵심성과지표 구성

건강생활 실천	만성질환 예방·관리
① 성인 남자 현재 흡연율 ② 흡연자의 금연시도율 ③ 비흡연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④ 월간 음주율 ⑤ 고위험 음주율 ⑥ 영양표시 독해율 ⑦ 5일 이상 아침식사 실천율 ⑧ 걷기 실천율 ⑨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⑩ 비만유병률(★) ⑪ 모유수유 실천율 ⑫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⑬ 혈압 인지율 ⑭ 혈당 인지율 ⑮ 1년 후 300일 이상 고혈압 투약 순응률 ⑯ 1년 후 300일 이상 당뇨 투약 순응률 ★ 2019년 신규포함 지표 - 해당지표는 2018년부터 신규 조사된 지표로 2019년 사업평가 시기(2020년 초)에는 2018년, 2019년의 2년간의 현황만을 확인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 필요

제2장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통계원) ①, ⑮, ⑯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그 외 지역사회 건강조사

※ 2017년 이전의 비만유병률은 자기기입방식으로 2018년 실측을 통한 비만유병률과 연계하여 보기 어려움

핵심성과지표 선정

궁극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지역의 건강지표를 자율적으로 설정

- 지자체에서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궁극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핵심성과지표를 위의 16개 정량지표 중 자율적으로 선정
 - 지역사회 건강현황, 주민 수요, 전년도 평가결과 등 다양한 현황자료에 근거한 핵심성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지표 선정
 - 핵심성과지표는 다양한 현황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사업담당자,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수립
 - 핵심성과지표와 연계성 낮은 세부사업일지라도 축소되지 않도록 유의
- 사업의 우선순위, 세부사업 내용을 고려하되, 궁극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지역의 건강지표를 선택
 - 지역의 주요 건강문제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지표
 - 전국 및 시도, 타 시·군·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표
 - 다양한 세부사업을 고려하여 핵심성과로서 대표성을 가지는 지표

- 성과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중장기적 활용을 고려하여 지표 선정

[참고] 지표선정 점검사항¹⁾

- 중요한가? (참여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의미 있는 변화를 대표하는가?)
- 논리적인가? (목적, 전략과 연계성을 가지고 여러 목표와 어우러지는가?)
- 현실적인가? (주어진 상황, 자원, 역량에 비추어 현실적인가?)
- 가치가 있는가? (목표의 성취가 노력에 비해 가치가 있겠는가?)
-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있겠는가? (예견 가능한 부정적 결과는 무엇인가?)

✦ 핵심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지표별 과거 추세치, 현 수준, 국가건강증진목표 등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 단순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 여부에만 국한한 목표치가 아닌 지표별 과거 추세치(과거추이, 전년도 실적 등), 국가목표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 현 수준 보다 향상된 목표치 설정
 - 과거 정보는 목표치 설정의 기준으로 고려하되,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 이하의 목표치 지양
 - 최근 실적보다 낮은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도록 유의
- 목표치 설정방법을 참고하여 적절히 설정하고, 설정근거를 명확히 작성

[참고] 목표치 설정 방법

- 희망하는 변화율(%) 적용(percent improvement)
- 통계적 검증에 따른 목표치 설정(minimal statistical significance)
- 타기관, 국가에서 이미 설정한 목표치를 기준으로 차용(using existing benchmark or standard)
- 지역 간 평균값(혹은 중앙값) 사용(mean(median) rates across areas or sub-population)
- 각 지역 간 상위 50%(혹은 75%)의 값(overall rate for best 50% across areas or population)

※ 세부내용은 <부록 4. 목표치 설정방법> 참조 (150쪽~151쪽)

1)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1~2020) 수립 결과보고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

나. 자체성과지표

☒ 자체성과지표 수립방법

-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수행과정, 사업결과 및 효과에 대해 자체 점검(모니터링, 평가)이 가능한 지표 구성
- 자체성과지표는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되도록 투입-과정-산출-결과로 구분하고, 결과지표 중심으로 설정
 - 산출지표는 사업이 의도한 목적달성 여부의 확인에 한계가 있으므로 되도록 산출보다는 결과중심으로 수립
 - 자체성과지표는 세부사업 목적, 목표와 연계성이 있어야 함

[참고] 성과지표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른 분류

구분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정의	예산·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특성	예산집행과 사업진행 과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도움	사업 진도 등 사업추진 정도를 중간 점검하는데 도움	투입에 비례하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데 도움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 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하는데 도움

03 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지역사회 특성 및 건강취약 현황 파악

- ❖ **지역사회의 현황(인구, 질병, 지리적 환경 등)을 전국, 시도 타 시·군·구와 비교하고, 내외부 관계자 협의 및 주민 요구도 수렴을 통해 우선순위 문제점을 도출함**
 -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자료출처를 표시함
- ❖ **취약계층(장애인,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등) 및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지역 등 건강사각지대 발굴 등 건강취약에 대한 현황파악을 포함하여 수행함**

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목적 및 사업범위 준수

- ❖ **지역사회 현황 및 문제점에 맞는 사업목적을 선정하여, 문제점과 목적, 사업대상, 사업내용이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함**
- ❖ **기존의 사업평가(내·외부 모니터링 및 평가 등)결과를 수정·반영하여 발전적으로 계획함**
-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업비 편성 불가 사업에 대한 인력투입과 예산집행 불가(단, 연계·협력하여 사업수행가능)**
 -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내용-사업범위(10쪽~13쪽) 및 사업비 편성 유의사항 참고(42쪽~43쪽)

다. 예산 및 보조율 준수

- ❖ **각 지자체는 보건복지부에서 통보하는 예산 내에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최종 확정 금액('18년 12월 통보)에 따라 예산계획을 조정하여 최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
-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국비에 대하여 50 % 이상 지방비(시도 및 시·군·구비) 보조율 대응**
 - ※ 시·군·구비 대응이 곤란한 시·군·구에서는 즉시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예산을 재배분하는 등 필요한 조치 시행

라. 사업계획은 기존대로 작성하되, 예산 별도 관리

- ❖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방문건강관리', '모바일 헬스 케어' 계획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계획서에 포함하여 수립**
 - ※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되, 대상자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계획서를 일괄로 작성

- ❖ 치매 영역 또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서에 포함하여 수립
 - ※ 치매안심센터 운영전반에 관한 내용기술은 불필요하며, 치매관리와 통합사업 영역을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내용 작성
 - ※ 치매 영역은 치매안심센터 예산 집행을 원칙으로 하되, 치매 감별검사(혈액 검사, 뇌 영상 촬영 등) 비용에 대해서는 '치매안심센터' 또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집행이 가능함

마. 영역 간 연계·협력하여 효율·효과를 높이는 사업 적극 추진

- ❖ 대상자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 및 생활터 중심으로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다양한 전략의 사업을 수행하여, 효율·효과를 높이는 사업계획 수립을 권장함
 - ※ 건강상담, 교육, 홍보 및 캠페인, 건강환경 조성 및 지원, 주민참여, 조례제정 등
- ❖ 공동사업 수행 시 예산 효율성 및 사업 효과가 증대되는 부문을 연계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함

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 변경

- ❖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추가하거나 폐지 또는 추진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변경 가능
 - 시도와 협의 후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로 최종 변경 계획서를 통보해야 함

사.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방향과 일관되게 실행계획 수립

- ❖ 「지역보건의료계획」은 해당지역의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 계획으로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통해 지역의 건강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향후 4년간 추진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침
- ❖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으로 수립
 - 지역사회 현황분석, 우선순위 선정과정은 지역보건의료계획과 방향을 같이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관계

-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기초 및 광역단체 수준에서 지역주민의 보건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은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중장기 과제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함

제 3 절

사업평가



01 성과관리

가. 성과관리 기본방향

- ✦ 시도 및 시·군·구 중심의 주체적 성과관리 운영
 - 지역 특성 및 주민요구, 자체평가 중심의 성과관리를 통해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
- ✦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격차 감소를 위한 목표관리 필요
 - 궁극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건강행태, 건강격차 감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역의 건강지표 관리
 - 단기적인 사업성과 뿐 아니라 지역의 보건환경 변화에 대응한 목표관리
- ✦ 추진경과

	기존(~'16년)	개선('17년~)
성과관리 지표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정, 성과에 대한 질적 성과관리 중심의 정성지표 - 계획, 운영, 성과단계의 8개 정성지표와 대표 우수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량지표 도입에 따른 정성지표 보완 - 정량지표 선정 기준 및 목표치 설정 • 정량적 성과관리를 위한 결과지표 도입 - 지표성격에 따라 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 예방·관리 유형에 따른 핵심성과지표
성과지표 계획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사업별 장·단기 성과지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단기 구분 없이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수립 •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핵심적인 성과지표 수립 - 중앙제시 핵심성과지표 활용
평가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평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 (시·군·구 평가) 정성적 평가 시행 - 시도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평가) 좌동 • (시·군·구 평가) 정성적, 정량적 평가시행 - 정성적 평가 동일체계 유지 - 핵심성과지표 목표달성률 기준 동일
평가결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상 및 후속조치,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상 및 후속조치,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확산 • 국고보조금 재원배분 근거로 활용 - 사업 성과도, 예산집행을 등

나. 성과관리 개요

❖ 시도 성과관리체계

-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의 정부업무합동평가(보건위생분야) 실시

❖ 시·군·구 성과관리체계

- 시도에서 관할 시·군·구의 사업 계획, 운영, 결과, 우수사례, 핵심성과지표 목표달성 등 평가
- 핵심성과지표 실적 산출시기 차이로 인하여 정성평가 및 핵심성과평가 시기 분리 시행



제 2 장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02 평가업무 추진개요

가. 평가목적

- ❖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평가는 사업의 체계적 성과관리 및 자발적 발전을 목적으로 수행
 - 단순 산출실적 확인이 아닌, 사업기획·운영·평가·환류 전반과정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체계로서 운영
 - 지역별 건강증진사업의 자율적 기획, 운영, 예산편성에 대한 책임성 있는 사업수행 및 발전적 환류 유도

나. 평가개요

- ❖ 평가시행 주체 : 시도(광역자치단체)
- ❖ 평가대상 : 시도별 관할 시·군·구
- ❖ 평가구성
 - 중앙 지표는 계획(25), 운영(30), 성과(25) 및 우수사례(20)로 분류, 100점 배점
- 위의 100점은 정성지표(80)와 정량지표(20)로도 구분될 수 있음
 - 중앙 지표에 시도의 정책방향을 반영한 자체지표 추가 사용가능(10점 이내)
 - 평가 자료는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기타 증빙자료 해당
 - 평가 방법은 서면평가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대면 인터뷰 등 수행가능
- ❖ 평가결과 활용
 - 시·군·구 건강증진사업 발전을 위한 환류 및 담당자 역량강화 지원근거로 활용
 - 우수사례 발굴 및 사례집 발간, 배포
 - 보건복지부 성과대회 포상 및 국고보조금 재원배분 근거로 활용

03 평가체계

가. 평가시행 주체 : 시도(광역자치단체)

- 시도 여건에 맞춰 「평가단」 구성을 통하여 평가업무 운영

평가단 구성·운영 권장사항

- 시도는 평가가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
- 지역별로 평가위원을 배치할 경우, 1명이 10개 이상 지역을 평가하지 않도록 교차 배치 권장
 - ※ 평가지표별로 평가위원을 배치하여 평가하는 방안 검토 요망
- 평가대상 당 2인 이상 평가 권장
- 평가단의 평가위원 구성
 - 평가위원 수는 평가대상 지역 수를 고려하여 선정
 -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지식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
 -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가대상 보건소와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타 지역의 전문가 30% 이상 참여 (우수사례 평가 시 타 지역 평가위원은 배제 가능)

나. 평가대상 및 기간

- 평가대상 : 229개 시·군·구
 - ※ 보건소 단위 평가가 아닌 시·군·구 단위 평가이며, 시도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체계에 따라 평가
- 평가대상 기간 : 2019. 1. 1. ~ 2020. 12. 31(1년 단위로 매년 시행)

다. 평가시기 : 2019. 12~2020. 2

- 2019년 사업의 평가시기는 2019년 12월 부터 2020년 2월 중 실시
 - 시도별 평가결과서 취합 및 평가수행, 사후 조정 등 구체적 평가일정은 상기 평가시기 내에서 시도에서 자율적 결정
 - 단,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는 **핵심성과지표와 예산집행률** 등의 지표는 **산출가능 시기(익년 2월 경)의 차이**로 인해, 평가시기 분리 시행

라. 평가자료 : 시·군·구 2019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 사업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등 필요한 경우 기타 증빙자료를 추가요구, 평가에 활용할 수 있음

마. 평가지표

- ✦ 사업의 계획·운영·성과, 우수사례단계로 구분, 사업추진 단계에 따른 자체 점검사항 반영
 - 시·군·구별 인구, 예산, 지역형태 및 건강문제의 다양성을 감안하여 정성적 평가지표 선정
 - 사업계획 영역에서는 건강문제와 사업목표, 사업대상 및 사업전략과 환류의 연계성을 점검하고, 내·외부 모니터링 및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부분 강조
 - 사업운영 영역에서는 보건소 내부소통과 협력과정을 통한 사업운영, 지역사회 자원의 지속적·자발적 참여 현황 점검
 - 사업성과 영역에서는 자체 계획에 대한 책임성 있는 운영 점검 및 핵심성과목표, 자체성과목표 및 예산집행율 등 객관적 성과평가를 위한 정량지표 가중치 강화(20%)
 - 정량지표(20)는 핵심성과지표 목표치 달성(10), 자체성과지표 목표치 달성(5), 예산집행율(5)로 구성
 - 우수사례는 계획의 타당성, 운영의 노력성, 사업의 효과성과 더불어 우수사례의 지속발전을 위한 확산·활용 가능성 및 지속·발전성 점검

✦ 2019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지표 총괄표

영역	평가지표	배점	평가자료
계획 (정성 25)	1. 지역현황과 연계성 있는 성과지표(목표)를 선정하였는가?	12	계획서
	2. 사업목표에 맞는 사업내용을 계획하였는가?	10	계획서
	3. 사업목표치는 합리적으로 수립하였는가?	3	계획서
운영 (정성 30)	4. 내부자원과 소통·협력하여 사업을 운영하였는가?	5	결과보고서
	5.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가?	10	결과보고서
	6. 사업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충실히 운영하였는가?	15	계획서 결과보고서
성과 (정량 20 정성 5)	7. 계획한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20	계획서 결과보고서
	8. 계획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하였는가?	5	계획서 결과보고서
우수사례 (정성 20)	9. 대표 우수사례	20	결과보고서
총계(정성 80, 정량 20)		100	

2019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세부평가지표

평가지표(배점)	세부평가지표	배점
1. 지역현황과 연계성 있는 성과지표(목표)를 선정하였는가? (12)	가. 신뢰성 있는 자료를 통해 지역현황을 파악하였는가?	3
	나. 건강취약(건강사각지대, 취약계층) 현황을 파악하였는가?	3
	다. 지역현황에 맞는 핵심성과지표(목표)를 선정하였는가?	3
	라. 지역현황에 맞는 자체성과지표(목표)를 선정하였는가?	3
2. 사업목표에 맞는 사업내용을 계획하였는가? (10)	가. 목표에 맞는 사업대상(건강취약대상 포함)을 선정하였는가?	4
	나. 목표에 맞게 건강영역을 통합하여 사업계획을 하였는가?	2
	다. 목표에 맞는 다양한 사업전략을 투입하였는가?	2
	라.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2
3. 사업목표치는 합리적으로 수립하였는가?(5)	좌동	5
4. 내부자원과 소통·협력하여 사업을 운영하였는가?(5)	가. 보건소 내 관계부서와의 소통·협력과정이 정례적이고, 충실하게 이루어졌는가?	2
	나. 보건소 내 소통·협의과정에 보건소장 및 팀장 이상 관리자 등의 참여와 지원이 충분하였는가?	3
5.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가?(10)	가. 사업전략에 맞는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투입하였는가?	3
	나. 지역사회 자원이 각 역할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하였는가?	3
	다. 지역사회 자원이 지속적,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는가?	4
6. 사업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충실히 운영하였는가?(10)	가. 계획된 일정대로 원활히 사업이 운영되었는가?	3
	나. 내·외부 모니터링(중간평가)을 충실히 수행하였는가?	4
	다. 내·외부 모니터링 및 평가결과를 사업추진 시 수정·반영 하였는가?	4
	라. 계획된 사업내용이 충실히 운영되었는가?	4
7. 계획한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20)	가. 결과보고서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가 계획서와 일치하는가?	5
	나. 핵심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정량)	10
	다. 자체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정량)	5
8. 계획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하였는가? (5)	좌동(정량)	5
9. 대표 우수사례(20)	가. 계획의 타당성	5
	나. 운영의 노력성	5
	다. 사업의 효과성	5
	라. 확산·활용 가능성	3
	마. 지속·발전성	2
총계(정성 80, 정량 20)		100

제 2 장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04 평가방법

가. 정성평가

❖ 목적: 사업계획, 운영, 결과의 전 과정의 질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방법

- 세부평가 기준은 평가지표 목적 및 설명을 참고하여 시도에서 수립
- 정성평가지표의 배점과 세부지표의 배점(가중치)은 시도의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시도의 정책방향을 반영한 자체지표(최대 10점 이내) 사용 가능. 단, 중앙에서 제시한 평가지표는 삭제가 불가하며 배점으로 조정
- 서면평가를 실시하되 여건에 따라 현장평가, 대면평가 등 다양하게 실시 가능
 - ※ 평가자 간 사전 토의를 통해 평가기준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 후 평가
 - ※ 적용한 평가지표,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방법은 반드시 평가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

나. 정량평가

❖ 목적: 사업성과의 객관적 측정을 위한 핵심성과 및 자체성과, 예산집행율의 목표달성도 평가

❖ 핵심성과지표의 목표달성률 산출기준

- (실적) 외부요인의 영향과 연도별 급변으로 인해 사업수행 노력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량지표 '최근 3개년 평균값('16~'18년)' 적용
 - ※ '17년 또는 '18년 실적이 없는 경우, '16년 실적을 활용하여 산출
 - ※ 신규 핵심성과지표인 비만유병률과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18년 실적부터 활용 가능
- (목표) 지자체에서 현 수준을 고려하여 '자체 목표값' 설정

$$\text{목표달성률(\%)} = \frac{\text{실적}}{\text{목표}} = \frac{\text{최근 3개년 평균값}}{\text{자체 목표값}}$$

• 핵심성과지표 점수기준

- 핵심성과지표를 여러 개 선택했을 경우 지표별 목표달성률 점수의 평균점수 산출

95 % 이상	95 % 미만 ~ 90 % 이상	90% 미만 ~ 85 % 이상	85 % 미만
10점	9점	8점	7점

• 핵심성과지표의 평가방법

- 시·군·구가 수립한 핵심성과지표의 목표달성률 산출 후 10점을 기준으로 목표달성률 기준에 따라 점수화

※ 핵심성과지표의 실적 값 필히 점검. 조율과 표준화율을 혼용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2020년 초 핵심성과지표 정량평가 관련 안내자료 발송 예정

❖ 자체성과지표의 점수기준

- 자체성과지표는 시·군·구 세부사업별로 자체 수립한 목표치로써, 전체 자체성과지표별 목표달성률 점수의 평균점수 산출
- 시·군·구가 수립한 자체성과지표 목표달성률 산출 후 5점을 기준으로 목표달성률 기준에 따라 점수화

100 %	100 % 미만 ~ 95 % 이상	95 % 미만 ~ 90 % 이상	90 % 미만 ~ 85 % 이상	85 % 미만
5점	4점	3점	2점	1점

❖ 예산집행률 지표의 점수기준

- 예산집행률은 시·군·구에서 계획한 예산의 집행률로 아래 기준에 따라 점수화 산출

100 %	100 % 미만 ~ 95 % 이상	95 % 미만 ~ 90 % 이상	90 % 미만 ~ 85 % 이상	85 % 미만
5점	4점	3점	2점	1점

05 평가활용

❖ 평가결과 환류

- 시도는 통합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평가결과와 평가단의 의견을 종합분석하여 시·군·구에 효과적 환류(공문을 통한 서면환류는 물론, 시·군·구 간담회 등 권장) 실시

❖ 지자체 역량강화 지원

- 시도는 지원단과 함께 평가결과가 부진한 지자체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위해 성과대회 개최 및 우수사례집 발간

-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최우수사례 선정, 우수사례집 발간·배포 등을 통해 확산기회 마련

❖ 보건복지부 성과대회 포상 및 국고보조금 자원배분 근거로 활용

- 시도별 평가결과 종합, 검토 후 포상대상(우수분야, 개선분야 등) 결정
 ※ 시도 평가결과를 반영하나, 요건에 따라 포상기관은 시도 결과와 다를 수 있음
- 국고보조금 자원배분 시 사업 평가 결과를 근거로 우수기관 차등 배분

06 평가업무 수행절차

- ❖ 평가지표 및 추진절차 안내(중앙 → 시도 및 시·군·구) : '18년 10월
※ 시·군·구 설명회는 필요시 시도에서 실시
- ❖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시·군·구 → 시도) 기간 : 시도별 자율 결정
- ❖ 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시도 → 중앙) : '20년 2월 28일까지(기간엄수)
※ 제출 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 ❖ 평가결과 종합(중앙) : '19년 3월 예정
 - 우수사례 검토 및 우수사례집 발간
 - 포상기관 확정 등
- ❖ 성과대회를 통한 평가결과 공개 및 사례 공유 : '19년 4월 예정



제3장 행 정 사 항

- 39 제1절 조직 및 인력
- 41 제2절 예산편성 및 유의사항
- 45 제3절 사업 관리
- 47 제4절 교육
- 58 제5절 개인정보보호 안내

제 1 절

조직 및 인력



01 보건소 조직구성

-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총괄담당자 지정
 - 총괄담당자는 건강증진사업 및 사업계획 등 다양한 업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자로 배치를 권장함
- ✦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각 부서 간 역할분담 실시
 - 사업 간 연계·협력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업무분장 실시

제 3 장
행정사항

구 분	역할 및 기능
총괄담당	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서 작성 총괄 ② 각 사업별 예산편성 및 집행 관리 ③ 사업별 인력 자격요건 정리 및 채용관리 - 기간제 근로자 등 채용요건관리, 업무분장, 교육훈련 계획실시 ④ 자체평가계획 수립 및 자체평가 실시, 외부 평가 준비 총괄
사업담당	① 각 사업별 계획수립 및 이에 따른 예산소요계획 작성 ② 총괄담당자와 협의하여 해당사업 예산확정, 세부사업비 편성 ③ 건강증진사업 수행 - 총괄 및 사업 영역별 안내서 참고로,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수행전략개발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수행 ④ 해당 사업 영역 자체평가 계획수립 및 실시,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등

02 인력의 채용2)

❖ 인력채용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채용하되 가능한 일정 수준의 사업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당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채용을 권장함(아래 표 참조)

- 서비스 제공내용에 맞는 자격자의 우선채용을 권장하나, 보건소장의 판단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보건의료관련 전공자로 구성해야 함
- 사업수행 인력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안내서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 및 내용 등에 관련 세부사항은 <제4절 교육> 참조 (46쪽~55쪽)

인력의 자격기준(권장사항)

-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체육지도자*(체육지도자가 없을 시 기타 신체활동 관련 자격 보유자 채용가능), (임상)영양사, 치과위생사, 사회복지사, 보건교육사, 기공지도사, 조산사, 산림치유지도사, 북한이탈주민 상담사, 보건의료 및 관련 전공자 등 보건업무 5년 이상 경력자
- * 체육지도자 :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택지도사, 유소년스포츠택지도사, 노인스포츠택지도사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상시·지속적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 수행인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 대상임

※ 상시·지속적 업무라 함은 ①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 ②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 고용개선을 위한 국정과제 및 정부종합대책에 따라,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 해야함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17. 7. 20)

국정과제 64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2) 국고보조금(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예산, 방문건강관리, 모바일 헬스 케어)으로 채용하는 인력에 한함

제 2 절

예산편성 및 유의사항



01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가. 예산운영 기본원칙

-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자체가 세부내역을 자율적으로 설계·집행
- ✦ 지자체는 방만한 예산집행, 예산낭비요인 등이 없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여야 함
 - 예산 집행 계획 수립·시행 및 집행 점검을 강화하여 예산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함
 - ※ 인력 미채용 등으로 예산 불용이 예상될 경우 '인건비'를 '사업비'로 자체 전용 가능
 - 본 사업은 경상보조사업이므로 자산취득성 사업비 집행은 불가함
- ✦ 본 예산편성 및 집행은 아래 법령 등에 따라 그 절차와 기준 준수
 - ※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재정법령, 물품 및 공유재산 관련 법령,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기타 개별 법령
- ✦ 예산은 국비에 대하여 지방비 50%이상 보조율을 맞추어 구성, 지방비 추가확보 가능
 - 국비에 대하여 시도비 및 시·군·구비를 보조율에 맞추어 구성하고 하며, 국비보조율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 시·군·구에서는 즉시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예산을 재배분하는 등 필요한 조치 시행
 - 시도 및 시·군·구 자체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사업수행 가능
- ✦ 별도 교부 예산의 관리
 - 별도로 예산이 교부되는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방문건강관리, 모바일 헬스케어의 경우, 사업계획은 사업내용의 연계를 고려하여 통합계획서 내에서 수립 가능하나,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여 집행·정산 시 별도 관리
 - 치매 영역은 치매안심센터 예산 집행을 원칙으로 하되, 치매 감별검사(혈액 검사, 뇌 영상 촬영 등) 비용에 대해서는 '치매안심센터' 또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집행이 가능함
- ✦ 동 안내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및 「2019년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준용

나. 인건비 편성 기준

- ❖ 인건비 급여는 월 185만원 이상 지급(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작년대비 업무(질적, 양적 측면에서)의 차이가 없는 경우, 급여수준을 인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보건소 내 유사 업무 종사자와 처우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4대 보험은 의무가입(기관부담금은 지자체 예산 확보)이며, 4대 보험 이외의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적립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정과 해당 법에 따름
 - 기본급 외 수당(복지포인트, 명절상여, 식대 등)을 지급하도록 하며 관련 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정을 따름
 - ※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17.7.20)에 준하여 운영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수행 인력의 고용 형태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공무직 등)으로 전환되어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에서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편성할 수 있음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건비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음
 - ※ 다만, 2016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의 인건비로 편성되어 집행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만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3제1항에 따라 허용하는 근무기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편성할 수 있음

다. 교육훈련비 편성 기준

- ❖ 교육훈련비 예산은 인당 최소 24만원 이상으로 편성, 지자체 여건에 따라 교육비 추가 편성 가능함(단, 교육여비 및 식비 등은 별도 편성)
 - ※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통합보건지소, 도시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전문인력의 교육비 및 여비 예산 편성은 필수임. 그 중 신규자의 경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신규자 교육은 필수사항이므로 신규자 채용규모에 맞춰 사전에 예산 편성
 - ※ 1인당 교육비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일 교육단가(8만원/일) 및 평균 교육 일수(3일)를 기준으로 24만원임

라. 이외 사항

- ❖ 전문인력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는 본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음
- ❖ 본 사업 예산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홍보 물품(소모품)을 구입·지급할 수 있음
- ❖ 지역사회 건강을 위한 보건소 내·외 자원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협력하기 위한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비 집행 가능함
-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소와 그 하부기관(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음
- ❖ 예산항목별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각 비목별 사업비 계상(합산) 시 10원 미만 절사

02 사업비 편성 유의사항

가. 의료비지원 성격의 사업 편성 불가

- ❖ 치매치료비지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등 별도의 국고보조 및 자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의료비 지원 성격의 사업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 편성 불가
- ❖ 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된 아래의 의료비지원 사업의 경우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 편성 가능
 -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 저소득층 알레르기 질환자 환자 지원, 취약아동 진단 및 치료비 지원
 - 치매예방관리사업 : 치매 조기검진을 위한 감별검사(혈액 검사, 뇌 영상 촬영 등)

2018년 기준 의료비지원 사업

- | | |
|-------------------------|----------------------------|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 치매치료관리비지원 |
|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
|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지원 | • 원폭 피해자 진료비 장제비 등 지원 경상보조 |
| •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검사비 | •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
|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 • 노인의치보철 지원 및 사후관리사업 |
|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 검진비 지원 |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나. 타 국고보조사업과 중복추진사업은 예산 편성 불가

❖ 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편성 및 집행 금지

- 구강보건인프라구축(학교 양치시설 설치,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설치), 민관협력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정신보건센터운영(정신보건센터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중독 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노숙인 등 취약계층 중독관리 사업), 지역사회 건강조사,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국가암검진사업, 시설장비 개선사업, 감염병(급성감염병, 에이즈 및 성병예방, 말라리아 박멸, 예방접종 등)사업, 치매안심센터(선별검사(MMSE-DS), 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사업 등

※ 사업 수행 시에는 타 국고보조사업과 연계 및 협력 추진 가능

- 사업비 편성 제외사항이라는 이유로 사업 간 연계·협력 시 제외하지 않도록 하며, 지역사회/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통합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서비스 연계는 가능하나 사업비 편성 및 집행 불가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다양한 국고보조사업(통합건강증진사업 이외 사업, 보건소 외 사업 등), 의료비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수행이 가능함

〈수행사례〉

만성질환예방관리 시 자살예방 및 우울감 등 정신건강증진상담 제공, 난임 부부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철분제 제공,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자에 다양한 영유아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건강관리 추진 시 고용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다.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전시성 사업 및 단순행사 편성 불가

제 3 절

사업 관리



01 계획보고

- ✦ 자료 : 사업목표, 사업별 세부내용 및 자원투입계획 등의 내용이 수록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서 파일
 - ※ 세부내용 <제4장 관련서식, 시·군·구 계획서 작성서식> 참조 (60쪽~68쪽)
- ✦ 방법 : 공문을 통한 파일 제출 및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내 '통합건강증진사업' 메뉴에서 내용 입력
 - 시도는 시·군·구 계획서 종합검토 및 환류 결과, 최종 계획서를 보건복지부로 보고함
 - 시도 및 시·군·구는 계획서 내용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함
 - ※ 계획서 파일 제출시기 및 세부입력 방법은 관련 공문에 따름
 - ※ '19년부터 사업계획 제출과 핵심성과지표 목표제출 시기를 분리함

제 3 장 행정사항

02 사업운영 현황보고

가. 총괄 현황보고

- ✦ 내용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 인력, 사업영역별 수행여부
- ✦ 방법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내 '통합건강증진사업' 메뉴에서 입력
- ✦ 일정 : 연 2회(상·하반기 현황보고)

구 분	현황보고 기한	내용
상반기 현황보고	2019.7	2019.1.1.~6.30. 실적
하반기 현황보고	2020.1	2019.1.1.~12.31. 실적

- 시·군·구는 현황보고 기한까지 정보시스템에 현황을 입력하고, 시도는 현황보고 마감이후 보고내용을 확인하며, 보건복지부는 최종 취합된 결과에 대하여 각 시도로 통보
 - ※ 교육 및 내용 등에 관련 세부사항은 <제4절 교육> 참조 (46쪽~55쪽)

나. 사업영역별 현황보고

- ※ 사업영역별 현황보고 내용 및 운영방법 등은 개별 사업영역별 안내서 참조
사업영역별 내용은 <부록 1. 사업영역별 설명서> 참조 (102쪽~134쪽)

03

결과보고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결과보고

- 시·군·구는 2019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결과보고서를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결과보고서를 평가하여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로 통보
- 제출자료
 - (시·군·구 → 시도) 결과보고서, 참고자료 목록
 - (시도 → 보건복지부) 시·군·구 결과보고서 취합자료 및 시도 평가표 시도 결과보고서 및 지원단 운영결과보고
 - ※ 제출시기 및 방법은 관련 공문에 따름
- 시·군·구는 2019년 통합건강증진사업 결과보고서를 시도에 제출
 - ※ 세부내용 <제4장 관련서식, 시·군·구 결과보고서 작성서식> 참조 (69쪽~78쪽)
- 시도
 - ① 시·군·구 결과보고서 취합자료
 - ② 시도 평가보고서(평가단의 평가의견 포함)
 - ※ 시도 평가보고서(82~86쪽) 서식 참조, 평가단 의견은 평가자 평가표를 제출하거나 자체 서식을 활용할 수 있음

제 4 절

교육



01 배경 및 추진방법

가. 배경 및 목적

- ❖ 보건소 건강증진인력의 역량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체계화된 교육 및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증진 전문가로 양성하고자 함
- ❖ 중앙과 시도의 인력양성에 대한 전략적 연계를 통해 현업수행을 지원하고, 업무효율성 제고를 통해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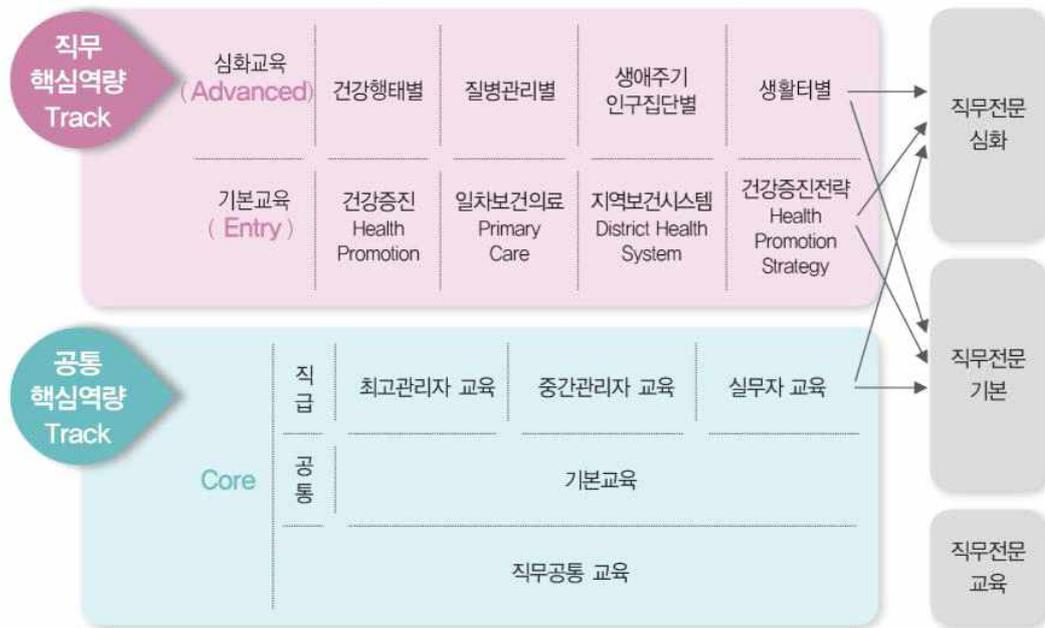
나. 주요 방향

- ❖ 신규자 직무핵심 기본역량교육을 강화하고 경력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심화교육 및 직급별 핵심역량 기반 교육 제공
- ❖ 시도는 지역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지역 건강증진 사업에 맞춘 교육훈련을 계획·실시
- ❖ 중앙은 시도의 교육이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며, 시도 교육과정에 대한 사전 심의·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교육의 질 관리

다. 수행체계

-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체계 구축, 표준화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총괄, 중앙과 시도 교육과정 심의·모니터링, 시도 교육컨설팅 및 역량강화 지원
- ❖ (시도)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기관을 통한 기획력 및 지역특화교육, 담당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개발 및 운영

라. 교육체계 및 핵심역량



지역사회 건강증진인력 중장기 교육체계

보건소 건강증진인력 핵심역량³⁾

- 공통핵심역량(공통 / 직급)
 - 7가지 역량 : ① 파트너십·협력 ② 사정 및 분석·조직화 ③ 기획능력 ④ 사업추진 및 실행능력, ⑤ 의사소통 ⑥ 다양성 및 통합성 ⑦ 리더십
- 직무핵심역량(Entry/ Advanced)
 - Entry(기본) 교육 :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기본 건강증진의 개념과 이론 등, 일차보건의료 프로그램, 지역보건시스템, 건강증진사업방법 및 전략 등에 대한 기초교육
 - Advanced(심화) 교육 : 건강행태별, 질병관리별, 생애주기·인구집단별, 생활터별로 필요한 전략 수립과 사업기획을 위한 심화교육

3)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인력 중장기 교육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4

02 2019년 교육

가. 교육대상

✦ 교육대상 :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인력

* 보건지소, 도시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포함

교육평가 제외 대상

- 1) 치매안심센터 인력(공무원, 전문인력 포함)
 - * 통합건강증진사업을 겸하는 공무원은 교육 대상임
- 2) 120일 미만 근무자
 - 인사 이동, 업무분장 변경, 휴직(질병, 육아 등) 등의 사유로 사업수행(근무)기간이 공휴일 포함 120일 미만 근무자는 제외(단, 일상적인 연가나 병가의 경우에는 수행기간으로 인정)
- 3) 주 20시간 이하 단시간 근무자
- 4) 금연단속 지도원
 - * 금연단속업무 담당 공무원은 교육 대상임
- 5) 고혈압·당뇨 등록교육센터 등 보건소 사업 위탁운영 기관 종사자
 - * 5)에 해당하는 센터 담당 공무원은 교육 대상임

제 3 장
행 정 사 항

나. 교육이수 기준

✦ 집합교육 의무 이수시간 : 14시간 이상

- 중앙 및 시도 교육을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지자체 교육운영 환경에 따라 시도 경계 없이 교육 이수 가능
- 단, 필수교육 대상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을 이수해야 함
 - ※ 필수교육 대상자 : 공무원(보건소장, 총괄 과장, 총괄 팀장, 총괄 담당자), 전문인력(신규자)

구분	대상		비고
필수 교육	공무원	보건소장	중앙 집합교육
		중간관리자(총괄 과장)	
		실무자(총괄 팀장 및 담당자, 2명 이내)	
전문인력	신규자		
선택 교육	공무원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 공무원	중앙 또는 시도지원단 집합교육
	전문인력	경력자	

❖ **이러닝교육 의무 이수시간: 4시간(신규인력 필수 이수)**

- 건강증진사업 담당 1년 이내 신규인력**(공무원 및 전문인력 모두 포함)은 집합 14시간 외에 이러닝 4시간 추가이수 의무

** 1년 이내 신규인력: ① '18년도 보건소 신규입사자 ② 공무원의 경우 2013년 이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인정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 이수 이력이 없는 자(소장, 과장, 계장은 제외) ③ 전문인력인 경우 '18년도 9월 1일 기준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교육 이수 이력이 없는 자

※ 통합건강증진사업 이러닝교육 인정과정 목록은 교육홈페이지(inhealth.kohi.or.kr)에 공지

※ 통합건강증진사업 이러닝 홈페이지(ihcyber.kohi.or.kr)에서 수강 가능

구분	대상	교육형태	의무 이수시간
기본	모든 교육대상	집합교육	14시간 이상
추가	신규인력 및 1년 이내 (공무원 및 전문인력 모두 포함)	이러닝교육	4시간

다. 교육 목표 이수율 : 85 % 이상 (보건소별 교육대상 인력대비 교육이수자)

라. 교육평가 방법

❖ 평가비율 : 보건소장 등 필수교육 10 %, 그 외 통합사업 인력 90 %

구분	필수교육 이수율(10 %)			그 외 통합사업인력 교육이수율
	보건소장 교육이수율	중간관리자 교육이수율	실무자 교육이수율	
적용비율	4 %	3 %	3 %	90 %

❖ **평가산식**

평가산식

※ 이수점수: 교육이수 1점, 교육 미이수 0점(교육과정별 최대 이수점수는 1점임)

$$\{(소장과정\ 이수점수) \times 100 \times 0.04\} + \{(관리자과정\ 이수점수) \times 100 \times 0.03\} + \{(실무자과정\ 이수점수) \times 100 \times 0.03\} + \{(그\ 외\ 통합사업\ 교육\ 이수자수 / 그\ 외\ 통합사업\ 수행인원수) \times 100 \times 0.9\}$$

- 필수교육 이수자: 보건소장, 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 과장·계장, 총괄 담당자
- 그 외 통합건강증진사업 이수자: 수행인력 중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집합교육을 14시간 이상 이수한 자(신규인력은 집합 14시간 외에 이러닝교육 4시간 이수 포함)

❖ 평가 주요사항

- 교육이수시간에 대한 교육승계 폐지(전출자, 퇴사자 교육승계 없음)

❖ 통합건강증진사업 집합교육 범위 및 기준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범위 및 기준	
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필수교육 및 선택교육
②	질병관리본부 및 국립재활원에서 직접 실시하는 교육
③	그 외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통과한 시도(지원단) 교육
④	위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이라 하더라도 사업설명회, 워크숍, 성과대회, 세미나, 해외연수, 포럼은 통합 건강증진사업 교육시간 인정에서 제외
※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홈페이지(inhealth.kohi.or.kr)에 인정과정 목록 공지	

제 3 장 행정사항

❖ 2019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체계

구분	교육대상			
	공무원	전문인력		
중앙	필수교육	1. 보건소장교육 2. 중간관리자교육(총괄 과장) 3. 실무자교육(총괄 팀장 및 담당자)	신규자 교육	
	선택 교육	공통	통계, 상담 등 보건공통역량교육	-
		직무	1. 직무핵심 역량교육 2. 직무전문교육(기본/심화) 질병관리본부 및 국립재활원 직접 교육	경력자 교육
	이러닝	통합건강증진사업 이수인정 이러닝 목록 내 교육		
시도	1. 사업기획 역량교육(2년 이상 전문인력 수강가능) 2. 지자체 특화사업교육 3. 광역 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 지원단, 광역 고혈압당뇨 교육정보센터, 광역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등 협업교육			
	-	4. 직무전문 경력자교육		

- * '중앙'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재활원 교육을 의미함
- * 시도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중앙에서 직접 실시하는 교육 제외)
- *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전문인력 교육이수 인정 가능

03 교육훈련기관 교육운영 및 결과보고

가. 교육계획 및 결과보고

✦ 교육계획 수립

- 시도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인력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힘써야 함
- 시도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기관으로 지정한 곳에서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외에 다른 지원단 교육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교육훈련계획 수립
- 시도는 지역 특성, 주민요구, 사업인력 및 교육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시도가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분야의 교육을 선정하여 수행
- 시도는 지자체 인력의 교육기회 제공을 고려하여 교육시기를 정해야 하며, 연 중 교육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인근 시도와 교육시기를 조정

✦ 연간 교육계획 수립 및 제출

- 시도는 시도에서 주관할 연간 교육운영 계획(안)을 수립하여 이를 2019년 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로 공문 제출
- 시도는 연간 교육운영 계획(안)에 따라 교육을 실시 또는 위탁하여 시행하되 각 교육과정별로 교육실시일 기준 2~3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의 교육심의 사전승인 필요

✦ 결과보고서 및 교육이수결과 제출

- 시도는 연간교육운영계획에 따라 시도에서 진행한 교육에 대한 최종결과보고를 보건복지부로 제출(제출양식 및 방법은 공문에 따름)

나. 교육과정 구성

- ✦ 교육과정을 구성할 경우, 교육대상에 적합한 교육목적과 목표를 수립하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역량 및 직무역량 중심으로 교육과정 구성
- ✦ 시도의 경우, 사업기획역량 및 지역특화사업 수행에 필요한 교육 개설 권장

❖ 교육과정 편성기준

구 분	내 용
교육일수 및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교육시간을 14시간 이상으로 구성(권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교육목적 및 근무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예 : 4시간씩, 4회 교육운영의 경우, 1개 교육과정 인정) - 식사, 휴식 등에 소요되는 시간은 교육시간에서 제외, 교육안내 및 수료를 위한 교육행정 시간은 인정함
교육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명 이내 소규모 교육이 원칙. 단, 교육목적에 따라 교육생 정원은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교육기획 단계에서부터 교육특성을 감안하여 교육인원 및 선발 계획 수립
교육목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목표는 교육의 목적과 관계된 목표여야 하며, 교육이수 후 교육생에게 기대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행동동사*로 표기 *행동동사 : 설명하다, 분석하다, 수립하다, 분류하다, 해결하다, 수정하다 등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담당인력의 직무와 교육요구도 고려, 지역사업특성을 반영한 교육내용으로 구성 신규자를 대상으로 한 과정의 경우, 공통교육 편성을 권장
참여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의내용에 대한 충분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전문성과 전문분야 활동 사항 등을 고려하여 선정
수료(교육이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교육시간 70 % 이상 참석에 한해 수료 인정 (단, 실제 참석시간만 이수시간으로 통보 가능)

제 3 장 행정사항

❖ 신규자 대상 공통 교과목(예시)

공통 교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건강증진사업 이해 해당사업의 정책과 방향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자원개발 및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보건의료 및 일차보건의료 이해 건강상담 및 민원응대 서비스제공과 담당자의 역할 시책교육(성인지 교육 등)

다. 심의 및 평가

❖ 심의대상

- 통합건강증진사업교육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시도의 교육과정

❖ 심의기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보건복지부 위탁 수행)

❖ 심의분야

- 통합건강증진사업(금연, 음주폐해예방(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예방관리,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한의약건강증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여성어린이특화, 치매관리, 지역사회중심재활, 방문건강관리) 및 기획역량/지역사회특화 등

❖ 절차 및 방법

- 심의절차 : ①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까지 교육과정 심의요청(시도) → ②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③ 심의결과 통보(심의접수(마감일기준) 후 15일 이내)
 - ※ 매월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교육 시작일이 2~3개월 전인 과정에 한해 접수 및 심의 예정
- 심의내용 : 과정 목적 및 목표, 교육대상 및 교육방법, 교육내용 및 교과목, 강사, 교육일정/장소/시간/인원 등 교육과정 편성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 심의결과통보 : 심의결과는 ‘인정’, ‘수정 후 인정’, ‘불인정’으로 통보되며, ‘수정 후 인정’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보완사항을 제출 후 재심의 필요
- 기존 승인 받은 사항에서 강사, 교육장소, 교육시간 등 단순사항에 대한 수정이 있을 시, 교육과정 시작 전 변동내역을 사전 신고
 - ※ 교육목표, 교과목 구성, 교육내용 변경인 경우 재심의 필요

❖ 현장 모니터링

- 보건복지부에서는 교육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중앙 및 시도는 교육운영 전반에 대해 문서화하여 모니터링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장 모니터링에서 사전 심의 받은 사항과 다른 사항이 있을 시, 보건복지부에서는 해당 교육과정의 통합건강증진사업교육 인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교육과정 심의·인정 절차

구 분	내 용	실시기관
신청	• 과정 계획서(안) 및 심의신청서 제출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까지)	시도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검토	• 심의위원회 개최(월1회) • 해당 교육과정 적절성 및 수행여부 검토	교육과정 심의위원회
결과통보	• 교육과정 심의결과 통보(15일 이내) ※ 재심의 필요시 보완사항 제출(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시도
과정운영 및 모니터링	• 계획서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시도
	• 현장 모니터링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라. 교육과정 운영 제반사항

✦ 교육과정 운영경비 및 지출

- 시도에서는 교육과정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개설·운영할 수 있음. 이때, 교육과정 운영경비는 교육참가자(공무원 포함)에게 교육비를 직접 납부받아 사용하거나, 시도에서 자체 교육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집행 가능
- 예산지출 및 강사비 지급 등에 대한 사항은 시도 학술편람 기준을 따름. 단, 시도 학술편람이 없을 경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훈령 제18호(2016.9.27.))」 등을 준용

✦ 교육생 근태관리 및 준수사항

- 교육담당자는 교육운영 시 교육생의 근태(결강, 결석, 지각 등)를 관리하여야 하며, 출석부에 직접 서명을 받아야 함
- 수료기준에 준하여 수료처리 하여야 하며, 미수료자에게 일부 이수시간을 인정할 수 없음

✦ 교육효과 평가

- 교육과정의 목표달성도, 강의만족도, 교육운영만족도, 현업적합성 등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만족도평가(1단계평가)를 실시
 - ※ 교육만족도 평가(1단계) → 학업성취도(2단계) → 현업적용도(3단계)에 걸쳐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평가방법을 교육과정기획 단계 시 고려하여 진행

04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정보시스템 활용

가. 목적

- ✦ 중앙 및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안내, 자료게시 등 교육정보 교류
- ✦ 개인별 교육이력 확인 및 지자체 교육이수 결과 확인 편의 제공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inhealth.kohi.or.kr>

나. 교육정보시스템 활용

- ✦ 회원가입
 - 개인별 교육 이수관리를 위해서는 교육정보시스템에 직접 회원가입 필요
 - 시도는 교육이력 등을 관리하기 위해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자가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시스템에 회원가입 하도록 독려하여야 함
- ✦ 교육이수 관리
 - 시도 및 시·군·구는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통합건강증진사업 종사자의 인력현황과 교육이수 실적을 관리할 수 있음(교육이수율 달성 여부 확인 등으로 사용 가능)

〈사업인력 및 교육실적 확인〉

연도별	지역	과소초등	이름	과장명	이수시간
14972				연안중학교장(연안초등학교)	29
15039				동천사립초등학교(동천초등학교)	29
15048				동천초등학교(동천초등학교)	29
15052				동천초등학교(동천초등학교)	29
15057				동천초등학교(동천초등학교)	29
15118				동천초등학교(동천초등학교)	29
15058				동천초등학교(동천초등학교)	29
15059				동천초등학교(동천초등학교)	29
15120				동천초등학교(동천초등학교)	29
15125				동천초등학교(동천초등학교)	29

✦ 교육과정 결과물 제출

- 시도는 교육과정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교육과정 결과물*을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정보 시스템(<http://inhealth.kohi.or.kr>)에 등록(업로드)*하고, 원본은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함
- * 교육과정 결과물: 최종 교육시간표, 최종 강사선정표, 수료자 명단, 출석부
- * 교육정보시스템 등록 게시판: 홈>교육관리>오프라인과정관리

제 3 장 행정사항

제 5 절

개인정보보호 안내



01 기본원칙

- ❖ 시도 및 시·군·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자치법규 등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시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
-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02 개인정보 보호 필수조치사항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그 수집 목적 범위에서 이용하여야 함
-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제한
 -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 개인정보 파기
 -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개인정보 유출 통지
 -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 시점 및 경위,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통보하여야 함

03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 개인정보 안전 조치 의무

- 개인정보가 분실·유출·위조·훼손 등이 되지 않도록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방화벽·백신·접근통제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 상시모니터링 개요

-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업무처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의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등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 업무처리 절차

- 개인정보 보호 위반 의심사례 발생 시 PHIS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소명 요청, 요청 받은 자는 10일 이내 사실에 입각하여 소명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후 PHIS에 등록
- 판정 결과 부적정한 경우 지자체에서는 해당 위반 사안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적의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로 공문 회신



☒ 유의사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무원징계령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처분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업무 목적으로만 개인정보 처리 수행

제4장 관련 서식

- 63 제1절 시·군·구 계획서 작성 서식
- 72 제2절 시·군·구 결과보고서 작성 서식
- 82 제3절 시도 계획서 작성 서식
- 85 제4절 시도 평가보고서 작성 서식
- 90 제5절 2019년 평가지표 및 지표설명
- 99 제6절 서비스 참여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제 1 절

시·군·구 계획서 작성 서식



2019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

2018. 12

제 4 장
관련서식

- * 계획 수립 시 본 작성서식의 틀과 내용은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되, 지자체 특성에 따라 서식 및 내용은 일부 변경하여 작성 가능
- * 표지 및 총괄표 제외, 본문 50쪽 이내 작성

지역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담당 실무자 (대표 연락처)	직급: _____ 성명: _____
	전화번호: _____ 전자우편: _____

목 차 (예시)

※ 지역사회 현황과 특성, 건강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현황, 사업선정 등 추진방향은 지역 보건의료계획 방향에 맞추어 2019년 실행계획을 수립함

2019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 총괄표

-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계획한 세부사업별 추진 현황을 표로 요약

I. 핵심성과계획

- 2019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방향 및 주요전략
- 핵심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근거

II. 사업 세부계획

- 사업별 세부계획
 - 추진배경, 사업목적, 자체성과지표(목표), 사업내용, 내·외부자원 소통·협력
 - 주요 추진일정

III. 자원투입계획

- 예산투입계획
 - '19년 예산 총괄표
- 인력투입계획
 - 인력투입 및 추진체계, 사업인력운용계획
- 조직운영계획

[첨부자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수립 활동

2019년 00시도 000시·군·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 총괄표(해당기간 : '19. 1.1~12.31)

〈총괄계획〉

투입예산	총 예산:	천원 (국비	천원, 시도비	천원, 시군구비	천원)
투입인력	총	명(공무원	명, 전문인력	명)	통합담당 팀명
핵심성과지표 ¹⁾	①				
	② ...				
우수사례 명					

〈사업별 계획〉

연번	사업명	사업관련 핵심성과지표명 ¹⁾	세부 사업영역 ²⁾	주요 서비스 제공 장소 ³⁾	주요 생애주기 사업대상 ⁴⁾
1					
2					
3					
4	...				

- 1) 보건소에서 선택한 핵심성과지표명을 작성(부록3. 핵심성과지표 정의서 참조 145쪽~149쪽), 해당 없을 경우 비워둠
- 2) ① 금연 ② 음주폐해예방(절주) ③ 신체활동 ④ 영양 ⑤ 비만예방관리 ⑥ 구강보건 ⑦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⑧ 한의약건강증진 ⑨ 아토피·천식 예방
⑩ 치매관리 ⑪ 지역사회중심재활 ⑫ 방문건강관리 중 해당 세부사업 영역의 번호 모두 작성. 예) ③④⑦
- 3) 보건소, 가정,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직장, 경로당, 복지관, 마을, 기타(작성) 중 작성. 중복 선택 가능
- 4)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임산부, 장애인, 기타(작성) 중 작성. 중복 선택 가능
- 5) 해당사업이 2019년 우수사례 사업에 포함 또는 관련되는지 여부를 o와 x 중 선택하여 작성



I. 핵심성과계획

1. 지역 현황

※ 지역사회 건강현황(건강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포함), 주민 수요, 전년도 평가결과 등 다양한 현황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지역사회에서 개선해야 하는 건강문제 도출

〈관련 평가지표〉

1. 지역현황과 연계성 있는 성과지표(목표)를 선정하였는가?
 - 가. 신뢰성 있는 자료를 통해 지역현황을 파악하였는가?
 - 나. 건강취약(건강사각지대, 취약계층) 현황을 파악하였는가?

2. 핵심성과계획

가. 목적

※ 해당 지역사회에서 핵심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나. 핵심성과지표

■ 핵심성과지표 및 최근 2년간 실적 ■

핵심성과지표명 ¹⁾	실적 ²⁾	
	'16	'17
①		
②		
:		

- 1) 16개 핵심성과지표 중 지자체 현황과 관련하여 궁극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지역의 건강지표로 선정
- 2) 지표의 추세를 볼 수 있도록 최근 '2개년의 지표값'을 작성하며, 비만유병률 및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을 활용할 경우, 이는 신규지표로써 지표명은 작성하되, 지표값은 작성은 제외

〈관련 평가지표〉

1. 지역현황과 연계성 있는 성과지표(목표)를 선정하였는가?
 - 다. 지역현황에 맞는 핵심성과지표(목표)를 선정하였는가?
3. 사업목표치는 합리적으로 수립하였는가?

II. 사업 세부계획

1. 사업명 (사업개수만큼 작성)

△△△사업(직접, 위탁/사업 시작년도 년)

* ○○시·군·구(○○보건소), ○○과(계)장(○○○), 담당자(○○○), 전화번호()

※ 직접 운영 또는 위탁운영 중 선택하여 작성

※ 사업 시작년도는 해당사업 내에서 중요도, 인력 및 예산투입 비중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작성

가. 추진배경

※ 해당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문제점 및 필요성을 간략히 기술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당 사업을 전개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구성

〈관련 평가지표〉

2. 지역현황과 연계성 있는 성과지표(목표)를 선정하였는가?

가. 신뢰성 있는 자료를 통해 지역현황을 파악하였는가?

나. 건강취약(건강사각지대, 취약계층) 현황을 파악하였는가?

나. 사업목적

다. 사업목표

자체성과지표명	실적			목표	'19년도 목표치	
	'16	'17	'18	'19	설정기준	자료원
...						

※ 자체성과지표에서 '16~'18년도는 실적치를, '19년도는 목표치를 작성함

※ 자체성과지표는 결과, 산출, 투입 등 지표의 성격 및 핵심성과지표와의 연계성을 고려함

-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를 의미하며 되도록 산출보다는 결과중심으로 제시

(예시 - 지역주민 및 사업 대상자의 건강문제 개선, 건강관련 지식·태도·행태 개선, 자기효능감 개선 등)

- 핵심성과지표와 관련된 사업의 경우 핵심성과지표와 연계성 있는 자체성과지표를 선정함

※ '19년 목표치 설정기준에는 목표 산출근거(산출식) 및 방법을 작성함

※ 설정기준에는 전년도 실적 및 내외부 평가결과 환류내용 포함 권장

〈관련 평가지표〉

1. 지역현황과 연계성 있는 성과지표(목표)를 선정하였는가?

라. 지역현황에 맞는 자체성과지표(목표)를 선정하였는가?

3. 사업목표치는 합리적으로 수립하였는가?

라. 사업내용

※ 세부사업 각각에 대해 다음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함

① 세부사업명	
사업대상	※ 해당 세부사업의 구체적인 대상자 및 사업 목표 규모 등을 작성함 - 사업대상은 개인 및 집단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나 생활터(어린이집, 학교, 직장, 경로당, 군대, 건강취약 마을, 아파트 등) 등도 사업대상이 될 수 있음 <예: 어린이집 원아(×), 어린이집 10개소 200명(○)>
사업 내용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세부 활동계획을 작성함 ※ 사업내용 및 방법을 토대로 사업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함 ※ 사업영역별 설명서와 사업방법을 참고하여, 사업성격에 맞게 다양한 영역과 전략을 적용함 <부록1, 부록2> ※ 건강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대상 사업내용을 포함할 것을 권장함 (건강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대상만을 대상으로 단독 세부사업을 할 경우 별도 작성가능) ※ 내·외부 모니터링 및 평가결과를 반영한 내용이 포함할 것을 권장함
소통·협력 내용	내부 자원 ※ 보건소 및 하부기관(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해당 해당 세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보건소 내부 연계 및 협력내용을 작성함
	외부 자원 ※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의료기관, 시·군·구청 관계부서, 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 해당 지역사회 관련기관 협력연계 및 역할구분, 주민의견 및 요구도 수렴 내용 포함

<관련 평가지표>

2. 사업목표에 맞는 사업내용을 계획하였는가?
 - 가. 목표에 맞는 사업대상(건강취약대상 포함)을 선정하였는가?
 - 나. 목표에 맞게 건강영역을 통합하여 사업계획을 하였는가?
 - 다. 목표에 맞는 다양한 사업전략을 투입하였는가?
 - 라.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4. 내부자원과 소통·협력하여 사업을 운영하였는가?
5.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가?

마. 자체 모니터링 및 환류방안

- ※ 사업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는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함
- ※ 평가기준, 평가주기, 평가자, 평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함

<관련 평가지표>

6. 사업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충실히 운영하였는가?
 - 나. 내·외부 모니터링(중간평가)를 충실히 수행하였는가?
 - 다. 내·외부 모니터링 및 평가결과를 사업추진 시 수정·반영하였는가?

바. 주요 추진일정

※ 사업별 주요업무를 3개 이내로 선정하여, 주요업무별 시행내용을 간단히 작성함(예시- 2월, 주민간담회)

구분(예시)	세부 사업명①	주요 실행업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명1	세부 사업명②												
	세부 사업명③												

〈관련 평가지표〉

6. 사업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충실히 운영하였는가?

나. 사업 중간평가(모니터링)를 충실히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사업운영과정 중에 조정·반영하였는가?

III. 자원투입계획

1. 예산투입계획

- ※ 총괄표의 합계 및 세부 예산은 4개 내역사업으로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교부액의 합계와 동일해야함
- ※ 지방비(시도비, 시·군·구비)에는 추가 투입된 지방비를 모두 포함하여 작성함
- ※ 인건비는 반드시 구분하여 작성함
- ※ 통합사업 예산 내 치매감별 검사비는 필요시에만 작성하며, 책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명을 추가하여 작성함
(단위 : 천원)

사업명	합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방문건강관리				모바일 헬스 케어			
	계	국비	시도 비	시·군· 구비	계	국비	시도 비	시·군· 구비	계	국비	시도 비	시·군· 구비	계	국비	시도 비	시·군· 구비	계	국비	시도 비	시·군· 구비
총예산																				
인건비																				
사업비 계																				
1. 사업명																				
2. 사업명																				
3. 치매감별 검사																				
...																				

〈관련 평가지표〉

8. 계획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하였는가?

2. 인력투입계획

인력명	고용형태	자격내용	사업명	사업영역	재원구분

-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투입되는 전체 인력에 대한 현황을 제시함
인력명 작성시 미정인 경우 미정1, 미정2로 작성함
- ※ 고용형태는 공무원은 '직렬 및 직급', 공중보건직사는 '공중보건직사', 그 외 인력은 아래의 명칭을 사용함
무기계약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외주인력(위탁)
- ※ 자격내용은 인력의 전문자격을 작성함 (예 : 영양사, 의사 등)
- ※ 사업명은 사업 세부계획에 제시된 '사업명'을 그대로 작성함
- ※ 사업영역은 주된 업무 영역으로 작성함
(주의 : 통합건강증진사업 채용인력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역 중 주된 업무가 금연 영역이 될 수 없음)
- ※ 재원구분은 국비+지방비, 시도비+시·군·구비, 시도비 100 %, 시·군·구비 100 % 중 작성함
(공무원은 작성하지 않음, 단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작성함)

3. 조직 운영 계획

-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운영계획을 작성함
 - 사업담당자 규모와 업무분장을 알 수 있도록 표시
 - 현재 보건소(의료원) 조직도를 제시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조직도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함께 제시함
 -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및 분소, 출장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보건소 하부기관과의 업무체계도 함께 고려하여 작성함

〈관련 평가지표〉

- 6. 사업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충실히 운영하였는가?
 - 나. 내·외부 모니터링(중간평가)를 충실히 수행하였는가?
 - 다. 내·외부 모니터링 및 평가결과를 사업추진 시 수정·반영하였는가?

[첨부자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수립 활동

-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수립하기 위한 기획팀 구성, 수립과정, 의견수렴 등 전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표 및 작성수립과정을 작성함(관련 공문 등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 기획팀 구성 명단 및 구체적인 활동내용(회의 내용, 회의 결과 요약, 계획에 결과 반영내용)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각종 협의체, 이해관계자 회의개최 및 의견수렴 결과
- ※ 계획수립 과정, 협의체 구성·운영결과, 주민의견수렴 결과 등은 추후 사업 성과관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변경사항] 아래 핵심성과계획 목표는 계획서 제출과 별도제출(7월 경 별도공문 안내 예정)

I. 핵심성과계획 목표

1. 핵심성과지표

■ 핵심성과지표 및 목표 ■

핵심성과지표명 ¹⁾	실적 ²⁾			목표 ³⁾	목표치 설정기준 ⁴⁾
	'16	'17	'18	'19	
①					
②					
:					

- 1) 16개 정량지표 중 핵심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선정
- 2) 지표의 추세를 데이터의 경향성을 볼 수 있도록 최근 '3개년의 지표값' 작성
단, 신규 핵심성과지표인 비만유병률과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18년 실적부터 활용 가능
- 3)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보다 과거 추세치, 지역수준, 국가 목표 등을 비교하여 향상된 목표 설정
- 4) 목표치 설정의 기준에는 기준(과거 추세치, 지역수준, 국가 목표 등) 대비 % 향상, 유지, 감소인지 목표를 산출한 기준작성 (예: '17년도 실적값 대비 1%p 향상)

■ 핵심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근거 ■

- ① 핵심성과지표명
 -
- ② 핵심성과지표명
 -

※ 목표치 설정 방법(부록 4), 현황자료 등을 참고하여 지표별 목표치 설정기준을 수립하게 된 근거 작성

〈관련 평가지표〉

1. 지역현황과 연계성 있는 성과지표(목표)를 선정하였는가?
다. 지역현황에 맞는 핵심성과지표(목표)를 선정하였는가?
3. 사업목표치는 합리적으로 수립하였는가?
7. 계획한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제 2 절

시·군·구 결과보고서 작성 서식



2019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결과보고서

2020. 2

지역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담당 실무자 (대표 연락처)	직급: _____ 성명: _____
	전화번호: _____ 전자우편: _____

2019년 00시도 000시군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결과 총괄표(해당기간 : '19. 1.1~12.31)

<총괄결과>

예산 ¹⁾	총 투입예산 천원 (국비 천원, 시도비 천원, 시군구비 천원)	집행액 천원(
통합담당 보건소 인력	총 명(공무원 명, 전문인력 명)	통합담당 팀명
사업전체 자체목표의 평균 달성률 ²⁾	사업 전체 목표의 개수는 ____개로 100 % 이상 달성 지표는 ____개, 사업전체 목표치의 평균 달성률 ____	
우수사례 명	(

<사업별 결과>

연번	사업명	사업관련 핵심성과지표명 ³⁾	세부 사업영역 ⁴⁾	주요 서비스 제공 장소 ⁵⁾	주요 생애주기 사업대상 ⁶⁾	사업별 자체목표 평균 달성률 ⁷⁾	우
1							
2							
3							
4	...						

- 1) ⑤ 예산 및 집행현황 관련으로 해당사항을 작성함. 집행률의 경우 소숫점 첫째자리까지 작성함
- 2) ④ 사업목표 달성도 관련, 통합사업 목표치 전체의 개수, 100 % 이상 달성한 개수, 전체 사업 목표치의 평균 달성률을 소숫점 첫째자리까지 작성함
예) 목표A 달성률 50 %, 목표B 달성률 25 %, 목표C 달성률 75 %인 경우 (50+25+75)/3=50.0 %으로 50.0을 작성함
- 3) 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운영 및 성과 관련으로 계획서 총괄표와 동일. 핵심성과지표(정량지표) 중 사업과 관련되는 지표명 전체작성, 해당 없음
- 4) 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운영 및 성과 관련으로 계획서 총괄표와 동일
① 금연 ② 음주폐해예방(절주) ③ 신체활동 ④ 영양 ⑤ 비만예방관리 ⑥ 구강보건 ⑦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⑧ 한의약건강증진 ⑨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⑩ 여성건강 ⑪ 치매관리 ⑫ 지역사회중심재활 ⑬ 방문건강관리 중 해당 세부사업 영역의 번호 모두 작성. 예) ③④⑦
- 5) 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운영 및 성과 관련으로 계획서 총괄표와 동일. 보건소, 가정,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직장, 경로당, 복지관, 마을, 기타
- 6) 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운영 및 성과 관련으로 계획서 총괄표와 동일.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임산부, 장애인 기타(작성) 중 작성
- 7) ④ 사업목표 달성도 관련, 해당사업별 목표치 전체의 달성률의 평균값 작성(사업별 목표에 대한 달성률로 핵심성과지표와 자체성과지표 모두를 포함함)
- 8) 해당사업이 2019년 우수사례 사업에 포함 또는 관련되는지 여부를 o와 x 중 선택하여 작성



1. 2019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성과 (15쪽 이내)

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운영 및 성과

1. 사업명 : (계획서에 있는 사업별로 동일하게 작성)

○ 사업목적 :

구분	세부사업명①	세부사업명②	세부사업명③ ...
■ 사업 시작년도 ¹⁾			
■ 사업대상 및 규모 ²⁾			
■ 사업전략 및 내용 ³⁾			
■ 사업성과 ⁴⁾			
■ 2020년 환류계획 ⁵⁾			

○ 주요 추진일정⁶⁾

구분(예시)	주요 실행업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명 1	세부사업명①												
	세부사업명②												
	세부사업명③												

<관련 평가지표>

6. 사업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충실히 운영하였는가?

<작성안내>

1. 사업은 계획서에 있는 사업 개수별로 동일하게 작성

* 사업명이 계획서와 다른 경우, 해당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 평가자가 알 수 있도록 함

2. 내용을 명확하게 요약하여 기재하고 분량이 많을 시 참고자료 혹은 별도자료로 제출

3. 작성사항

1) 세부사업의 시작년도를 작성하며, 신규 사업인 경우 2019년으로 작성함. 해당사업 내에서 중요도, 인력 및 예산 투입 비중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작성

2) '사업대상'은 해당 사업의 수혜자로, 계획서와 연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사업규모'는 사업대상에게 제공된 서비스 규모나 인원작성. 연속적 수행 사업은 전년대비 변화현황 작성

3) '사업전략 및 내용'은 수행한 전략 및 서비스 내용을 작성하되 중점적으로 추진한 내용을 위주로 계획서에 대비하여 제시

4) '사업성과'는 사업수행으로 인한 주요성과(주민체감향상, 목표 대비 달성, 전년도 대비 개선사항 등)나 차별점, 성공요인 등을 강조하여 작성

5) '2020년 환류계획'은 해당 세부사업에 대한 기획, 운영, 성과를 확인하여, 2019년 사업투입 인력, 예산, 사업량, 사업성과 목표치 등을 고려한 뒤, 확대·강화/유지/축소/폐지 중 선택작성 (예: 확대·강화)

6) 주요 추진일정에는 계획서와 연관하여, 실질적으로 추진한 사업별 주요업무 실행결과를 작성함.

주요 업무별 시행내용을 각 해당 월에 간단히 작성함(예: 2월 주민간담회 추진, 6월 교육자료 배포)

계획과 다르게 사업추진 결과,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경우 해당사유를 별로 작성함

2 내·외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참여

1) 내부자원 소통·협력 내용

추진단계	일정	참석자	주요안건	주요결론	환류사항
사업계획					
사업운영					
사업평가					
우수사례 선정·추진					

2) 사업대상 주민의견 수렴·반영 내용

추진단계	일정	대상주민	관련사업명	주요내용	환류사항
사업계획					
사업운영					
사업평가					

〈관련 평가지표〉

2. 사업목표에 맞는 사업내용을 계획하였는가?
 - 라.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6. 사업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충실히 운영하였는가?
 - 나. 내·외부 모니터링(중간평가)를 충실히 수행하였는가?
 - 다. 내·외부 모니터링 및 평가결과를 사업추진 시 수정·반영하였는가?

〈작성안내〉

1) 내·외부 자원 소통·협력 내용

- ① 각 사업추진 과정에서 보건소 등 기관 내 관계자, 부서 간 협력을 위한 정기회의 및 간담회 등 내부 소통·협력을 위한 활동을 위주로 작성
- ② 참석자 란에는 보건소장 및 팀장 이상의 관리자의 참석 시 그 현황 및 역할을 필히 작성함
- ③ 환류사항에는 주요결론에 대하여 수정·반영한 내용에 대하여 작성

2) 사업대상 주민의견 수렴·반영 내용

- ①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현황 및 의견 등을 수렴한 경우 사업에 따라 대상주민 및 주요내용 및 사업 내 환류현황 및 향후 계획을 작성함
- ② 환류사항에는 주요의견에 대하여 수정·반영한 내용에 대하여 작성함

3) 지역사회 자원 연계·협력 내용

① 사업명 :

추진단계	자원 현황	연계 목적	주요역할 및 협력사항	참여결과	지역자원 지속 및 자발적 참여 노력사항
사업계획					
사업운영					
사업평가					

〈관련 평가지표〉

5.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가?

각 사업별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한 경우 작성함

① 지역사회 자원 현황 : 사업추진단계에 따라 협력한 지역자원 현황에는 명칭(기관명, 대상자 소속 및 단체 등)과 참석규모를 작성함

② 연계 목적 및 주요역할, 참여결과 : 해당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를 하게 된 목적을 작성하여, 해당 자원의 역할 또는 협력사항 등 협의된 사항을 작성하고, 실행 한 결과를 참여결과에 작성함

③ 지역자원 지속 및 자발적 참여 노력사항 : 해당 지역사회 자원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항에 대해서 작성함

(예: 지도자 교육프로그램 실시, 동아리 리더간 정례적 간담회 개최, 월별 협의회 개최, 온라인 커뮤니티 결성 등)

③ 내·부 모니터링·평가 수행 및 반영내용

① 보건소 내부 모니터링(중간평가)에 따른 사업수행결과

일시	참석자	주요내용	환류실적

② 시도 통합사업 지원단 등 외부 모니터링·평가에 따른 사업수행결과

일시	참석자	주요내용	환류실적

〈관련 평가지표〉

6. 사업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충실히 운영하였는가?

나. 사업 중간평가(모니터링)를 충실히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사업운영과정 중에 조정·반영하였는가?

다. 내·외부 모니터링 및 평가결과를 사업추진 시 수정·반영하였는가?

1) 보건소 내부 모니터링·점검에 따른 사업수행결과

- ① 안정적 사업운영 및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내부의 자체적인 모니터링 및 중간점검을 수행한 결과를 작성(계획서 내 주요 사업추진사항이 계획된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진행되는 지 등 점검)
- ② 참석자 란에는 보건소장 및 팀장 이상의 관리자의 참석 시 그 현황 및 역할을 필히 작성
- ③ 환류사항에는 주요내용에 대하여 사업 내 환류현황 및 향후 계획을 작성함

2) 시도 통합사업 지원단 등 외부 모니터링·평가에 따른 사업수행결과

- ① 객관적이고 전문적 성과관리를 위하여, 시도 통합사업 지원단, 외부 전문가 등에 의하여 추진 된 모니터링 및 평가(시도 통합사업 평가결과 포함) 주요결과 작성
- ② 참석자 란에는 외부 수행기관, 보건소장 및 팀장 이상의 관리자의 참석 시 그 현황을 작성
- ③ 환류사항에는 모니터링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수정·반영한 내용에 대하여 작성

4 사업목표 달성도

사업명	성과지표	계획(A)	달성(B)	달성률 ((B/A)×100)	미달성 사유	변경 사유
(사업 개수 만큼 작성)						
	⋮					

〈관련 평가지표〉

8. 계획한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가. 결과보고서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가 계획서와 일치하는가?

다. 자체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작성안내〉

- 1) 계획서에 수립한 사업별 자체성과지표를 모두 반영하며, 핵심성과지표는 작성하지 않음
- 2) 변경사유에는 자체성과지표와 계획서와 다른 경우 그 사유를 간단히 작성
- 3) 결과 총괄표의 사업전체 자체목표의 평균 달성률과 맞추어 작성

5 예산 및 집행현황

〈'19년 사업예산 및 집행현황〉

(천원)

상반기 집행현황	하반기 집행현황	총 예산액
* 집행액(집행률)	* 집행액(집행률)	집행액(집행률)

〈관련 평가지표〉

9. 계획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하였는가?

〈작성안내〉

- 1) 상반기, 하반기 각각의 집행액 및 집행률 작성
- 2) 총 예산액에는 연간 전체 집행액 및 집행률 작성

2.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 (5쪽 이내, 대분류(1~4)는 유지, 이외 자유롭게 작성 가능)

사 업 명			
담당	담당: OO과, 담당자: 000, ☎(000)-0000-0000)	사업 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_년 연속 ¹⁾

건강영역 ²⁾	사업대상 ³⁾	핵심 사업전략 ⁴⁾
예) 아토피 등 기타영역	예) 영유아 및 임신부	예) 지역실태 중심

1 추진배경⁵⁾

- 현황 및 사업선정 배경

2 추진내용⁶⁾

- 사업 목적 및 목표
- 사업대상, 사업내용(전략 및 건강영역 등), 내·외부 연계·협력
-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 예산 등

3 추진성과⁷⁾

- 목표 달성도 및 주요 성과, 모니터링, 환류실적

4 질의와 응답

- 성공요인, 문제발생 시 해결전략 등 타 기관에서 귀 기관의 사례에 대해 궁금할 만한 사항에 대하여 자가 질의 및 응답 수행(2~3개)



〈관련 평가지표〉

9. 우수사례

가. 계획의 타당성/나. 운영의 노력성/다. 사업의 효과성/라. 확산·활용 가능성/마. 지속·발전성

〈작성안내〉

1) 사업구분에 2019년 처음 시작된 사업은 신규, 연속사업인 경우 연속에 표시하며, 시작년도를 작성

2) 건강영역 : 금연·절주영역 / 영양·비만·신체활동영역 / 심뇌·재활영역 / 치매·방문영역 / 아토피·천식 등 기타영역 중 가장 주요영역을 1개 선택, 작성

3) 사업대상 : 영유아 및 임신부, 아동 및 청소년, 성인, 노인, 전체, 기타 중 가장 주요대상을 1개 선택, 작성

4) 핵심사업 전략 : 지역실태 중심 / 주민참여 특화 / 리더쉽 및 협력체계 강화 / 형평성 강화 / 특정 생애주기 및 전략집중 중 가장 근접한 전략을 1개 협의·선택하여 작성

* 지역실태 중심 :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건강환경 및 건강지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기획, 추진한 우수사례

* 주민참여 특화 : 사업의 기획, 운영, 평가과정에서 주민의 요구를 수렴하고 반영하는 과정이 뛰어난 우수사례

* 리더쉽 및 협력체계 강화 : 보건소장, 시·군·구청장 등 기관장 주도의 사업 협력 및 추진 전략이 뛰어난 우수사례

* 형평성 강화 : 장애인, 노숙인, 미혼모, 도서벽지주민 등 다양한 건강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대상의 사업전략이 중점인 우수사례

* 생애주기 또는 집중사업 전략 : 노인 등 특정 생애주기 사업대상에 집중된 우수사례이거나 사업전략(상담/교육/홍보/사회적·물리적 환경조성/지역사회 협력 등)이 집중된 우수사례

5) 추진배경에는 본 우수사례를 실시하게 된 구체적 현황 작성

6) 사업내용에는 사업의 목적, 목표(수치화), 사업내용, 사업투입 현황 등을 작성 가능

7) 질의와 응답에는 성공요인, 문제발생 시 해결전략 등을 중심으로 타 기관에서 귀 기관의 사례에 대해 궁금할 만한 사항에 대하여 자가 질의 및 응답 2~3개 정도 작성

붙임1 참고자료(증빙자료)

- ❖ 참고자료는 추가적인 설명을 통해 결과보고서를 보완하는 자료이므로 추가설명이 필요한 내용에 한하여 작성하되, 시도의 요청에 따라 작성기준 변경될 수 있음
- ❖ 우수사례의 참고자료도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

구분	참고자료

* 구분은 결과보고서 내용과 쉽게 맞추어 볼 수 있도록 해당 주제 및 쪽수를 작성함

제 4 장
관련서식

제 3 절

시도 계획서 작성 서식



2019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

2018. 12

계획 수립 시 본 작성서식의 틀과 내용은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되, 지자체 특성에 따라 서식 및 내용은 일부 변경하여 작성 가능

○○ 시도

목 차 (예시)

I. 사업 세부계획

- 시도 단위의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시 작성함
- 지역사회 현황과 특성, 사업선정 등 추진방향은 지역보건의료계획 방향에 맞추어 2019년 실행계획을 수립함
- 시·군·구 계획서 작성안내 참조

II.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 지원단 운영계획(위탁기관, 인력구성 및 수행체계, 예산 등)

III. 시·군·구 지도감독 및 성과관리계획

- 시·군·구 및 시도 성과관리계획

IV. 자원투입계획

- 예산 편성계획

[첨부자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활동

❖ 서식

I. 사업 세부계획

※ '광역단위 통합건강증진사업(시도사업 및 시·군·구 공동사업)' 추진 시 작성함

II.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 <제5절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참조하여 작성함

III. 지도감독 및 성과관리 계획

※ 관할지역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사항, 목표 대비 달성도, 자체평가 결과, 예산집행내용 등 추진사항 현장 모니터링, 지도점검 및 성과관리(계획-사업운영-평가) 실시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함

※ 반기/분기/연간 등 시·군·구 지도감독 및 성과관리 계획 수립

※ 추진결과에 대하여 시·군·구에 환류계획 수립

※ 교육운영계획 별도 제출

IV. 자원투입계획

■ 2019년 예산총괄표 (서식) ■

※ 총괄표의 합계 및 세부 예산은 4개 내역사업으로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교부액의 합계와 동일해야함

(단위 : 천원)

사업명	합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방문건강관리				모바일 헬스 케어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총예산																				
1. 사업명																				
2. 사업명																				

※ 시도에 직접 배분된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함(시·군·구비 보조예산은 작성하지 않음)

※ 재원에 대하여 국비, 시도비로 구분하여 작성함

※ 사업비는 광역단위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시·군·구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성과관리 및 지도감독 등을 위한 운영비를 작성함

※ 지원단 운영비는 지원단에 위탁 계약한 운영비 예산을 작성함(지원단 인력 인건비, 사업비 포함)

※ 인건비는 시도 사업추진을 위해 고용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있을 경우에만 작성함

[첨부자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활동

제 4 절

시도 평가보고서 작성 서식



2019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보고서

제 4 장
관련서식

2020. 2

○○ 시도

1. 평가개요

① 평가개요

※ 평가일정, 평가단 구성현황(위원성명, 소속기관 및 전공, 지원단 내부·외부위원 구분), 평가방법, 추진과정 등 평가수행을 위한 전반적 개요 작성

② 평가기준 및 배점

※ 시도 자체평가지표를 수립하거나 배점을 조정하여 평가한 경우는 필히 작성하고, 자체평가지표에 대한 세부기준 제시 필요

※ 중앙의 평가기준 및 배점과 동일할 경우 제시하지 않음

2. 평가결과

① 종합결과

시·군·구명	계획 (정성 25)	운영 (정성 30)	성과(25)		우수사례 (정성 20)	총점(100)
			(정성 5)	(정량 20)		
...						

②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 ② 종합결과와 아래 영역별 점수의 합이 일치하도록 검토, 작성

① 계획영역(25점)

시·군·구명	1. 지역현황과 연계성 있는 성과지표(목표)를 선정하였는가?				2. 사업목표에 맞는 사업내용을 계획하였는가?				3. 사업목표치는 합리적으로 수립하였는가? (3)	계획 총점
	가 (3)	나 (3)	다 (3)	라 (3)	가 (4)	나 (2)	다 (2)	라 (2)		
...										

② 운영영역(30점)

시·군·구명	4. 내부자원과 소통·협력하여 사업을 운영하였는가?		5.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가?			6. 사업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충실히 운영하였는가?				운영 총점
	가 (2)	나 (3)	가 (3)	나 (3)	다 (4)	가 (3)	나 (4)	다 (4)	라 (4)	
...										

제 4 장
관 련 서 식

③ 성과영역(25점)

시·군·구명	7. 계획한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8. 계획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하였는가? (5, 정량)	성과 총점
	가 (5)	나 (10, 정량)	다 (5, 정량)		

④ 우수사례 영역(20점)

시·군·구명	구분*	가. 계획의 타당성(5)	나. 운영의 노력성(5)	다. 사업의 효과성(5)	라. 확산·활용 가능성(3)	마. 지속· 발전성(2)	우수사례 총점

* 구분에는 신규 또는 연속으로 작성

3 핵심성과지표 평가결과

※ 핵심성과지표는 해당지표의 목표달성을 범위에 따라 변환시킨 점수를, 평균은 최종 평균점수 작성

시·군·구명	핵심성과지표																평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2019년 16개 핵심성과지표별 번호>

1. 성인 남자 현재 흡연율
2. 흡연자의 금연시도율
3. 비흡연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4. 월간 음주율
5. 고위험 음주율
6. 영양표시 독해율
7. 5일 이상 아침식사 실천율
8. 걷기 실천율
9.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10. 비만유병률
11. 모유수유 실천율
12. 어제 점심식사 후 치솔질 실천율
13. 혈압 인지율
14. 혈당 인지율,
15. 1년 후 300일 이상 고혈압 투약 순응률
16. 1년 후 300일 이상 당뇨 투약 순응률



4 종합평가의견

※ 관할 지자체 평가결과에 대한 평가단 및 시도의 종합의견 작성
본 의견은 향후 평가결과 환류 및 기술지원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

5 평가결과 환류계획

※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시기, 방법, 참석대상 등 작성

제 5 절

2019년 평가지표 및 지표설명



◆ 2019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지표 총괄표

영역	평가지표	배점	평가자료
계획 (정성 25)	1. 지역현황과 연계성 있는 성과지표(목표)를 선정하였는가?	12	계획서
	2. 사업목표에 맞는 사업내용을 계획하였는가?	10	계획서
	3. 사업목표치는 합리적으로 수립하였는가?	3	계획서
운영 (정성 30)	4. 내부자원과 소통·협력하여 사업을 운영하였는가?	5	결과보고서
	5.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가?	10	결과보고서
	6. 사업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충실히 운영하였는가?	15	계획서 결과보고서
성과 (정량 20 정성 5)	7. 계획한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20	계획서 결과보고서
	8. 계획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하였는가?	5	계획서 결과보고서
우수사례 (정성 20)	9. 대표 우수사례	20	결과보고서
총계(정성 80, 정량 20)		100	

◆ 2019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세부평가지표

평가지표(배점)	세부지표	배점
1. 지역현황과 연계성 있는 성과지표(목표)를 선정하였는가? (12)	가. 신뢰성 있는 자료를 통해 지역현황을 파악하였는가?	3
	나. 건강취약(건강사각지대, 취약계층) 현황을 파악하였는가?	3
	다. 지역현황에 맞는 핵심성과지표(목표)를 선정하였는가?	3
	라. 지역현황에 맞는 자체성과지표(목표)를 선정하였는가?	3

평가지표(배점)	세부지표	배점
2. 사업목표에 맞는 사업내용을 계획하였는가? (10)	가. 목표에 맞는 사업대상(건강취약대상 포함)을 선정하였는가?	4
	나. 목표에 맞게 건강영역을 통합하여 사업계획을 하였는가?	2
	다. 목표에 맞는 다양한 사업전략을 투입하였는가?	2
	라.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2
3. 사업목표치는 합리적으로 수립하였는가?(3)	좌동	3
4. 내부자원과 소통·협력하여 사업을 운영하였는가?(5)	가. 보건소 내 관계부서와의 소통·협력과정이 정례적이고, 충실하게 이루어졌는가?	2
	나. 보건소 내 소통·협의과정에 보건소장 및 팀장 이상 관리자들의 참여와 지원이 충분하였는가?	3
5.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가?(10)	가. 사업전략에 맞는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투입하였는가?	3
	나. 지역사회 자원이 각 역할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하였는가?	3
	다. 지역사회 자원이 지속적,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는가?	4
6. 사업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충실히 운영하였는가?(10)	가. 계획된 일정대로 원활히 사업이 운영되었는가?	3
	나. 내·외부 모니터링(중간평가)을 충실히 수행하였는가?	4
	다. 내·외부 모니터링 및 평가결과를 사업추진 시 수정·반영 하였는가?	4
	라. 계획된 사업내용이 충실히 운영되었는가?	4
7. 계획한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20)	가. 결과보고서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가 계획서와 일치하는가?	5
	나. 핵심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정량)	10
	다. 자체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정량)	5
8. 계획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하였는가? (5)	좌동(정량)	5
9. 대표 우수사례(20)	가. 계획의 타당성	5
	나. 운영의 노력성	5
	다. 사업의 효과성	5
	라. 확산·활용 가능성	3
	마. 지속·발전성	2
총계(정성 80, 정량 20)		100

제 4 장
관 련 서 식

◆ 평가지표별 세부기준 및 설명

※ 세부지표별로 제시된 점검 척도는 내·외부 사업수행 모니터링 및 중간평가 등에서 활용

1. 지역현황과 연계성 있는 성과지표(목표)를 선정하였는가?

- 지역의 건강문제, 인구규모, 지리적 현황, 건강취약 등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계성 있는 사업목표를 선정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세부지표	배점	점검 척도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가. 신뢰성 있는 자료를 통해 지역현황을 파악하였는가?	3	3	2	1
나. 건강취약(건강사각지대, 취약계층) 현황을 파악하였는가?	3	3	2	1
다. 지역현황에 맞는 핵심성과지표(목표)를 선정하였는가?	3	3	2	1
라. 지역현황에 맞는 자체성과지표(목표)를 선정하였는가?	3	3	2	1

〈지표설명〉

가. 나.

국가승인통계자료(국민건강영양조사,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 지역통계, 주민수요 결과, 전년도 평가결과 등 근거가 명확한 현황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건강문제 및 건강사각지대, 취약계층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다.

핵심성과지표는 16개 핵심성과지표 중 지역현황과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선정하며 아래의 항목도 고려한다.

-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지표
- 타 지역과 비교하여 취약한 지표
- 다양한 사업을 고려, 핵심성과로서 대표성을 가지는 지표

라.

자체성과지표(목표)는 결과, 산출, 투입과정 및 핵심성과지표와 연계성을 고려한다.

목표치는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설정하고, 비율 등 수치화하여 표현되어야 한다.

- 자체성과지표(목표)는 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대상, 시기 등 구체적으로 수립함
- 자체성과지표(목표)는 산출(과정)지표에 치중되지 않도록 함. 예시로 지역사회 환경, 주민 등 사업대상의 건강 문제, 건강관련 지식·태도·행태(행동), 자기효능감 개선 등이 있음
- 핵심성과지표와 관련된 사업의 경우 핵심성과지표와 연계성 있는 자체성과지표를 선정함
-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산출식, 자료원(출처)이 명확하고, 산출근거가 논리적으로 타당하여야 함

2. 사업목표에 맞는 사업내용을 계획하였는가?

- 사업의 내용 또는 추진방식이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효과적이고, 사업대상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합한 전략을 수행하였는지 평가한다.

세부지표	배점	점검 척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가. 목표에 맞는 사업대상(건강취약대상 포함)을 선정하였는가?	4	4	3	2	1
나. 목표에 맞게 건강영역을 통합하여 사업계획을 하였는가?	2		2	1	
다. 목표에 맞는 다양한 사업전략을 투입하였는가?	2		2	1	
라.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2		2	1	

〈지표설명〉

- 가. 사업대상은 목표에 맞게 선정하고, 수치화하여 표현한다.
건강취약계층 및 건강사각지대가 사업대상(자체적으로 정의한 대상 포함)에 포함되어야 한다.
- 나. 사업대상(표적집단), 목적 및 목표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건강영역들을 통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다. 사업대상(표적집단), 목적 및 목표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사업전략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 교육, 홍보, 캠페인, 생활터 접근전략,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 규제, 환경조성 등
- 라. 사업계획 단계부터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중심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사업목표치는 합리적으로 수립하였는가?

- 사업목표가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에 기여하는 성과로 구성되었는지 평가한다.
- 사업목표치가 적절하고, 산출근거가 타당한지 평가한다.

〈지표설명〉

- 목표치는 타당한 설정 방법(추세분석, 지역 간 비교, 전국 수준 비교 등)을 통해 산출하고, 그 근거와 설명이 논리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 자동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치보다 상향된 수준에서 목표치를 설정하되,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설정하지 않아야 한다.

4. 내부자원과 소통·협력하여 사업을 운영하였는가?

- 보건소 및 하부기관(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관계자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업무수행으로 보건소의 자발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평가한다.

세부지표	배점	점검 척도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가. 보건소 내 관계부서와의 소통·협력과정이 정례적이고, 충실하게 이루어졌는가?	2	2		1
나. 보건소 내 소통·협의과정에 보건소장 및 팀장 이상 관리자들의 참여와 지원이 충분하였는가?	3	3	2	1

〈지표설명〉

가. 다양한 부서가 참여하여 별도의 조직체계를 갖추어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계자 간 회의 및 활동 등 상호 협의와 소통의 노력이 조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 TF 팀 구성, 내부회의, 간담회 등

나. 보건소 내부 소통과정에서 보건소장 및 팀장 이상의 관리자들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부서 간 업무협력이 이루어지며, 이는 사업에 반영되어야 한다.

5.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가?

-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의료기관, 시·군·구청 관계부서, 학교, 경로당, 복지관, 민간단체 등 사업전략과 연계된 지역사회 자원과의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연계 업무를 수행하여 주민참여의 지속 사업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한다.

세부지표	배점	점검 척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가. 사업전략에 맞는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투입하였는가?	3		3	2	1	
나. 지역사회 자원이 각 역할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하였는가?	3		3	2	1	
다. 지역사회 자원이 지속적,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는가?	4	4	3		2	1

제 4 장
관련서식

<지표설명>

가. 사업전략과 관련이 있는 지역사회 자원을 적절히 발굴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한다.

나. 기술된 지역사회 자원이 해당사업에 실질적인 역할을 가지고 활동하여야 한다.

- ※ 협력자원은 생활권이 유사한 인근 지자체, 지역사회 내 공공·민간기관, 지역주민, 마을, 학교, 전문가 조직, 협회 등 형태가 다양함
- ※ 사업대상과 협력기관을 명확히 구분하여 평가

예) 경로당 대상 건강증진사업 운영 시 경로당은 협력기관이 아님
 경로당 대상 건강증진사업을 위해 공단, 복지관 등과의 협력은 협력사업임

다. 지역사회 외부 자원협력은 별도의 협력체계(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계획, 운영, 모니터링, 평가 및 환류의 사업 수행과정에서 각각의 역할에 맞게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 지역주민이나 단체(마을, 아파트 등)가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6. 사업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충실히 운영하였는가?

- 사업관리 및 집행에 대해 내·외부에 의해 정기적 점검을 하고,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및 환경변화 등에 적절히 대응하여 사업을 충실히 운영하였는지 평가한다.

세부지표	배점	점검 척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가. 계획된 일정대로 원활히 사업이 운영되었는가?	3		3	2	1	
나. 내·외부 모니터링(중간평가)을 충실히 수행하였는가?	4	4	3		2	1
다. 내·외부 모니터링 및 평가결과를 사업추진 시 수정·반영 하였는가?	4	4	3		2	1
라. 계획된 사업내용이 충실히 운영되었는가?	4	4	3		2	1

〈지표설명〉

- 가. 계획된 주요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점검한다.
- 나. 사업관리를 위한 내·외부 모니터링(중간평가) 체계가 구축·운영되어야 하며, 주요 추진일정의 따른 사업 진행사항을 점검하는 등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발전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 다. 내·외부 모니터링(중간평가) 및 사업 평가결과 나타난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발전방안을 다음 사업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라. 계획된 사업내용이 사유가 없는 한 누락 없이 충실히 운영되어야 한다.

7. 계획한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 자체적으로 수립한 사업별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 수준을 확인한다.

세부지표	배점	점검 척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가. 결과보고서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가 계획서와 일치하는가?	5	5	4	3	2	1
나. 핵심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정량)	10	95 % 이상	95 % 미만 ~ 90 % 이상	90 % 미만 ~ 85 % 이상	85 % 미만	
		10	9	8	7	
다. 자체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정량)	5	100 %	100 % 미만 ~ 95 % 이상	95 % 미만 ~ 90 % 이상	90 % 미만 ~ 52 % 이상	85 % 미만
		5	4	3	2	1

제 4 장
관 련 서 식

〈지표설명〉

- 가. 계획서에 기술된 사업별 성과지표가 결과보고서에도 동일하게 반영되고, 성과지표가 누락·변경 되었을 경우 사유가 타당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 나. 핵심성과지표의 목표치를 95 % 이상 달성한 성과지표의 비율로 평가한다.
 - 핵심성과지표를 여러 개 선택했을 경우 지표별 목표달성률 점수의 평균점수 산출
- 다. 자체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 % 달성한 성과지표의 비율로 평가한다.
 - 자체성과지표는 시·군·구 세부사업별로 자체 수립한 목표치로써, 전체 자체성과지표별 목표달성률 점수의 평균점수 산출
 - 시·군·구가 수립한 자체성과지표 목표달성률 산출 후 5점을 기준으로 목표달성률 기준에 따라 점수화 ※ 목표달성률이 100 % 초과한 경우도 100 %임

8. 계획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하였는가?

- 자체적으로 계획하여 투입한 사업예산을 충실히 집행하였는지 집행비율에 따라 아래의 점수로 평가한다.

100 %	100 % 미만 ~ 95 % 이상	95 % 미만 ~ 90 % 이상	90 % 미만 ~ 85 % 이상	85 % 미만
5점	4점	3점	2점	1점

9. 대표 우수사례

○ 우수사례 평가목적

시·군·구 지역특성 및 주민요구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자율적으로 책임성 있게 기획·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업실행 결과 그 효과성이 도출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타 지역에 확산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우수사례 평가대상

시·군·구 별로 제출된 우수사례에 대하여 계획의 타당성, 운영의 노력성, 사업의 효과성, 타 지역 확산·활용 가능성, 지속·발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건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 시도의 정책방향 및 시도와 연계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세부평가 항목 조정가능

세부지표	배점	점검 척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가. 계획의 타당성	5	5	4	3	2	1
나. 운영의 노력성	5	5	4	3	2	1
다. 사업의 효과성	5	5	4	3	2	1
라. 확산·활용 가능성	3		3	2	1	
마. 지속·발전성	2		2		1	

〈지표설명〉

가.

- 지역의 건강문제 및 건강취약(건강사각지대)현황 등을 파악한 사업 선정
- 지역현황과 연계성 있는 성과지표(목표) 및 합리적인 목표치 선정
- 목표에 맞는 사업내용 선정(사업대상, 적절한 사업전략 구성, 사업영역의 통합 등)

나.

-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 수행 및 반영 노력 정도
- 시도와 시군구간 소통·협력을 통한 사업운영 노력 정도
-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협력의 노력 정도
- 계획된 예산의 충실한 집행 노력 정도

다.

- 사업 성과지표(목표치)의 달성정도
- 건강행태, 건강관련 인식, 만족도 등 객관적 지표에 의한 사업의 효과성 정도

라.

- 지역유형(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등) 및 여건을 고려한 사업대상, 사업영역, 사업전략 등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타 시도(시군구 포함)에 확산, 활용 가능한 정도

마.

- 사업을 다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발전시켜왔는지 평가
- 단 년도의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하여 실현·발전 가능한 사업 모형인지 평가

〈개인정보 동의 획득 상세〉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건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대상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상자 관리, 건강상담 및 교육,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나. 사업 효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의 통계자료로 활용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가. 인적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
- 나. 건강정보 : 사업별 조사기록, 서비스 제공 기록
 - ※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유기간]

- 가.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에 달성할 때까지
 - ※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서비스 제공일에 차이가 있어, 보유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음
- 나. 다만,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보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대상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 보건소에서는 지역 내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소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다른 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1. 정보의 제공 범위 : 이름, 전화번호,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2. 정보의 제공 대상 : ○○○ 주민복지회관, 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서비스 연계 해당 기관(보건소에서 수정하여 쓰도록 함)
3. 정보의 이용목적 : 타 기관의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4.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대상자 등록관리 기간

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효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의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재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등에 아래의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1. 정보의 제공 범위 : 연구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인정보
2. 정보의 이용목적 : 사업의 효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
3.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해당 연구의 진행기간

다. 전자정보의 관리 : 개인정보에 대한 전자화 정보 관리는 지역보건법 제30조의 4에 의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대행 관리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보건소는 수집한 개인의 건강정보는 민감정보로서 아래의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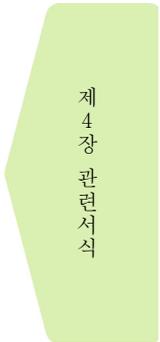
-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서비스 질 관리
-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 사업 효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 통계 생성

[수집하는 민감정보의 항목]

- 건강정보 : 사업별 건강조사기록, 서비스 제공 기록

※ 귀하는 민감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제5장 부 록

- 105 부록1. 사업영역별 설명서
- 138 부록2. 사업방법
- 147 부록3. 핵심성과지표 정의서
- 152 부록4. 목표치 설정 방법
- 154 부록5.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가이드라인
- 174 부록6. 담당자 연락처

❖ 금연

구 분	내 용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접흡연 없는 환경(Smoke-free)을 조성함으로써 건강증진 및 건강수명 연장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연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흡연율 감소) 2020년까지 청소년 흡연율을 남자 12.0 %, 여자 6.0 %로 감소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청소년 흡연경험률 감소) 2020년까지 남학생의 중학교 이전 흡연경험율을 5.0 %로 감소(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흡연자 금연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흡연율 감소) 2020년까지 성인남성흡연율을 29.0 %로 감소(국민건강 통계) - (금연시도율 증가) 2020년까지 성인흡연자의 금연시도율 80.0 %로 증가 (국민건강통계) - (금연계획률 증가) 2020년까지 성인흡연자의 금연계획률을 40 %까지 높임 (국민건강통계) - (금연 상담·치료 경험률 증가) 성인흡연자의 금연 상담 또는 치료(프로그램) 경험률 증가 • 간접흡연 없는 환경(Smoke-free)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흡연자 중 직장 남자 간접흡연 노출률 감소) 2020년까지 간접흡연노출률을 5.0 %로 감소(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청소년 가정 내 간접흡연 경험률 감소) 2020년까지 청소년의 가정 내 간접흡연경험률을 5.0 %로 감소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금연구역 확대, 법령 이행 준수율 제고, 금연구역 인지도 제고 <p>* 국민건강통계(2015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남성흡연율 : 39.3 % - 성인 현재흡연자의 1개월내금연계획률 : 25.5 % - 성인 현재비흡연자의 간접흡연노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실내 : 27.7 % · 가정실내 : 8.2 % <p>*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16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흡연율 : 남성 9.6 %, 여성 2.7 % - 중1 남학생의 중학교 이전 흡연경험률 : 3.5 % - 청소년의 주1일 이상 가정내 간접흡연 경험률 : 29.1 %

제 5 장 부 록

구 분	내 용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특성(인구구성, 산업구조, 지리 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증진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확대된 금연구역 제도를 지역사회 단위에서 정착시키고 관련 교육·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금연(Smoke-free) 환경 조성 • 지역별 특성(인구구성, 산업구조, 지리 등)을 고려하여 지역 사회 내 공공기관, 직장(공장 등), 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민간단체(의사, 약사, 간호사, 청소년, 학생보건단체)와 협력·연계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금연교육·상담·홍보 프로그램 실시 * 금연지도자 교육, 청소년 금연교실, 담배 광고·판매·촉진 활동 모니터링,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판매 모니터링 등
관련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9조의4, 제9조의5, 제25조
사업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연을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매일 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큰 초·중·고등학생, 취업청소년, 대학생, 군인, 등에 대해 집단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상담·홍보 활동 전개 • 사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등학생, 취업청소년, 대학생, 군인 등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특성(인구구성, 산업구조, 지리 등)을 고려하여 지역 사회 내 공공기관, 직장(공장 등), 중·고등·대학교 등 교육기관, 민간단체(의사, 약사, 간호사, 청소년, 학생보건 단체)와 협력·연계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금연교육·상담·홍보 프로그램 실시 * 금연지도자 교육, 청소년 금연교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연자에게 금연 시도 및 실천을 위한 교육·상담·약물처방 등을 통해 실천가능한 지식과 행동지침, 정서적 지지 등을 제공함 • 사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내 흡연자(흡연율이 높은 사업장 또는 단체 포함)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내 흡연자를 등록하여 교육·상담(행동요법) 및 약물요법(니코틴 패치 등)을 제공하되, 6개월간 추구(follow-up)관리 실시 - 보건소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장, 대학교 등과 연계한 금연클리닉을 운영 - 금연상담전화(1544-9030) 연계 및 홍보

구 분		내 용				
사업 개요	간접흡연 없는 환경 (Smoke-free)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특성(인구구성, 산업구조, 지리 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증진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확대된 금연구역 제도를 지역사회 단위에서 정착시키고 관련 교육·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금연(Smoke-free) 환경 조성 • 사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기관(공중이용시설 등) 및 그 소유자·점유자·관리자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내 간접흡연 방지가 필요한 시설·기관에 대한 지자체 조례 제·개정을 통한 금연구역 지정 - 「국민건강증진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확대된 금연구역 제도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 전체 대상 교육·홍보 강화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기관 대상 법령(조례 포함) 이행 지도·점검 -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 및 계도 				
	우선권장사업	• 간접흡연 없는 환경(Smoke-free) 조성				
참고	관련 지침 및 매뉴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 2017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 • 2015년 보건소 금연클리닉 상담매뉴얼 				
	구분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전자우편	
담당자	사무관	건강증진과	박종억	044-202-2828	jongeok@korea.kr	
	주무관	건강증진과	박채령	044-202-2839	yzt1358@korea.kr	

제 5 장 부 록

❖ 음주폐해 예방(절주)

구 분		내 용	
사업 개요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음주조장환경 개선과 절주문화 확산을 통한 음주폐해 예방 및 감소 음주폐해 예방 및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증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인 고위험음주율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까지 남자 19.0%, 여자 5.1%로 감소 * 성인 고위험음주율(2016) 남자 21.2%, 여자 6.3% 청소년 현재음주율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까지 남자 17.3%, 여자 11.4%로 감소 * 청소년 현재음주율(2017) 남자 18.2%, 여자 13.7% 	
	'19년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음주조장환경 및 제도 개선 지역사회 음주폐해예방 교육, 홍보, 상담 프로그램 강화 	
	관련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사업 유형	환경조성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음주폐해를 예방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사업장, 경찰서, 사회복지단체, 언론사 등 - 지역주민 및 단체(상인회, 반상회 등) 등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내 전문가 자원 및 유관기관·단체와 정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음주사고가 증가하는 시기에 캠페인 및 교육활동 강화 등
		음주조장환경 모니터링 및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내 위법 혹은 과도한 주류광고·판촉·후원 등을 모니터링·개선 - 지역사회 내 잘못 표기된 과음 경고문구 등을 모니터링·개선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대학 및 축제의 주류광고·판촉·후원 등 - 교육환경정화구역 및 청소년 이용시설 인근 주류광고·판촉·후원 등 - 주점 밀집지역의 주류광고·판촉·후원 등 그 밖에 주류 판매점 등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주류광고 및 과음 경고문구 표기 실태점검 및 문제진단 - 위법 혹은 과도한 주류광고와 위법한 과음경고문구 표기 개선요구 등
	교육 및 홍보	지역사회 절주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과 함께 제도를 개선하고 절주환경을 조성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아동·청소년 이용시설 - 지역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 음주폐해가 다수 발생하는 지역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주청정구역 지정 및 관리

구 분		내 용			
사업 유형	교육 및 홍보	지역사회 절주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보호 판매점(편의점) 확산 : 미성년자 주류판매 금지, 주류진열 분리, 주류광고 노출제한 등 주류로부터 청소년 보호 활동을 실시하는 판매점 지정·확산 - 주류판매점(식당, 주점 등) 절주캠페인 확산 : 1인 주류 구매량 제한, 주류 판매 요일 및 시간제한, 절주가이드라인 확산 등 과도한 음주를 제한하고 건전한 상가문화 조성을 실시하는 판매점 지정·확산 - 그 밖에 지역사회 절주환경 조성사업 등 		
	교육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에게 음주의 위험성에 대한 규범과 인식 변화를 유도 - 지역사회 음주폐해예방 활동의 지지기반 구축 - 지역주민의 절주(또는 금주) 실천을 유도하여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건강증진 도모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주교육 : 청소년, 임산부 - 절주교육 : 대학생, 직장인, 노인 등 성인 - 음주조장환경 개선교육 : 판매인, 학부모 등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임산부, 성인, 저소득층 등 지역주민 음주폐해예방 교육 * 교육대상별 음주폐해예방교육 교재·홍보 동영상을 활용하고, 절주전문 강사와 연계한 교육 실시 - 연중 홍보·캠페인, 음주폐해예방의 달(11월) 캠페인 운영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캠페인 실시 			
	단기개입 및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에게 음주의 위험성에 대한 규범과 인식 변화를 유도 - 지역주민의 절주(또는 금주) 실천을 유도하여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건강증진 도모 - 지역주민의 문제음주자, 알코올의존을 조기선별하여 전문기관으로 연계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내소자 - 건강생활실천 교육, 홍보·캠페인, 상담 시 만나는 지역주민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증진 및 질환관리를 위한 절주(또는 금주)의 필요성 상담(단기개입) - 알코올사용장애선별검사(AUDIT-K) 실시를 통한 문제음주, 알코올의존 조기선별, 전문기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등) 의뢰 			
참고	우선권장 사업 관련지침 및 매뉴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주조장환경 모니터링 및 제조·판매인 교육 • 지역사회 절주 교육 및 홍보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 음주폐해예방 ※ 기타 관련 지침, 매뉴얼, 교육자료, 홍보물 등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절주온(ON)' 홈페이지(www.khealth.or.kr/alcoholstop) 참고 			
담당자	구분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전자우편
	사무관	정신건강정책과	김혜영	044-202-2861	hykim3@korea.kr
	주무관	정신건강정책과	박귀현	044-202-2866	p20061001@korea.kr

제 5 장 부 록

◆ 신체활동

구 분		내 용
사업 개요	목적	• 신체활동 실천인구 및 규칙적인 신체활동 실천율 증가
	목표	<p>〈제 4차 HP2020 : '20년 목표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활동 실천율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의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을 62.8 %로 증가(국민건강통계) - 노인의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을 45.2 %로 증가(국민건강통계) - 청소년(중고생)의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을 5.6 %로 증가(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성인의 근력 신체활동 실천율을 22.8 %로 증가(국민건강통계) - 노인의 근력 신체활동 실천율을 18.4 %로 증가(국민건강통계) - 청소년의 근력 신체활동 실천율을 24.3 %로 증가(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신체활동 실천율 형평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1/4분위층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을 62.8 %로 증가(국민건강통계, 표준화) - 소득 1/4분위층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을 22.8 %로 증가(국민건강통계, 표준화)
	'19년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서' 기준 규칙적인 유산소·근력 신체활동 실천 권장 • 개인, 집단 접근을 통한 신체활동 지식 및 실천 방법 습득 교육 • 신체활동 친화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조성 활성화
	관련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9조·제25조, 지역보건법 제5조
사업 유형	신체활동 프로그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활동의 중요성·필요성 인식전환을 위한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 생활터, 건강문제에 적합한 내용을 통해 신체활동 관련 지식을 교육 - 정보제공 교육을 단독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가급적 프로그램 제공 시 정보 교육 시간을 배정하여 동시에 교육할 수 있도록 구성 • 생애주기 및 생활터별 신체활동 프로그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 생활터, 건강문제, 프로그램 자원(지도자, 장소)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실기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단계적, 지속적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일회성 교육 실시 가능 • 보건소 내·외 신체활동 관련 기관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확대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건강증진사업 타영역, 보건소 내 타부서, 지역사회 관련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 제공 및 역할 분담
	아동 및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활동 습관형성을 위한 재미있는 프로그램 제공 및 비만예방 인식 제고 •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및 청소년 •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 비만예방·관리를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학교·지역아동센터 등 생활터에 접근하여 프로그램 제공 - 건강새싹 프로그램, 영유아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매뉴얼, 뉴스포츠 프로그램, 건강한 돌봄놀이터, 스쿨 짬짬이 체조 등 활용

구 분	내 용
사업 유형	<p>신체활동 프로그램 제공</p> <p>성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 신체활동실천 활성화 및 건강위험요인 예방·관리 •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인, 지역사회 주민, 내소 성인 등 •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인 대상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체중을 위한 올바른 신체활동 실천방법 이론교육 ▶ 틈새시간 활용 신체활동 실천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비만인구 대상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터 접근을 통한 일반 성인 비만 관리 프로그램 운영 - 성인여성 올바른 체중관리를 위한 신체활동 가이드, 오피스팜팜이스트레칭 2.0, 한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서 등 활용
	<p>노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통한 일상생활 기능 유지 및 낙상·치매·관절염 등과 같은 노인 관련질환 예방 •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신체활동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상예방을 위한 유연성, 평형성, 근력운동 프로그램 ▶ 치매예방을 위한 신체 협응 프로그램 제공 ▶ 걷기 및 일상생활 기능 유지·개선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 아!흔까지 재!신있게 노인 신체활동 프로그램 활용
개인별 신체활동 증진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건강상태에 맞는 신체활동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일상생활 신체활동 실천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 도모 •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에 내소하여 개인별 신체활동증진 서비스 참여를 희망하는 자 - 건강검진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 지역 주민 중 건강위험군 또는 질환관리군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개인별 신체활동 상담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내소 주민 중 신체활동실천량 평가 및 행동변화단계 판정을 바탕으로 개인별 건강 위험요인 개선 및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상담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은 건강검진결과상담매뉴얼(신체활동전문상담) 참조 - 일상생활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연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내소가 어려운 주민 중 건강검진을 수검하고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모니터링 장비를 활용한 개인관리 서비스 제공 - 개인 체력 및 신체구성 측정결과 기반 1:1 운동처방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력 및 체성분 측정결과 기반 운동처방 서비스 제공

제 5 장 부 록

구 분		내 용			
사업 유형	신체활동 홍보 및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활동의 필요성과 실천방법에 대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여 개인의 인식제고 및 실천을 유도하고, 활동적인 조직·사회문화 조성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 전체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 시·도, 시·군·구 협력 홍보·캠페인 사업 추진 - 지역사회 신체활동 홍보·캠페인 슬로건 개발 - 건강기념일 및 지역사회 축제활동 캠페인 실시 - SNS 등 온라인 홍보, 홍보물 제공, 옥외광고, 언론홍보 등 적극 활용 - 보건의료기관 및 체육 관련 기관과의 연계 권장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일상생활·여가시간에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물리적 환경 조성 • 대상 : 지역사회 신체활동 서비스 관련기관 및 물리적 환경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 환경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계단 및 소속 지자체 운동, 체육, 걷기 환경조성 등 - 제도적 환경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신체활동 조례 제정 및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지역사회 신체활동 전문가(전문인력, 건강지도자, 건강리더 등) - 사회적 지지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호회, 자조모임 등 자발적 주민 조직 지원 확대 - 2016 건강계단 공공디자인, 계단을 이용한 신체활동 활성화 가이드북 활용 			
	우선권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과정별 신체활동 교육 및 환경조성 사업 			
참고 사항	관련지침 및 매뉴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신체활동) • 건강새싹 함께 키워요 지역사회 건강증진 미취학아동 프로그램 • 아·혼에도 자신있게 건강운동 노인 신체활동교실 매뉴얼 • 계단을 이용한 신체활동 활성화 가이드북 • 건강검진결과 신체활동 전문상담 매뉴얼 • 영유아 신체활동 프로그램 '아들아 뛰어놀자' 운영 매뉴얼 • 오피스 짬짬이 스트레칭 2.0 • 뉴스포츠 프로그램을 활용한 아동·청소년 신체활동 늘리기 • 신체활동 친화적인 도시만들기 기획가이드 • 한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서 • 성인여성 올바른 체중관리를 위한 신체활동 가이드 참고 • 건강계단 공공디자인 10종 • 스쿨짬짬이 체조 동영상 2종 • 돌봄아 놀자_초등돌봄교실 놀이형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담당자	구분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서기관	건강증진과	강차원	044-202-2821	dykang0331@korea.kr
	주무관	건강증진과	윤미라	044-202-2835	ymr3615@korea.kr

구 분		내 용	
사업 개요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영양관리 및 식생활 개선을 통한 건강수명 증가 	
	목표	<p><HP2020 목표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식생활 실천율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식생활 실천 인구비율*을 48.6 %로 증가(국민건강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나트륨, 과일/채소, 영양표시 등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을 만족하는 인구 비율 - 영양표시 활용인구비율 30.0 %로 증가(국민건강통계) - 아침결식을 18.3 %로 감소(국민건강통계) • 인구 특성에 따른 영양격차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관리(교육 및 상담)를 받는 인구비율을 20.0 %로 증가(국민건강통계) - 식품 안정성이 확보된 가구비율을 95.0 %로 확대(국민건강통계) •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 모유수유 영아(생후 6개월) 인구비율 60.0 %로 증가(국민건강통계) - 영양소 섭취 부족 노인 인구비율을 26.3 %로 감소(국민건강통계) - 가임기여성(10~49세) 빈혈 인구비율을 12.0 %로 감소(국민건강통계) • 건강체중 유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체중(18.5 ≤ BMI < 25) 성인인구비율을 64.0 %로 유지(국민건강통계) 	
	'19년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특성에 따른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사업'의 기획 및 원활한 수행 	
	관련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6조, 제15조, 제19조 • 국민영양관리법 제3조, 제10조, 제11조 	
사업 유형	건강 식생활 실천 국민 인식 제고	1. 건강 식생활 실천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바른 영양관리·식생활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에 대한 인식 제고 •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 전체 •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식생활 실천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공통 식생활지침을 적극 활용하고, 영양관리·식생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지역주민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향상 유도 ▶ 건강식생활 실천 인식확산을 위한 캠페인 전개(자체행사 등을 활용하여 건강식생활 실천 자료 제공 및 홍보) - 관내 학교, 직장, 기관, 어린이집 등과 연계

제 5 장
부 록

구 분		내 용	
사업 유형	건강식생활 실천 국민 인식 제고	2. 나트륨 저감화 홍보 및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의 나트륨 과잉섭취 경각심 고취 및 행동변화 유도 •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 전체 •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트륨 저감화 홍보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트륨 줄이기 실천운동 캠페인, 단체급식 및 건강음식점에 저나트륨 메뉴 제공, 저나트륨 레시피 및 저나트륨 식생활 실천 캠페인 실시 ▶ 관내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나트륨 저감화 홍보 실시
	건강식생활 실천 환경조성	3. 식품 및 음식 영양정보 확인 환경조성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이 올바른 음식을 선택 할 수 있는 건강한 식생활 실천 환경 조성 •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에서 건강음식점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음식점 - 관내 단체급식소 •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음식점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음식점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음식점에 대하여 나트륨·조미료 저감화 등 건강메뉴 및 조리법 적용방법 교육, 영양 성분 표시 및 영양정보 등 제공 ▶ 건강음식점 인증제 실시 및 홍보 추진 - 단체급식대상 영양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소에 게시할 수 있는 영양교육 자료 제공 ▶ 관내 단체급식소 점심·저녁급식메뉴의 영양정보 제공 지원, 메뉴판에 열량·나트륨 등 영양성분 표시 지원 ▶ 영양사 활용 급식소 게시용 영양교육자료 주기적 제공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	1. 임산부 및 영유아	<p><영양플러스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임산부·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 및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위해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 •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분류 : 영유아(만 6세, 생후 72개월 미만), 임산부, 출산·수유부 - 소득 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 이하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평가를 실시하여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에게 영양개선을 위한 영양교육 및 대상자 특성별(6종) 보충식품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충식품비는 1인당 적정가격으로 책정하되, 식품패키지(I~VI)의 기본 구성 내용 및 제공량을 임의로 삭제·축소 할 수 없음) - 월 1회 이상의 가정방문, 단체교육, 상담 등 영양교육 실시 등

구 분	내 용
사업 유형	<div data-bbox="552 277 1262 394"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 영양플러스사업은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내 영양플러스사업 내실화 및 대상자 확대 필요성에 의해 추진실적(대상자·신청대기자 및 예산지원 현황 등)을 월별 관리 </div> <div data-bbox="523 445 852 479"> <영유아, 임산부 영양관리 사업>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산부·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 및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을 위해 영양관리 교육 및 정보 제공 •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임산부 •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방문 영유아 및 임산부 대상 관리필요 영양정보 제공 및 상담, 관내 관련 기관에 건강식생활 관련 정보 제공 등 - 관내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과 협력하여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교육 및 상담내용은 건강한 아이를 위한 현명한 엄마되기 1~5권, 다문화 가족 대상 영양교육자료(모유수유 성공비결, 이유식 성공비결, 단계별 이유식 3종), 영양플러스 대상자 맞춤형 영양관리 가이드(임산출산수유부, 영유아, 유아 3종) 참조(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 게시) <div data-bbox="523 1068 852 1102" style="margin-top: 10px;"> <어린이집·유치원 영양관리사업>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기 영양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식생활 인식과 식습관 형성 도모 •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영유아, 보육교사, 학부모 등 •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영유아 영양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등에 정기적 영양교육 자료 지원을 통한 영유아 대상 영양교육, 보육교사 대상 교육 등 실시 - 관내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을 경우 식단, 위생관리, 교육 프로그램, 교육 매체 등을 협력하여 진행 - 사업대상을 구분하여 업무에 효율을 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구분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소 - 영양사가 있는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 영양교육 및 상담내용은 건강한 아이를 위한 현명한 엄마되기 1~5권, 건강새싹 함께 키워요 지역사회 건강증진 미취학아동 프로그램 매뉴얼 참조

제 5 장 부 록

구 분		내 용	
사업 유형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	2. 어린이 및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청소년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원만한 성장 발달 도모 •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어린이 및 청소년 •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과일바구니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아동센터 대상 - 저소득층 어린이의 참여비율이 높은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건강간식선택 영양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과일 간식을 제공 ▶ 학교 대상 - 학교 영양(교)사와 협력하여 급식 중 생과일 및 생채소 배식 증대 유도, 건강간식선택 영양교육프로그램 지원 ▶ 영양(교)사에 의하여 교육을 진행하며, 월 2회 이상 실시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교육 지원 및 상담내용은 건강과일바구니 매뉴얼 참조 - 지역아동센터 영양교육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아동센터 참여자 대상 건강식생활 및 건강체중 인식 등의 영양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제공 등 ▶ 급·간식 등의 식단, 위생 지원 등은 관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진행 - 학교기반 영양관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내 영양(교)사 연계 학생 건강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제공, 직접 교육을 위한 영양사 연계, 양성을 통한 지원, 학부모교육 연계 등 건강학교 운영 시 영양 프로그램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교육 지원 내용은 건강한 돌봄놀이터 건강식생활체험 프로그램 매뉴얼 참조 - 건강한 돌봄놀이터 영양식생활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돌봄교실 이용 아동대상 비만예방 영양·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돌봄놀이터 영양·식생활교육 매체 활용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	3. 성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여 질환 발생 사전 예방 •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성인, 직장, 기관 등 •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성질환 예방 영양관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대상 맞춤형 영양관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인 성별·특성별(청년기, 중장년층 / 폐경기, 가임기 여성 등), 생활터별(가정, 직장 - 사무직, 노동직) 등에 따른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 제공 ▶ 비만 및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만성질환자 영양상담, 영양교육 등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검진결과상담 매뉴얼 영양전문상담 참조

구 분		내 용				
사업 유형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	4.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섭취·조리 등이 취약한 노인에 대하여 영양관리 및 식생활 교육 실시 •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르신영양관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섭취 부족 영양소, 위생적 음식관리, 보관 방법 등 영양교육 및 어르신 조리교실 (장보기, 간편조리, 1인분 조리법, 보관 등) 영양교육 교실 등 운영 ▶ 노인의 거동 정도에 따른 영양관리 방법, 관내 노인복지시설에 급식매뉴, 영양정보 활용방법 등 제공 ▶ 가정방문을 통한 식환경 및 위생환경 점검 및 영양 중재 제공 등 ▶ 노인복지시설 등과 협력하여 진행, 조리교실은 관내 문화센터 등의 요리교실, 노인대학 등과 협력하여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 가이드북(노인편) 참고 및 아!흔에도 자!신있게 건강식생활 사업담당자용 교육운영 매뉴얼 참조 - 실버건강식생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구입과 조리 등을 소홀히 하기 쉬운 독거노인에게 영양교육 등 식생활관리 서비스(공동부엌 실습교육·가정방문을 통한 맞춤형 영양교육 및 상담) 및 과일·우유 등의 건강간식도시락 제공 			
		5. 다문화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올바른 영양 및 식생활 정보 제공 •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 •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영양관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족단위 집중 영양관리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족 대상 조리교실 운영 및 식생활 모임을 통한 식문화 적응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대상 영양교육자료(모유수유 성공비결, 이유식 성공비결, 단계별 이유식 3종)참고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식생활, 육아, 문화적응 등 수행 			
참고	우선권장 사업	• 영양플러스 사업				
	관련 지침 및 매뉴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 • 건강과일바구니 사업 지침 • 건강검진결과상담 매뉴얼(영양전문상담편) • 아!흔에도 자!신있게 건강식생활 사업담당자용 교육운영 매뉴얼 • 건강새싹 함께 키워요 지역사회 건강증진 미취학아동 프로그램 				
담당자	구분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전자우편	
	서기관	건강증진과	강차원	044-202-2821	dykang0331@korea.kr	
	주무관	건강증진과	윤미라	044-202-2835	ymr3615@korea.kr	

제 5 장 부 록

❖ 비만예방관리

구 분		내 용			
사업 개요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형 잡힌 식생활, 규칙적인 신체활동 등 비만예방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 향상 • 지역사회 내 비만예방중심 건강사회문화 확산 및 건강형평성 확보 			
	목표	〈제4차 HP2020 : '18년 목표치('20년 목표치 감안)〉			
			남자	여자	
		성인	비만 유병률 ¹⁾	≤ 37.0 %	≤ 27.0 %
'19년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특성에 따른 생애과정별 비만 예방·관리 사업 기획 및 수행 - 교육 및 상담, 홍보·캠페인, 환경조성 등 전략을 적절하게 활용 	고도비만 유병률 ²⁾	≤ 5.0 %	≤ 4.0 %	
		복부 비만율 ³⁾	≤ 25.0 %	≤ 25.0 %	
		아동	비만 유병률 ⁴⁾	(초등학생) ≤ 9.0 %	(초등학생) ≤ 8.0 %
관련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6조, 제12조, 제19조 	청소년	비만 유병률 ⁴⁾	(중학생) ≤ 16.0 %	(중학생) ≤ 10.0 %
				(고등학생) ≤ 21.0 %	(고등학생) ≤ 13.0 %
사업 유형	비만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비만이 발생하기 이전에 비만의 위해성과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비만에 필요한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상담·홍보 활동을 집단별 특성을 반영하여 전개 - 지자체 내 물리적, 제도적 환경을 비만예방 중심으로 개선하여 건강문화 확산 • 사업대상 - 지역주민 전체로 생애주기별로 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모두 포함 - 어린이집, 학교, 직장, 경로당, 아파트별 인구집단 포함 - 과체중 혹은 비만의 위험이 높은 취약계층(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지역 아동센터 등) • 내용 - (교육·상담) 개인 혹은 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여 건강한 식습관 및 신체활동을 활성화 하도록 교육·상담 수행 - (홍보·캠페인) 건강체중 인식과 유지를 촉구하는 캠페인, 건강한 식습관 및 신체 활동을 강조하는 사업 홍보 등을 비만예방의 날(매년 10월 11일) 주간과 연계하여 추진 - (환경조성) * 지역사회 내 비만예방을 위한 물리적 환경 조성 : 교내 건강매점 설치, 공원, 시설 등에 뱃살 로드맵, 걷기코스, 건강계단 조성 및 활용 안내 * 제도적 환경 조성 : 조직이나 지자체의 문화규범을 제시하는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사회문화 조성 			

구 분		내 용			
사업 유형	비만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체중 혹은 비만의 위험요인을 가지거나, 비만한 개인(인구집단)에게 체중관리 및 관련 건강행위 실천을 유도하도록 건강정보, 행동지침, 정서적지지 등을 제공 • 사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검진·생애전환기검진 결과 비만 등 만성질환 의심, 유질환자가 있는 대상자 - 비만 등 만성질환이 의심되거나 질환을 가지고 있는 등록관리 대상자 - 보건소 내 타부서(영유아검진, 정신보건센터, 금연클리닉, 방문건강관리 등)로 부터 의뢰된 비만 등 만성질환자 -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으로부터 의뢰된 비만 등 만성질환자 - 기타 비만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발적 참여 희망자 (비만관리가 어려운 취약계층(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도 포함)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검사·조기발견) 신체계측(허리둘레, 체질량지수 등 측정)을 통한 비만도 판정 - (교육·상담) 영양 및 신체활동, 행동조절 등을 활용한 건강체중 프로그램, 비만클리닉을 8주 이상 운영하여 건강 생활 실천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상담 매뉴얼, 건강상담 부록 등 활용(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 게시) - (자조모임, 동아리 등 운영) 비만정도별로 그룹 지정하거나, 가족, 친구, 직장동료와 자발적으로 건강생활에 참여하고 서로 지지하도록 모임 결성 유도, 지원, 운영 - (연계) 보건소 내외 건강증진 프로그램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체중 알리미 학교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활용(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 게시) ※ 건강한 돌봄놀이터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활용('18년도 발간 예정) 			
참고	관련 지침 및 매뉴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만바로알기 •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바른 식생활 가이드(4종) • 비만예방키트 교육 가이드북(초·중·고등학생 대상) • 올바른 체중관리를 위한 신체활동 가이드 • 건강체중 알리미 학교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 건강상담 매뉴얼, 건강상담 부록 			
담당자	구분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전자우편
	서기관	건강증진과	강차원	044-202-2821	dykang0331@korea.kr
	주무관	건강증진과	윤미라	044-202-2835	ymr3615@korea.kr

제 5 장 부 록

◆ 구강보건

구분	내용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중심의 평생구강건강관리체계 강화로 국민의 구강건강 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까지 아동·청소년 우식경험 치아 수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구치(12세) 우식경험 치아 수 1.4개까지 감소('15년 1.9개 → '20년 1.4개) - 유치(5세) 우식경험 치아 수 2.3개까지 감소('15년 3.1개 → '20년 2.3개) • 2020년까지 청소년·성인의 치은염 및 치주염 유병률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35-44세) 치주낭형성자율 15%까지 감소('15년 22.0% → '20년 15%) - 청소년(15세) 치면세마필요자율 25%까지 감소('15년 32.8% → '20년 25%) • 2020년까지 아동의 점심직후 칫솔질 실천율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7-12세) 점심직후 칫솔질 실천율 50%까지 증가('15년 44.1% → '20년 50%) • 학교구강보건시설(양치시설, 구강보건실),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자체 특성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강보건법 제3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사업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구강건강의 중요성과 관리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사업 및 교육 등을 홍보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인식을 제고하고 바른 구강건강 습관형성 및 구강건강위험 행태 개선 - 대상 : 지역주민 전체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임산부·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및 생활터별 구강보건교육 실시 ▶ 구강보건교육매체 및 홍보자료(책자, 안내문, 리플릿, PPT, 유·무선 방송, 영상물 등)를 활용한 적극적인 교육·홍보 추진 ▶ 연중 지속적인 구강건강 홍보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강보건의 날(6.9) 중점으로 보건복지부가 공표하는 구강건강표어와 디자인을 사용함으로써 전국에서 통일되고 극대화된 홍보 실시 ▶ 불소 활용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기획·운영 • 바른양치실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바른 양치 생활화를 유도함으로써 개인위생(칫솔질, 손 씻기) 실천율 증가와 구강건강인식 향상 도모 - 대상 : 지역주민 전체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른양치 습관 생활화, 인식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양치시설을 이용한 칫솔질 및 손 씻기 실천 환경 조성 ▶ 각종 생활터에서 바른양치실천을 뒷받침하여 줄 수 있는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양치시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초등학교, 특수학교, 지역아동센터에 양치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아동 바른 양치 실천 습관화 및 구강건강증진 향상 도모 - 대상 : 초등학교, 특수학교, 지역아동센터

구 분	내 용
사업 유형	<p>예방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위생 실천을 위한 칫솔질과 손 씻기 병행으로 양치시설 운영 ▶ 아동, 학부모, 교사 대상 구강보건교육 실시 ▶ 아동 바른양치 습관 생활화, 인식강화를 위한 홍보 적극 실시 ▶ 불소용액분배기 설치를 통해 불소용액양치사업과 병행 • 불소용액 양치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불소용액 양치를 통한 치아우식증 예방효과 극대화 및 자조적 구강건강관리 능력 배양 - 대상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의 전체 학생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5% 불화나트륨(NaF)용액의 경우 매일 1회, 0.2%의 불화나트륨(NaF)용액의 경우 주 1회 실시 ▶ 학교장 및 보건(담임)교사 등에게 사업취지·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 및 홍보하고 학생들에게도 충분한 교육 실시로 인식 전환과 업무협조 추진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소용액분배기 사용 권장 ▶ 양치시설 개선(설치) 학교는 시설 내 불소용액분배기 설치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정수장에 불소첨가기를 설치, 수돗물 불소농도를 적정농도(0.8ppm)로 조정하여 지역주민에게 음용하게 함으로써 치아우식증을 예방하여 국민구강건강증진에 기여 - 대상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시행(예정)지역(정수장)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시행지역은 불소약품비와 불소첨가기 수리비 편성(특히 불소첨가기 설치가 10년 경과한 지역은 교체 및 수리비 예산 우선 편성) ▶ 신규 시행지역은 불소첨가기 구입 예산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소첨가기 구입 및 수리비 편성 시에는 구강생활건강과와 협의 후 실시 ▶ 정수장, 상수도사업본부 등 관련 기관과의 주기적 업무협의 진행 ▶ 불소농도 측정 및 모니터링 ▶ 지역주민 대상 수불사업 관련 교육 및 홍보 •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치주질환 발생이 가장 많은 노인에게 스케일링 또는 전문가치면세정술을 시행하여 치주질환 진행을 억제하고, 불소도포를 통해 치근면 우식예방 및 시린이 방지 -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우선)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의 구강건강상태, 전신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처치 시행 • 어린이 불소도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치아우식증에 취약한 아동에게 불소도포 시행하여 우식 예방효과 극대화 - 대상 : 15세 이하 아동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6개월에 1회 도포 권장 ▶ 치아홈메우기 병행 실시

제 5 장 부 록

구 분		내 용			
사업 유형	예방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지역 주민이 의료기관 이용 시 겪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동진료장비가 갖추어진 차량과 진료인력이 교통편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을 주기적으로 순회하며 구강건강관리를 실시하여 농어촌지역 주민의 구강건강을 향상 - 대상 : 지역주민 취약계층 대상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구강진료 서비스 제공 ▶ 이동성이 제한된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구강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및 치료 서비스 범위 확대 ▶ 취약계층 대상 (구강)건강관리 서비스와의 연계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구강보건센터(구강보건실) 및 학교 구강보건시설(양치시설, 구강보건실)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구강건강인프라 확대를 통해 지역주민 구강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대상 구강진료를 활성화함으로써 구강건강 형평성 확보(2006년부터 계속적으로 보건소 구강보건실을 구강보건센터로 확대·전환) - 대상 : 지역주민 전체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구강병예방진료사업 및 구강건강증진사업 추진 ▶ 취약계층 아동을 우선으로 치아홈메우기 실시 권장 ▶ 지역사회 내 민간 협력 체계 강화 ▶ 특히, 보건소 구강보건센터와 특수학교 구강보건실은 장애인 진료에 소요되는 경비(자재비, 인건비 등)를 추가 편성하여 장애인구강보건사업(장애인 진료, 예방관리, 교육 등)을 활성화 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과 협력·연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강질환은 전신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비전염성질환과 치주질환은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협력 추진 권장 ※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상태에 맞추어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구강건강증진 및 구강병예방 진료사업 전개 필요 (참고로, 구강보건분야는 타 건강증진사업과 목표 질환이 상이하므로 통합건강증진사업계획서, 지역보건의료계획서 현황분석 시 반드시 구강보건사업 담당자를 포함하여야 함) 			
참고	우선권장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른양치실천(점심직후 칫솔질 실천)사업 • 불소용액 양치,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및 스케일링 사업 •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사업 • 보건소 구강보건센터(구강보건실), 학교 구강보건시설(양치시설, 구강보건실) 운영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관련 지침 및 매뉴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구강보건) 			
	구분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전자우편
사무관	구강생활건강과	이승묵	044-202-2841	sm7573@korea.kr	
주무관	구강생활건강과	노병권	044-202-2842	nebk82@korea.kr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구 분	내 용
사업 개요	<p>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뇌혈관질환의 심각성과 예방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자가관리 능력 및 건강생활습관 실천율, 지속치료율 향상
	<p>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주민대상 홍보를 통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질환인식도 제고 • 위험요인 관리를 통해 고혈압(매년 5%), 당뇨병 유병률(매년 2%) 점진적 감소 • 유질환자 관리를 통해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발생을 감소시키고, 심근경색 및 뇌졸중의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을 30% 이상 감소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 WHO 2013-2020 Voluntary Global Target 1. 심혈관질환, 암, 당뇨병 또는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 25% 감소 2. 고위험 알콜 섭취율 최소 10% 감소 3. 불충분한 신체활동 유병률 10% 감소 4. 소금/소듐 섭취율 30% 감소 5. 15세 이상의 현재 흡연율 30% 감소 6. 자국의 환경에 따라 고혈압 유병률 25% 7. 당뇨병과 비만의 증가 억제 8.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 약물 치료와 상담(혈당 조절 포함)을 받는 고위험군의 분율 최소 50% 9.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주요 만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기본 기술과 필수적인 의약품(제네릭을 포함)에 80%가 접근 가능 </div>
	<p>'19년 추진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관리본부에서 개발한 심뇌혈관질환 홍보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 • 고혈압, 당뇨병 경계군과 질환군등 환자를 조기발견하여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 등과 연계를 통한 교육·홍보 • 유병자 또는 조기발견된 대상자의 건강생활습관 실천율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p>관련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7조
심뇌혈관 질환 교육·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뇌혈관질환 교육·홍보를 통해 고혈압, 당뇨병 인지율, 치료율, 조절률 향상 - 자가관리능력향상 및 건강생활습관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보건소 내소자 - 1차 건강검진을 통해 기준값 이상으로 조기 발견된 환자 - 국가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등록자(해당 지역) - 그 외 심뇌혈관질환자(뇌졸중, 심근경색 등)

구 분		내 용				
사업 유형	심뇌혈관 질환 교육·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 캠페인(9월 1주) - 중앙 제작 교육·홍보자료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공익광고 지역매체 활용 ▶ 홍보컨텐츠(소책자, 포스터, 리플렛, 홍보물품, 홍보 KIT 등) 상시 활용 - 질환자 및 일반주민 대상 교육 •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내·외 건강증진 프로그램 연계 -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서비스 연계 - 중앙에서 제작된 교육·홍보 자료 활용(www.cdc.go.kr) - 심뇌혈관질환 합동캠페인자료 활용(www.cdc.go.kr) - 국가건강정보포털 내 건강정보 활용(www.health.cdc.go.kr)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건강행태개선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보건소 내소자 - 1차 건강검진을 통해 기준값 이상으로 조기 발견된 환자 - 국가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등록자(해당 지역) - 그 외 심뇌혈관질환자(뇌졸중, 심근경색 등)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제공 - 국가건강검진 결과확인 및 전화상담(건강검진결과 상담매뉴얼 활용) •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뇌혈관질환 관련 생활습관 관리프로그램(영양, 신체활동),금연 상담 사업 등 연계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해당 지역) -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서비스 연계 - 기타 보건소 내·외 심뇌혈관질환 관련 건강증진 프로그램 연계 				
참고	관련 지침 및 매뉴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 실무자를 위한 고혈압 교육모듈 • 실무자를 위한 당뇨병 교육모듈 • 기타 (중앙에서 제작한 전문교육상담을 위한 표준교육자료) 				
담당자	구 분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전자우편	
	연구관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예방과	강성현	043-719-7436	ksh10647@korea.kr	
	연구원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예방과	최수미	043-719-7440	choism7334@korea.kr	

한의학건강증진

구 분	내 용													
사업 개요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주요 건강관련 문제에 대해 한의학 기술을 사용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의 생애주기별 한의학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건강상태 인식 - 한의약적 건강지식 향상 - 건강생활 실천 유도 												
	'19년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인력 등 자원과 협력·연계하여 생애주기별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한의학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 지역사회 현황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지역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 설정 사업 실적 관리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을 통하여 시행 												
	관련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6조, 제12조, 제19조 지역보건법 제3조, 제11조 한의학육성법 제2조, 제3조, 제4조 보건의료기본법 제49조 												
사업 유형	생애주기 별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의 건강문제에 따라 생애주기별로 대상자 선정 - 의료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정 내용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한의학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 (예시)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영유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형 육아교실(모자애착 중시, 아이발달과정 지지) 아토피 등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등 </td> </tr> <tr> <td>청소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올바른 성장 및 발육을 위한 한의약적 관리법 정신건강(스트레스 관리) 및 생리통 관리 등 </td> </tr> <tr> <td>임산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형 임산부 관리(태교방법, 모유수유, 산후조리법) 산후풍 및 산후 우울감 예방 등 </td> </tr> <tr> <td>성인</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년 갱년기 한의약적 건강관리법 성인병 및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 대사성질환)예방 및 관리 등 </td> </tr> <tr> <td>노인</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한 노년기를 위한 한의약적 건강관리법 노인성 질환(중풍, 치매 등)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관리 등 </td> </tr> </tbody> </table>	구 분	내 용	영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형 육아교실(모자애착 중시, 아이발달과정 지지) 아토피 등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등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올바른 성장 및 발육을 위한 한의약적 관리법 정신건강(스트레스 관리) 및 생리통 관리 등 	임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형 임산부 관리(태교방법, 모유수유, 산후조리법) 산후풍 및 산후 우울감 예방 등 	성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년 갱년기 한의약적 건강관리법 성인병 및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 대사성질환)예방 및 관리 등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한 노년기를 위한 한의약적 건강관리법 노인성 질환(중풍, 치매 등)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관리 등
		구 분	내 용											
		영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형 육아교실(모자애착 중시, 아이발달과정 지지) 아토피 등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등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올바른 성장 및 발육을 위한 한의약적 관리법 정신건강(스트레스 관리) 및 생리통 관리 등 											
		임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형 임산부 관리(태교방법, 모유수유, 산후조리법) 산후풍 및 산후 우울감 예방 등 											
		성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년 갱년기 한의약적 건강관리법 성인병 및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 대사성질환)예방 및 관리 등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한 노년기를 위한 한의약적 건강관리법 노인성 질환(중풍, 치매 등)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관리 등 													
사업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한의학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 한의학건강증진프로그램 강사로 공중보건한의사 및 담당 한의사 참여 가능 지역사회 실정에 맞게 우선사업 및 선택사업 구분 없이 자율적 운영 보건소 내·외 자원 및 타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대상자에게 다양하고 적절한 보건복지 서비스 안내 													

구 분		내 용				
사업 유형	한약 건강증진 표준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쉽게 응용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각 생애주기별 대표적 주제의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제시 -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 적용을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을 보급 				
		구 분		표준프로그램		
		영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약아 건강관리 프로그램 - 건강습관 생활화, 면역력 강화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프로그램 - 정신건강 관리, 과의존 예방, 자세교정 			
		임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미든든 - 산전산후 관리, 산후풍과 산후 우울증예방 			
		성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갱년기 건강증진 프로그램 - 명상, 기공체조를 통한 갱년기 질환 예방 및 관리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명한 백세 - 치매, 중풍, 우울증 예방 교육, 기공체조를 통한 관절질환 예방 			
		취약 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아동센터방문 검진프로그램 - 아동건강상태 검진, 한약건강관리 교육 • 장애인대상 프로그램 - 장애인 건강검진, 한약건강관리 교육, 한의 방문 서비스 제공 			
참고	관련지침 및 매뉴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한약건강증진) • 각 생애주기별 표준프로그램 안내서 (영유아, 청소년, 임산부, 노인, 취약아동, 성인, 장애인) • 한약건강증진 생애주기별 교육매뉴얼 				
담당자	구분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전자우편	
	사무관	한약정책과	하예진	044-202-2576	hyj7144@korea.kr	
	주무관	한약정책과	박성욱	044-202-2577	sunguks@korea.kr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구 분		내 용			
사업 개요	목적	• 지역사회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수준 향상			
	목표	• 알레르기 환자 조기 발견, 적정치료, 지속관리를 통한 진행 억제 및 악화 방지 <장기> •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 경감, 환아 결석률 감소, 천식 지속 치료율 증가 <단기> • 관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비율 증가 / 취약계층 지원 증가 / 교육 및 홍보건수 증가			
	'19년 추진방향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사업 중점 추진 •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의 보건소 사업 지원 강화			
	관련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주요 질병관리체계의 확립) •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1항(건강생활의 지원 등)			
사업 유형	아토피·천식안심학교 운영	• 목적 : 학교 중심의 아토피·천식 관리를 통해 환아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 대상 : 관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및 안심어린이집 • 내용 : - 알레르기 질환 환아 선별을 위한 설문조사 및 유병률 산출(PHIS 이용) - 환아 지속관리 및 지원 : 환아관리카드, 천식응급키트, 보습제, 교육홍보자료제공, 교육프로그램 운영, 취약아동 진단 및 치료비 지원			
	취약계층 아토피·천식환자 지원	• 목적 : 취약계층 환자 지원을 통해 건강수준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 • 대상 : 지역사회 내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알레르기 질환 환자 • 내용 : 검사비, 약제비, 치료비, 보습제, 교육자료, 환경개선 등 지원			
	아토피·천식교육	• 목적 : 알레르기 질환 교육을 통해 질환 인지도향상 및 관리수준향상 • 대상 : 환자 및 보호자, 노인, 임산부 등 • 내용 : 알레르기분야 전문가 강의 및 과학적 근거기반의 자조모임 프로그램 실시			
	아토피·천식홍보	• 목적 : 알레르기 질환 홍보활동을 통해 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개선 • 대상 : 지역사회 주민 • 내용 : - 자료제작 및 배포(리플릿, 포스터, CD등) -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관심 유발(TV·라디오 공익 광고, 신문, 옥외매체, 인터넷 등)			
참고	우선권장 사업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관련지침 및 매뉴얼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아토피·천식 예방관리)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안내서 • (사)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인증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평가안내서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 http://www.cdc.go.kr/			
담당자	구분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전자우편
	연구사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예방과	김은영	043-719-7432	azusa17@korea.kr
	연구원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예방과	유연희	043-719-7442	sunmon100@korea.kr

제 5 장 부 록

❖ 여성어린이특화(모자보건)

구 분		내 용
사업 개요	목적	• 임신·출산·육아 관련 건강서비스를 제공으로 여성과 어린이 건강 증진
	목표	• 모성사망비 감소 • 보건소 임신부 등록관리율 제고
	'19년 추진방향	• 행정업무 간소화로 지역사회 임신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직접 서비스 제공 확대 • 여성과 아동 건강 업무 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
	관련법령	• 모자보건법
사업 유형	임산부 등록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임신부 산전·후 체계적 관리 지원 및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 유도 • 주요내용 : 임신부 신고·등록으로 산전·후 교육·홍보, 정부 출산지원 시책 및 가족건강 사업 안내 등 주기적 상담 및 방문실시(여성결혼이민자, 고위험 임신부 특별관리)
	산모건강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분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임신부 철분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사망 예방 - 대상 : 임신 16주 이상 보건소 등록 임신부 - 지원내용 : 1개월분 단위 5개월분 지급 (최대 5개월분까지 일시 지급 가능,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추가지급 가능) - 동 사업을 임신부 등록 관리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주요 서비스로 활용 - 철분제 구매 절차 : 철분 함량이 표시된 제품을 경쟁 입찰 • 엽산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신경관 결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사전 예방 -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신부 - 지원 방법 :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 지급(1인 1개월분 기준 3개월분) - 동 사업을 철분제 지원사업과 함께 임신부 등록·관리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주요 서비스로 활용 - 엽산제 구매 절차 : 엽산 함량이 표시된 제품을 경쟁 입찰 • 산후우울증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산모 산후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제고로 건강한 가정 유지 - 주요내용 : 선별검사 실시, 자가설문 지원 및 고위험군 추후관리 • 임신부 및 신생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산모 및 신생아 체계적 건강관리 및 보건지도 - 주요내용 : 취약계층, 유질환 임신부 등 가정을 방문하여 모유수유 방법 등 육아정보 제공

구 분		내 용			
사업 유형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생식보건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가임기 여성 생식건강증진 지원으로 임신소모 최소화 및 출산을 안정화 - 대상 : 가임기여성(대학생, 직장인 등) - 주요내용 : 여성생식건강 교육(흡연, 식생활, 비만 등), 가임기여성 정기건강검진 • 성교육·성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정확한 성지식 보급 및 생명존중 인식제고를 통해 올바른 성문화 정립 - 주요내용 : 학교, 전문상담기관, 시설과 연계하여 성교육 자료 개발·보급, 대상별 성상담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모유수유 장점, 중요성 홍보로,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률과 실천율 향상 - 주요내용 : 모유수유 교육·홍보, 모유착유기 대여, 지역 내 모유수유·착유실 설치 홍보, 분만의료기관 모자동실제 권유 • 예비부부 임신 전 검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임신 전 필수검사 지원, 임신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임신 전 건강관리 강화 및 건강한 출산 도모 - 지원대상 :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신혼부부 - 주요내용 : 계획임신 상담 및 교육, 임신 전 필수검사 지원(소변검사, 전혈검사, 풍진항체검사, 초음파검사 등) 			
	다문화 가정 여성·어린이 건강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주여성 생식건강증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결혼이주여성의 임신과 출산 지원, 출생아의 건강보호 - 지원대상 :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 자녀 - 주요내용 :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임신·육아 교실운영, 건강교육자료 개발 및 배포 			
	영유아 건강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보건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영유아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 주요내용 : 영유아 안전사고 및 질병 관련 응급조치(영유아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예방법등) 등의 지식 보급 및 실습 - 영유아 건강검진 사후관리 및 맞춤형 건강상담 			
참고	우선권장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임신부 및 신생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관련 지침 및 매뉴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보건사업안내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여성어린이 특화) 			
담당자	구분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전자우편
	사무관	출산정책과	임희주	044-202-3399	hj88@korea.kr
	주무관	출산정책과	김진옥	044-202-3402	jinok90@korea.kr

❖ 치매관리

구 분		내 용			
사업 개요	목적	• 치매환자를 조기 발견·치료하여 치매로 인한 중증화를 예방 및 지연을 통해 치매환자 및 치매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			
	목표	• 치매검진을 증가			
	'19년 추진방향	• 치매환자 조기검진 사업 수행			
	관련법령	• 치매관리법			
사업 유형	치매검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 환자를 조기 발견·관리함으로써 치매노인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60세 이상 노인 • 직접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검진을 원하는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대해 치매 무료검진 실시 - 특히 치매위험노인(만75세 이상 독거노인 및 '18년 만75세가 되는 모든 노인)에 대해 검진 강화 - 진단검사, 감별검사의 단가는 각 8만원(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감별검사 단가는 11만원) ※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는 치매 감별검사만 편성 가능 • 연계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진결과 치매로 진단받은 노인에게 치매치료관리비, 장기요양 서비스 등 연계 • '찾아가는 치매검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에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독거노인, 취약계층노인, 치매고 위험군 노인 등을 대상으로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회관 등에 '찾아가는 치매 검사'를 통한 조기발견 확대실시 			
참고	우선권장 사업	• 치매검진사업			
	관련 지침 및 매뉴얼	• 2017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치매안심센터 사업안내			
담당자	구분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전자우편
	사무관	치매정책과	배기현	044-202-3532	kihean90@korea.kr
	주무관	치매정책과	임여정	044-202-3534	firstim@korea.kr

❖ 지역사회중심재활

구 분	내 용
사업 개요	<p>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촉진 및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
	<p>목표</p> <p>목표</p> <p>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p> <p>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상태 향상</p> <p>지역사회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도 제고</p> <p>장애인보건관리율 산식 : $(A+B+C)/(지역사회등록장애인+C) \times 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 등록장애인 정기 관리대상자 * B : 등록장애인 부정기 관리대상자 * C : 미등록장애인 정기 관리대상자 <p>단기 지표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소 신규등록율 건강검진 수검율 기능평가 및 삶의질 점수 프로그램 참여율 정기등록장애인 관리대상자 서비스 제공건수 만족도 지역사회 연계율과 회신률
	<p>'19년 추진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의 건강한 삶 및 지역사회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역량강화 재활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WHO에서 제시한 CBR 가이드라인 활용 장애인의 조기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커뮤니티케어 연계
<p>관련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보건법」제11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노인·장애인의 건강유지, 증진/가정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개인정보 관련 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민감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 5 장 부 록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사업 기본 운영모델	영역	주요내용
		1. 계획수립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권역재활병원,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비롯한 각급 병원, 장애인복지관, 관련기관, 대학, 보조기기센터 등 유관기관과 지역사회재활협의체(회)를 구성하여 기본 계획수립
		2. 대상자	▶ 지역사회 장애인 ¹⁾ 중 5%, 또는 500명 이상을 장애인보건의료관리대상자로 확보
		3. 인력구성	▶ 직제상 팀구성 원칙 - 기본인력 전담자1명(정규직), 재활요원1명이상+의사(연계), 간호사, 물리치료사(또는 작업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 의사, 간호사, 치료사는 필수인력으로 구성을 권장하며 운영점검시 인력구성 기준사항에 포함되어 평가됨 ·어려운 경우: 기능형 재활팀으로 5명 이상 구성
		4. 중점활동	▶ 등록 및 퇴록관리, 장애인 현황 파악 및 재활평가, 건강사정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제공 -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 - 장애인 건강보건정보 서비스 -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 방문재활 등 재활서비스
			▶ 연계병원 퇴원 시 커뮤니티케어 연계
5. 지역자원 기반	〈연계〉 지역사회재활협의체(회) 구성/ 자원봉사 운영체계 구축 〈서비스 시스템〉 전화/영상통화/내소 방문진료를 위한 각종 시스템 〈교육 훈련〉 실무자 교육 강화(건강사정 기술 등) 〈기타〉 재활정보센터(재활관련 정보제공)/ 장애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6. 성과평가	등록관리율, 정기관리장애인의 삶의 질, (우수사례) Case report 세부 프로그램별 목표달성율과 세부 프로그램별 결과지표(선택), 커뮤니티케어 연계 실적		
¹⁾ 정신장애는 정신보건사업 대상으로 분류되므로 지역사회등록장애인에서 제외할 것			
사업 유형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지역사회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일상생활 자립 능력 및 사회참여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서비스 - 거동불능장애인 방문재활 - 이동기능장애인 재활교실 - 의료기관과의 통합협력 서비스 및 커뮤니티케어 연계 	

구 분		내 용																					
사업 유형	장애인 사회참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재가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사회참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조모임 및 상담, 가족지지 - 재활스포츠/레크레이션 - 여가·문화지원 																					
	자원연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삶의 질 향상 <table border="1"> <tr> <td>건강검진 지원서비스</td> <td>보조기기 지원서비스</td> <td>가옥내 편의시설 지원서비스</td> <td>장애인운전지 원서비스</td> <td>인적 자원 연계</td> <td>보건소 내 연계 서비스</td> </tr> </table>					건강검진 지원서비스	보조기기 지원서비스	가옥내 편의시설 지원서비스	장애인운전지 원서비스	인적 자원 연계	보건소 내 연계 서비스											
	건강검진 지원서비스	보조기기 지원서비스	가옥내 편의시설 지원서비스	장애인운전지 원서비스	인적 자원 연계	보건소 내 연계 서비스																	
	장애발생 예방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지역 주민의 후천적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장애발생 예방 <table border="1"> <tr> <td colspan="3">장애발생예방 교육</td> <td colspan="3">장애체험 교육</td> </tr> <tr> <td colspan="3">▶ 낙상예방교육, 뇌졸중예방교육, 교통안전교육, 산업안전 교육, 허약노인장애예방, 장애 인식개선활동 등</td> <td colspan="3">▶ 시각장애 체험, 지체장애의 휠체어 등 체험</td> </tr> </table>					장애발생예방 교육			장애체험 교육			▶ 낙상예방교육, 뇌졸중예방교육, 교통안전교육, 산업안전 교육, 허약노인장애예방, 장애 인식개선활동 등			▶ 시각장애 체험, 지체장애의 휠체어 등 체험							
장애발생예방 교육			장애체험 교육																				
▶ 낙상예방교육, 뇌졸중예방교육, 교통안전교육, 산업안전 교육, 허약노인장애예방, 장애 인식개선활동 등			▶ 시각장애 체험, 지체장애의 휠체어 등 체험																				
장애발생 예방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지역 주민의 후천적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장애발생을 예방 하기 위함 <table border="1"> <tr> <td colspan="3">장애예방 프로그램</td> <td colspan="3">가옥내편의시설 지원서비스</td> </tr> <tr> <td colspan="3">▶ 장애체험 : 시각장애의 봉사체험, 지체장애의 휠체어 등 체험, 소감문 작성</td> <td colspan="3">가옥진단, 안전바, 문턱제거,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td> </tr> <tr> <td colspan="3">▶ 장애예방 : 낙상예방교육, 뇌졸중예방교육, 교통안전 교육, 산업안전교육, 허약노인장애예방</td> <td colspan="3"></td> </tr> </table>					장애예방 프로그램			가옥내편의시설 지원서비스			▶ 장애체험 : 시각장애의 봉사체험, 지체장애의 휠체어 등 체험, 소감문 작성			가옥진단, 안전바, 문턱제거,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 장애예방 : 낙상예방교육, 뇌졸중예방교육, 교통안전 교육, 산업안전교육, 허약노인장애예방					
장애예방 프로그램			가옥내편의시설 지원서비스																				
▶ 장애체험 : 시각장애의 봉사체험, 지체장애의 휠체어 등 체험, 소감문 작성			가옥진단, 안전바, 문턱제거,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 장애예방 : 낙상예방교육, 뇌졸중예방교육, 교통안전 교육, 산업안전교육, 허약노인장애예방																							
참고	우선권장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및 연계병원 퇴원 시 커뮤니티케어 연계 																					
	관련지침 및 매뉴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지역사회중심재활) 																					
담당자	구 분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전자우편																		
	사무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김현정	044-202-3296	bear9125@korea.kr																		
	주무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국립재활원 공공재활의료지원과	이신영 김윤미	044-202-3297 02-901-1656	lsy207@korea.kr nrccbr@korea.kr																		

제 5 장 부 록

❖ 방문건강관리

구 분		내 용
사업 개요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의 건강인식제고,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의 건강행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상태 인식 - 건강생활 실천 유도 - 건강지식 향상 • 취약계층의 건강문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문제 정기적 스크리닝 - 증상 조절 - 치료 순응 향상
	'19년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과정별 건강생활실천 관련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노인 건강관리 강화
	관련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지역보건법 제9조,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업 유형	건강행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연, 절주, 규칙적 신체활동, 균형 있는 영양 섭취 등 건강생활실천을 통한 질환 발생 사전 예방 •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검진 및 생애전환기검진 결과 건강위험요인(정상B)이 있는 대상자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는 대상자 • 건강관리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 스크리닝 - 일반검진 및 생애전환기검진 결과확인 및 직접방문상담 - 생활습관 상담,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동기 부여 및 교육 - 대상자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정서적 지지 등 • 연계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내)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지역정신보건센터 등 - (보건소 외) 광역치매센터, 광역정신보건센터, 통합사례관리사업 의뢰 및 연계 등

구 분	내 용
사업 유형	<p>만성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고혈압·당뇨·암 등 주요 만성질환의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를 최소화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검진 및 생애전환기검진 결과 건강문제(질환의심, 유질환자)가 있는 대상자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는 등록관리 대상자 - 보건소 내 진료실, 만성질환관리팀 등 타부서로부터 의뢰된 만성질환자 -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 의뢰된 만성질환자 • 건강관리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 스크리닝 - 일반검진 및 생애전환기검진 결과 확인 및 직접방문상담 실시 - 만성질환자의 생활습관 상담, 건강생활실천 동기부여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한 교육 - 복용 약물에 대한 점검 및 상담 - 암으로 인한 증상 및 통증 조절을 위한 정보 제공 - 대상자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정서적 지지 등 • 연계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내)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등 - (보건소 외)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역사회 보건의료 전문 기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의뢰 및 연계 등
임산부·신생아 및 영유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산부와 신생아의 잠재적인 건강문제를 조기 발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건강위험군인 영유아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보건팀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신청자 - 방문건강관리를 필요로 하는 산모와 영유아, 특히 다문화가족 여성 및 자녀 - 임부 혹은 분만 8주 이내 산욕기에 있는 산부 - 출생 4주 이내 신생아 및 영유아 • 건강관리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임부 및 정상임부의 건강문제 스크리닝 - 산욕기 평가에 따른 산후 건강관리 - 모유수유 정보제공 및 상담 - 신생아·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른 건강문제 스크리닝 및 예방접종 관리 -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 - 대상자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정서적 지지 등

제 5 장 부 록

구 분	내 용
임산부· 신생아 및 영유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내)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 모자보건사업(철분제, 엽산제 지원,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등), 산모건강관리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등 - (보건소 외)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역사회 보건의료전문기관 의뢰 및 연계 등
사업 유형 노인 허약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의 신체적·인지적·정서적·사회적 기능의 회복, 유지 및 증진을 통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을 도모하고 장기요양상태를 사전 예방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65세이상 노인의 허약노인 판정평가(만 65세 이상 건강면접조사표-기초 측정표) 결과, 4~12점으로 고위험 허약노인에 해당되는 자 • 건강관리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에 대해 허약노인 판정평가 실시 - 운동, 영양, 구강관리, 요실금, 우울 예방, 인지강화, 낙상예방을 위한 허약노인 중재 프로그램 제공 - 저작, 연하, 발음, 타액분비 등의 구강기능 향상을 위한 입체조 실시 - 치매관련 건강관리(치매조기 선별검사는 필요시 보건소 치매검진사업팀과 치매측정 도구를 일원화하여 실시) - 폭염, 혹한 등 계절별 건강관리교육 실시 - 취미, 종교 활동 등 사회적 참여 지지 및 독려 - 가정 내·외의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 대상자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정서적 지지 등 • 연계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내)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치매관리 사업, 치매상담센터, 노인의치·보철사업, 불소도포·스케일링 지원사업,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등 - (보건소 외)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역사회 보건의료전문기관 의뢰 및 연계 등
다문화 가족 및 북한이탈 주민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를 가진 다문화가족 관리 - 감염성 질환 및 정신건강문제를 가진 북한이탈주민 관리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구 분		내 용				
사업 유형	다문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관리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습관 상담,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동기 부여 및 교육 - 다문화가족 지지체계 확인 및 가족 내 의사소통 장애요인 파악 - 다문화가족의 문제해결 능력 강화를 위한 중재와 상담 - 북한이탈주민 중 결핵, B형간염 등 감염성 질환을 가진 건강위험군 발굴 및 등록 -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등 정신건강문제 스크리닝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방문하여 건강상담 및 교육 - 대상자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정서적 지지 등 • 연계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외)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역사회 보건의료전문기관 의뢰 및 연계 등 				
	장애인 재활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조기발견, 2차 장애예방 및 재활치료 등 지속적 관리로 장애의 최소화 및 일상생활 자립능력 증진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7세 이상 기초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재가 장애인 • 건강관리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증진을 위한 일상생활수행능력(ADL), 관절구축 예방운동 교육 - 기본 건강관리 : 위생, 영양, 피부관리(욕창관리, 체위변경), 구강위생관리 등 - 연하장애·호흡장애 관리, 배변·배뇨관리 교육 및 훈련, 저작능력향상을 위한 운동 교육 - 장애심화 위험요인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위한 자가건강관리 교육 - 2차 장애예방을 위한 낙상 및 안전관리 교육 - 대상자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정서적 지지 등 • 연계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내)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등 - (보건소 외)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 의뢰 및 연계 등 				
참고	우선권장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행태개선, 노인허약 예방 				
	관련 안내서 및 매뉴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방문건강관리) 				
담당자	구분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전자우편	
	사무관	건강정책과	이정우	044-202-2808	ljw6950@korea.kr	
	주무관	건강정책과	정미희	044-202-2805	heeya02@korea.kr	

제 5 장 부 록

부록 2 사업방법

◆ 건강상담

구 분	내 용
의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상담을 제공하여 건강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교육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 • 건강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행태개선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개인 건강상태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고, 건강상태에 따른 건강관리방향을 제시함
내용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은 사업내용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은 흐름을 적용할 수 있음 • (안내전화) 검진결과 연계 및 보건소 상담에 대한 안내 후 서비스 참여 동의여부 확인하여 상담일정 예약 • (건강상담) 보건소 내소 또는 생활터 접근을 통해 상담 실시 ※ 건강상담 시작 전 서비스 참여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서를 받아야 함 • (정보제공)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 질환관련 정보 제공 및 질환별 건강행태 유의사항 제공 및 의료기관 방문 안내 • (행태개선) 건강행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행태개선 방향에 대한 상담 • (자원연계) 전문상담연계 및 보건소 내외 자원정보 안내 ※ 보건소 내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센터 연계, 지역내 보건 자원 연계 • (사후관리) 상담 후 2개월, 6개월 후 유선으로 건강습관실천여부 확인 ※ 전화 또는 생활터로 접근하여 집단 상담 가능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금연클리닉 상담매뉴얼 • 건강검진결과상담 매뉴얼 신체활동, 영양 전문상담 • 장애인의 심리·상담 기본 마스터 • 고혈압 당뇨병 환자 상담 및 응대 표준 매뉴얼 ※ 더 많은 자료를 참고하고자 하는 경우, '한 눈에 보는 건강증진사업 발간자료' 참조

◆ 교육

구 분	내 용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습관을 형성하고 건강위험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의 필요성과 자가건강관리기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
수행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소 인력 지역 내에서 양성된 건강지도자 지역 내 보건전문가(예 : 보건교사, 영양사, 체육교사, 사업장 보건책임자 등) 등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건강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그에 따라 생애과정별, 생활터별 교육을 실시함 나누어 실시하되, 대상 집단 특성에 따라 보다 세분화할 수 있음 ※ 예 : 노인(보건소, 경로당, 실버센터 등), 성인(보건소, 직장인, 주부, 대학생, 임산부 등), 청소년(중학생, 고등학생 등), 아동(유아, 초등학교 등)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식개선)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고취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효과 및 만성질환예방에 대한 정보제공과 체험담 등으로 구성 (건강관리기술개발) 건강습관을 실천하고 문제가 되는 건강행태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과 자가건강관리기술을 가르치고 습득하도록 교육함
접근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애과정별, 건강행태별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교육전략을 수립하고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등의 교육을 개별로 실시하는 것보다 통합적 접근을 권장하되, 건강문제크기에 따라 영역별로 수행할 수 있으며, 영역별로 교육할 수 있음 지역주민 교육은 보건소 내소 교육과 생활터 접근 교육(강사 파견 등)이 있음 교육 내용 및 성격에 따라 1회성 교육과 반복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 1회성 교육은 인식개선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반복교육은 인식개선 및 건강관리기술 습득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 권장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비만예방 프로그램(건강체중 알리미 학교) 성인여성 건강체중을 위한 신체활동 가이드 허약노인 운동교육자료 노인을 위한 영양교육 프로그램 치아건강 몸건강 하안치아 밝은미소 교육소책자-뇌졸중, 고혈압, 당뇨 한의약건강증진 교육매뉴얼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표준교육 프로토콜(교사용, 학생용) 지역사회중심재활교육(재활간호과정, 고령장애인재활과정 등) ※ 더 많은 자료를 참고하고자 하는 경우, '한 눈에 보는 건강증진사업 발간자료' 참조

제 5 장 부 록

❖ 홍보 및 캠페인

구 분	내 용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 주민의 인식제고 및 건강습관 실천유도, 지역사회 내 건강 생활습관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사업 및 건강습관실천의 필요성 및 방법에 대하여 널리 알리는 것 • 캠페인 : 건강습관실천에 대한 인식제고 및 주민 설득을 통한 실천율 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을 상대로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운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인식 고취 및 건강증진에 대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목적에 맞는 세분화된 홍보 메시지 마련 • 홍보 내용은 건강습관 실천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지역 건강특성에 따른 우선순위가 높은 건강행태를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 예) 국립공원 내 매점에서 술 판매금지 운동, 휴가철 피서지(해수욕장, 계곡 등)에서 술 적당히 마시기 운동, 어린이 야채·우유 먹기 운동 등 • 건강관련 날과 연계하여 캠페인 및 홍보 추진 • 중앙 및 시도는 건강습관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며, 보건소는 사업 대상자 모집, 건강 정보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음 • 캠페인의 경우 중앙 및 시도의 캠페인 콘셉트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음
접근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매체(지역신문, 지역방송 등), 옥외광고물(현수막·전광판·포스터 등), 사용자제작컨텐츠(UCC),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블로그, 트위터, 미투데이 등) 등 다양한매체를 통한 홍보 전략 추진
참고자료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연바이럴영상 • 음주폐해예방 포스터, 절주 홍보용 패널 • 아동바른양치실천 확대를 위한 홍보자료 • 수도물 불소농도조정 홍보자료 모음집 •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책자, 동영상, 포스터)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판넬카드 <p>※ 더 많은 자료를 참고하고자 하는 경우, '한 눈에 보는 건강증진사업 발간자료' 참조</p>

◆ 건강 환경 조성

구 분	내 용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생활 실천을 지원·지지하고, 건강행태를 조장하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이와 관련된 제도의 변화 • 학교, 직장, 경로당 등 생활터에 접근하여 건강습관 실천에 관한 조직적 변화를 유도 (예 : 식단 저염화, 저층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 환경조성은 조례, 규칙 등 공공정책접근을 통한 제도 개선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조성 : 물리적·사회적 환경조성을 달성하는 방법에는 걷기 공원을 직접 조성하거나, 체육수업시간에 자습이 아닌 신체활동을 하도록 학교를 설득하거나, 금연구역을 확대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음 ※ 제도개선 : 제도개선은 대상 및 범위가 광범위하고 효과가 지속된다는 측면에서 권장됨(금연공간을 직접 설치하는 것보다 금연공간 설치 의무화 조례 제정이 보다 광범위한 효과가 있음)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생활실천이 유리하거나 용이한 환경조성 및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 : 저염식당 및 영양식당 지정, 식단 저염화, 건강매점 개설 등 ※ 신체활동 : 걷기코스 신설, 운동장소 정비, 저층 엘리베이터 사용제한 등 ※ 금연 : 금연구역 확대, 담배 진열 제한 등 ※ 절주 : 절주공원조성 등 • 관련 조례, 규칙, 학칙, 사칙 등의 개정을 추진
접근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내부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건강지도자 및 주민참여를 적극 활용함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자료집 • 금연이슈리포트 • 신체활동 친화적인 도시 만들기 기획가이드 • 계단을 이용한 신체활동 활성화 • 즐거운 양치시간을 위한 학교의 변화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안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 많은 자료를 참고하고자 하는 경우, '한눈에 보는 건강증진사업 발간자료' 참조

제 5 장 부 록

❖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협의기구 운영)

구 분	내 용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는 지역사회 참여, 관계기관 연계, 사업 운영방법 전환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건강을 총괄하는 역할 수행하여야 함 •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보건소 내외 자원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협력하기 위한 보건소 주도의 협력체계 마련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과의 협의적 참여기반 마련 • 내 잠재적 보건자원을 발굴하여 부족한 자원의 제약을 극복하고 자원 간 연계 협력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협력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히 전화를 주고받는 것부터 공동의 사업까지 다양화할 수 있으며, 수행하는 사업 성격에 따라 협력의 정도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 - 점차 협력의 정도를 높이면서 지역사회 자원과의 협력사업 활성화를 권장함 •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 기관과 도움 주고받기 (전화, 공문 등을 통한 업무) - 주민 단체를 통해 보건사업 홍보하기 (주민회, 부녀회 등을 통한 사업 홍보) - 대상자 모집 및 장소 지원받기 (학교, 사업장 등 대상자 모집 및 장소 지원) - 사업기획 및 수행과정 관련 자문받기 (전문가, 단체 등 자문 등) - 다른 기관들과 공식적인 관계 맺기 (MOU 체결) - 여러 조직, 기관의 담당자나 대표가 모여 공동의 자원으로 지역사회보건사업을 공동기획하기 (협의체 구성)
운영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활용)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문제 토의 및 우선추진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기존의 협의기구를 활용 •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 및 비정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협력사업 운영, 원활한 협조, MOU 등) • 지자체(시군구청) 내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부서 간 TF 등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활용 • 사업대상자(주민), 전문가, 관계기관 등을 활용하여 정기 및 비정기적으로 사업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사업에 반영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장애인 구강보건의료기관 Guide Map Book ※ 더 많은 자료를 참고하고자 하는 경우, '한눈에 보는 건강증진사업 발간자료' 참조

◆ 주민 참여형 건강증진전략

구 분	내 용	
사업개요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해 지역주민에게 건강증진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며, 점진적으로 주민주도의 지역사회 건강증진 거버넌스를 구축 보건소는 서비스 제공자에서 지역사회 조력자(facilitator)로 역할을 전환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적 변화 유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통해 지역여건, 사업운영 기반 및 주민역량수준을 검토하여 서비스접근전략별(보건소 주도형, 주민협력형, 주민주도형) 접근 수행 서비스접근전략에 따라 건강증진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건강문제와 연계된 타 분야(환경, 주거·문화, 교육 등)의 문제를 추가로 연계하여 추진 가능 지역사회 내 현황 파악을 통해 건강문제 우선 중점 사업대상 선정(예시) (생활터형 공동체)마을, 아파트, 학교, 산업장, 자활센터, 시장, 경로당 등 물리적 공간의 지역사회 (생활터 외 공동체형) 건강동아리, 자원봉사단체, 건강취약계층 등의 유사특성 및 건강 위험행태를 가진 집단 공동체 (생애과정형) 어린이집, 학교, 사업장, 경로당 등 생애과정별 대상 선정
서비스 접근전략 유형	보건소 주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건강증진사업 수행시 보건소 주도로 지역사회 주민을 동원하여 건강증진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건강을 총괄하는 역할 수행
	주민 협력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근거로 지역주민과 함께 건강관련 문제선정 및 의견수렴하여 사업영역 선택, 수행, 평가 실시 보건소가 지역주민들과 관계형성 및 권한을 공유하며, 기획, 수행, 평가 등의 결정권을 가지고 협력적 과정을 진행 보건소는 기존의 서비스 제공자인 동시에 지역사회 보건분야의 조정자 역할을 담당
	주민 주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 건강문제 선정 및 사업 분야 선택, 기획, 수행, 평가, 환류 등 전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전반의 변화를 이끄는 보건사업의 동력으로써 역할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참여형 건강증진모형(생활터형) 제공예정 지역사회 참여형 연구 트레이닝 매뉴얼 함께 다 같이 건강한 지역사회(수기집) ※ 더 많은 자료를 참고하고자 하는 경우, '한눈에 보는 건강증진사업 발간자료' 참조 	

❖ 지역사회 건강 모니터링

구 분	내 용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건강문제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목표설정 및 사업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보건정책이나 사업이라도 지역의 특성에 따라 효과 및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지역의 현황 및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물리적 사회경제적 특성, 건강수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건강형평성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지역의 건강수준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사업 수행과정에 활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문제) 전국민 건강조사, 내부 조사 자료 등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급하여 지역사회 건강수준을 파악함 - 2차자료활용(지역사회건강조사 등) (주민요구도) 지역사회 주민 모임, 주민 대상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이 높은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파악함 - 직접조사, 시군구청 내 조사자료 활용 (외부요인) 정책적, 경제적, 환경적, 새로운 건강문제 대두 등 다양한 외부 환경 변화를 주시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제도환경)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례지정 등)을 마련하고 이행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수시로 점검함 (외부자원) 지역사회 자원(보건의료관련 기관 및 단체,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제공하는 보건사업 및 서비스 내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협력 연계가 필요한 부문을 파악함
운영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건강조사, 국가통계포털, 보건소 내부 조사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음(여건에 맞게 수행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4년주기로 실시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현황분석 내용 활용 지역사회 특성이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므로 주기적으로 이러한 특성을 파악하여 계획 수립, 사업 수행, 평가 등 사업 전반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함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별 지역보건취약지역 보고서 음주를 조장하는 유해환경 모니터링 매뉴얼 ※ 더 많은 자료를 참고하고자 하는 경우, '한눈에 보는 건강증진사업 발간자료' 참조

◆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구 분	내 용
의의	<p>〈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도시(화) 지역에 주민참여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활동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 • (개념)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기능 특화 지역보건 의료기관' • (법적근거) 지역보건법 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 (인력구성) 상근인력 최소 5인 이상 배치하되, 일정 수준의 사업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8~10인 이상 배치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배치기준 : 의사 또는 한의사(1, 비상근 가능), 간호사/간호조무사(3), 물리치료사/체육지도자(1), 영양사(1) • (조직구성) 보건소장 관할 하에 별도 조직으로 두고, 역할 및 기능별 부서를 둘 수 있음
내용	<p>〈건강생활지원센터 수행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사업) 지역수요 및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주민 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통합건강증진 사업 범위 내에서 지역 특화사업 및 기본사업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진료, 예방접종, 건강진단서(보건증) 발급 업무수행 불가(건강보험 급여 청구 불가)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 5px 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화사업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지침에 제시된 13개 사업분야에서 관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주민참여와 지역사회 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특화사업 1가지 이상 필수 개발 및 추진 2. 기본사업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5개 분야(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사업, 건강위험군 등에 대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선택하여 자율적 추진 </div>
전략	<p>〈건강생활지원센터 핵심 운영원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기반) 보건소의 일부 업무 부담이 아닌 관할 지역에 특화된 대상자 발굴 및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 집단적·사회적 접근, 생활터 중심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등 권장 • (주민참여) 사업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주민주도적 건강활동 수행 • (지역자원 협력) 지역자원 협력 네트워크망 구축을 통해 지역기반 통합적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p>〈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준비→지역사회 파악 및 진단→지역건강 거버넌스(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실무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사업계획수립→사업수행→사업모니터링, 평가 및 발전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도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안내 • 2018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안내 •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운영 매뉴얼

❖ 모바일 헬스케어

구 분	내 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방적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해 ICT와 빅데이터(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공공 영역인 보건소에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성질환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자(단, 질환자는 제외)로 검진결과 ①혈압, ②공복혈당, ③허리둘레, ④중성지방, ⑤HDL-콜레스테롤 중 1개 이상이 건강위험에 해당될 경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 style="background-color: #c8e6c9;">위험요인</th> <th style="background-color: #c8e6c9;">판정수치</th> </tr> </thead> <tbody> <tr> <td>① 혈압</td> <td>수축기/이완기</td> <td>130mmHg/85mmHg이상</td> </tr> <tr> <td>② 공복혈당</td> <td></td> <td>100mg/dL이상</td> </tr> <tr> <td rowspan="2">③ 허리둘레</td> <td>남</td> <td>90cm이상</td> </tr> <tr> <td>여</td> <td>85cm이상</td> </tr> <tr> <td>④ 중성지방</td> <td></td> <td>150mg/dL이상</td> </tr> <tr> <td rowspan="2">⑤ HDL-콜레스테롤</td> <td>남</td> <td>40mg/dL 미만</td> </tr> <tr> <td>여</td> <td>50mg/dL 미만</td> </tr> </tbody> </table>	위험요인		판정수치	① 혈압	수축기/이완기	130mmHg/85mmHg이상	② 공복혈당		100mg/dL이상	③ 허리둘레	남	90cm이상	여	85cm이상	④ 중성지방		150mg/dL이상	⑤ HDL-콜레스테롤	남	40mg/dL 미만	여	50mg/dL 미만
	위험요인		판정수치																				
	① 혈압	수축기/이완기	130mmHg/85mmHg이상																				
	② 공복혈당		100mg/dL이상																				
	③ 허리둘레	남	90cm이상																				
		여	85cm이상																				
④ 중성지방		150mg/dL이상																					
⑤ HDL-콜레스테롤	남	40mg/dL 미만																					
	여	50mg/dL 미만																					
추진절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소 사전방문) 검진 결과를 토대로 건강 상담 및 건강관리계획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위험요인 상담(의사) 및 식사습관·운동·금연 등에 대한 건강생활실천 상담·교육 (간호사, 영양사, 신체활동 전문인력) (건강생활실천)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하여 건강정보, 생활습관 등 자동측정·전송 ⇒ 스마트폰 앱 활용하여 상담·교육 등 피드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 관리) 자신의 누적된 데이터를 통해 활동량·식습관 개선 등 건강생활실천 여부 및 혈압·혈당·체성분 등 건강위험 수치 상시 확인 가능 - (피드백) 운동 등 건강생활실천 이행 모니터링은 일 1회 이상 발송, 건강상태·영양·운동에 대한 전문상담은 각각 월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되, 필요시 통화 상담(예외적으로 대면 상담도 가능) (보건소 방문) 6개월 후 신체계측,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위험요인 변화 등에 대한 대상자 평가 및 향후 건강관리계획 제공(의사, 간호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관리 효과, 연장 의사 등에 따라 6개월 후 서비스 지속 여부 결정 																						
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안내서 																						

지표명		내 용	
[1] 건강생활실천			
유형	목 표 값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남자 조사 대상자 중 평생 5갑(100개비) 이상 흡연한 사람으로서 현재 흡연하는 남자('매일 피움' 또는 '가끔 피움')의 분율 • 산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자 : 평생 5갑(100개비) 이상 흡연한 사람 중에 현재 흡연자('매일 피움', 또는 '가끔 피움')의 수 - 분모 : 남자 조사대상 응답자 수 • 통계원 : 지역사회건강조사 	
	최종지표	<input type="checkbox"/> 상향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하향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유형	목 표 값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현재 흡연자 중 최근 1년 동안 24시간 이상 금연을 시도한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 산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자 : 최근 1년(365일) 동안 24시간 이상 금연을 시도한 적이 있는 현재 흡연자('매일 피움', 또는 '가끔 피움')의 수 - 분모 : 현재 흡연자('매일 피움', 또는 '가끔 피움') 수 • 통계원 : 지역사회건강조사 	
	최종지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향 <input type="checkbox"/> 하향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유형	목 표 값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일을 하고 있는 현재 비흡연자(과거흡연자 포함) 중 최근 1주일 동안 직장의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맡은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 산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자 : 최근 1주일 동안 직장의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맡은 적이 있는 사람의 수 - 분모 : 일을 하고 있는 현재 비흡연자(과거흡연자 포함)의 수 • 통계원 : 지역사회건강조사 	
	최종지표	<input type="checkbox"/> 상향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하향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지표명		내용
(4) 월간 음주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 : 최근 1년(365일) 동안 한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신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산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자 : 최근 1년(365일)동안 한달(30일)에 1회 이상 술을 마신적이 있는 사람의 수 - 분모 : 조사대상 응답자 수 통계원 : 지역사회건강조사
유형	목표값	<input type="checkbox"/> 상향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하향
	최종지표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5) 고위험 음주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 : 최근 1년(365일) 동안 음주한 사람 중에서 남자는 한 번의 술자리에서 7잔 이상(또는 맥주 5캔 정도), 여자는 5잔 이상(또는 맥주 3캔 정도)을 주 2회 이상 마신다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 산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자 : 최근 1년(365일) 동안 음주한 사람 중에서 남자는 한 번의 술자리에서 7잔 이상(또는 맥주 5캔 정도), 여자는 5잔 이상(또는 맥주 3캔 정도)을 주 2회 이상 마신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 - 분모 : 최근 1년 동안 음주한 사람의 수 통계원 : 지역사회건강조사
유형	목표값	<input type="checkbox"/> 상향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하향
	최종지표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6) 영양표시 독해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 : 가공식품을 사거나 고를 때 영양표시를 읽는 사람의 분율 산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자 : 가공식품을 사거나 고를 때 영양표시를 읽는 사람의 수 - 분모 : 영양표시를 알고 있는 사람의 수 통계원 : 지역사회건강조사
유형	목표값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향 <input type="checkbox"/> 하향
	최종지표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7) 5일 이상 아침식사 실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 : 최근 1주일 동안 5-7일 아침식사를 한 사람의 분율 산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자 : 최근 1주일 동안 5-7일 아침식사를 한 사람의 수 - 분모 : 조사대상 응답자 수 통계원 : 지역사회건강조사
유형	목표값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향 <input type="checkbox"/> 하향
	최종지표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지표명		내 용	
(8) 걷기 실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최근 1주일 동안 1일 30분 이상 걷기를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비율 • 산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자 : 최근 1주일 동안 1일 30분 이상 걷기를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수 - 분모 : 조사대상 응답자 수 • 통계원 : 지역사회건강조사 	
유형	목 표 값	■ 상향 □ 하향	
	최종지표	□ 투입 □ 과정 □ 산출 ■ 결과	
(9)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p>※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는 당해년 첫 조사로 아래의 정의, 산출식은 국민 건강영양조사의 내용으로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분 이상 또는 중강도와 고강도 신체활동을 섞어서(고강도 1분은 중강도 2분) 각 활동에 상당하는 시간을 실천한 비율 • 산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자 : 평소 1주일 동안 유산소 신체활동을 실천한 사람의 수 - 분모 : 조사대상 응답자 수 • 통계원 : 지역사회건강조사 	
유형	목 표 값	■ 상향 □ 하향	
	최종지표	□ 투입 □ 과정 □ 산출 ■ 결과	
(10) 비만 유병률		<p>※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는 당해년 첫 조사로 아래의 정의, 산출식은 국민 건강영양조사의 내용으로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 체질량지수 25kg/m² 이상인 비율 • 산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자 : 체질량 지수(kg/m²) 25이상인 사람의 수 - 분모 : 조사대상 응답자 수 • 통계원 : 지역사회건강조사 	
유형	목 표 값	□ 상향 ■ 하향	
	최종지표	□ 투입 □ 과정 □ 산출 ■ 결과	

지표명		내용
(11) 모유수유 실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 : 해당 연도 1차 영유아 건강검진(생후 4~6개월) 수검자 중, 아이에게 주로 모유만 먹이는 사람의 분율 산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자 : 아이에게 주로 모유만 먹이는 자 - 분모 : 해당 연도 1차 영유아 건강검진(생후 4~6개월) 수검자 수 통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유형	목표값	■ 상향 □ 하향
	최종지표	□ 투입 □ 과정 □ 산출 ■ 결과
(12)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 : 점심식사 후 칫솔질 한 사람의 분율 산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자 : 점심식사 후 칫솔질 한 사람의 수 - 분모 : 어제 하루 동안 점심식사 한 사람의 수 통계원 : 지역사회건강조사
유형	목표값	■ 상향 □ 하향
	최종지표	□ 투입 □ 과정 □ 산출 ■ 결과
[2] 만성질환 예방·관리		
(13) 혈압 인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 : 본인의 혈압 수치를 알고 있는 사람의 분율 산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자 : 본인의 혈압 수치를 알고 있는 사람의 수 - 분모 : 조사대상 응답자 수 통계원 : 지역사회건강조사
유형	목표값	■ 상향 □ 하향
	최종지표	□ 투입 □ 과정 □ 산출 ■ 결과
(14) 혈당 인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 : 본인의 혈당 수치를 알고 있는 사람의 분율 산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자 : 본인의 혈당 수치를 알고 있는 사람의 수 - 분모 : 조사대상 응답자 수 통계원 : 지역사회건강조사
유형	목표값	■ 상향 □ 하향
	최종지표	□ 투입 □ 과정 □ 산출 ■ 결과

지표명		내용
(15) 1년후 300일 이상 고혈압 투약순응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 : 전년도 고혈압 의료이용자 중 당해년도 진료내역에서 고혈압 약제를 300일 이상 조제 받은 사람의 분율 산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자 : 해당 연도 진료내역에 고혈압 약제를 300일 이상 조제 받은 자 - 분모 : 전년도 고혈압 의료이용자(신규 의료이용자 제외) 통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유형	목표값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향 <input type="checkbox"/> 하향
	최종지표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16) 1년후 300일 이상 당뇨병 투약순응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 : 전년도 당뇨병 의료이용자 중 당해년도 진료내역에서 당뇨병 약제를 300일 이상 조제 받은 사람의 분율 산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자 : 해당 연도 진료내역에 당뇨병 약제를 300일 이상 조제 받은 자 - 분모 : 전년도 고혈압 의료이용자(신규 의료이용자 제외) 통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유형	목표값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향 <input type="checkbox"/> 하향
	최종지표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제 5 장 부 록

부록 4 목표치 설정 방법4)

목표치 결정 방법	적용기준	특성 및 계산방법
<p>1. 희망하는 변화율(%) 적용 (percent improvement) : 현재추이, 문헌, 희망하는 변화정도(%)를 반영하는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이의 양상을 지속시키는 수준에서 변화량 설정하고 싶은 경우 • 향상의 정도를 가속화시키거나 혹은 악화정도를 낮추는 수준으로 변화량 설정하고 싶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추이를 알아야 함 - 간략하며 이해하기 쉬움 다소 높은 목표치 설정 방법임 • 계산방법 목표치 = (희망하는 변화정도(%) × 현재 값) ± 현재 값
<p>2. 통계적 검증에 따른 목표치 설정(minimal statistical significance) : 현재 값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리적 값을 적용하여 목표치를 정하는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할 만한 자료가 있고, 현재 값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향상된 결과를 도출하고 싶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상이 우연적인 결과가 아님을 명확히 할 수 있음 - 합리적이지 않은 목표치가 도출될 수 있음 - 통계적 지식을 요함 -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방법임
<p>3. 타기관, 국가에서 이미 설정한 목표치를 기준으로 차용(using existing benchmark or standard) : 여러 연도에 대한 목표치를 추정하기 위해 기존비교 기준치나 기준을 사용하는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년간 사업, 장기효과를 기대하는 사업으로 매년도 목표치를 결정하는 경우 • 완료된 사업의 결과,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관련 규제, 정책, 법에 포함된 자료를 벤치마크, 기준으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자료를 필요로 하지 않음 - 장기 목표 및 기준 필요 다소 높은 목표치 설정 방법임
<p>4. 현재수준 유지(no increase from baseline: maintain baselin) : 현재 값(현재수준)을 목표치로 정하는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수용 가능한 수준에 도달하여 지속하고 싶은 경우 • 어느정도의 변화를 도출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대한 경험적 정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신규사업일 경우) • 이전 계획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여 다음 계획의 목표치로 이전 목표치를 그대로 활용해야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자료를 필요로 하지 않음 - 사업결과의 개선이 없음 • 계산방법 목표치 = 현재 값

4) 보건프로그램 기획과 평가, 현문사, 2015; 보건사업기획, 계축문화사, 2015

목표치 결정 방법	적용기준	특성 및 계산방법
<p>5. 지역 간 평균값(혹은 중앙값) 사용(mean(or median) rates across areas or sub-population)</p> <p>: 여러지역의 비율 평균치 혹은 중앙값을 목표치로 정하는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지역의 자료가 정규분포를 할 경우 ※ 대상 인구집단의 크기가 매우 다르고 정규 분포를 하고 있지 않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하기 쉬움 - 각 지역에 대한 자료가 필요함 -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방법임
<p>6. 여러지역의 상위 50%(혹은 75%)가 달성한 값 적용(best of the bset)</p> <p>: 각 지역의 자료가 있는 경우, 표적집단의 50%(혹은 75%)가 달성한 값을 목표치로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표적집단 중 낮은 수준에 있는 집단의 건강수준 향상을 높은 수준에 있는 집단의 수준까지 견인하기 위해 목표치 설정 ※ 목표치를 정하기 위해 꼭 50%, 75%의 집단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낮은 수준 집단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백분율(%)의 크기가 달라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인구집단을 도달 가능한 목표로 유도 가능 - 각 지역의 현재 값에 대한 자료 필요, 이해가 어려울 수 있음 -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방법임 • 계산방법⁵⁾
<p>7. 인구집단 중 가장 좋은 값 사용(rate for best stratum using socio-demographic groupings)</p> <p>: 여러 인구특성 중 가장 양호한 계층의 지표값을 목표치로 정하는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이 다년간 사업이거나, 장기효과를 기대하는 사업으로 매년도 목표치를 결정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인구집단을 도달 가능한 목표로 유도 가능 - 각 집단의 현재값에 대한 자료 필요, 이해가 어려울 수 있음 -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방법임
<p>8. 집단별로 상이한 목표치를 통합하여 결정(overall rate based on differential targets for each stratum)</p> <p>: 각 계층의 특정 값을 토대로 산출한 최종 비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이한 집단을 통합하여 목표를 설정해야할 경우, 각 집단의 인구수와 현재값을 토대로 통합하여 산출된 값을 목표로 삼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많은 요구가 있는 집단에게 집중적인 서비스 제공 - 각 집단의 현재값에 대한 자료 필요, 이해가 어려울 수 있음

제 5 장 부 록

5) 목표치 = $\frac{\text{상위 50\% (혹은 75\%)에 속하는 사람 중 건강성적을 성취한 대상자의 수}}{50\% (혹은 75\%)에 속하는 목표인구집단}$

부록 5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가이드라인

가. 개요

✦ 운영 목적

- 시·도 및 시·군·구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지역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해 사업 담당자들의 기획 및 수행 역량 강화
-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가 중심 모니터링 및 환류 체계 구축으로 내실있는 성과관리를 도모하여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효율성 제고
- 지역사회 중심 민-관 건강증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기반 구축

✦ 운영 근거

- 지역보건법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지역보건법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보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실험 또는 검사 업무
5. 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업무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비용보조, 실비보조, 그 밖의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운영 기본 방향

- (운영 주체) 시도(광역자치단체의 장)
- (운영 방식) 시도가 지원단을 ① 직접 구성·운영하거나, ② 관련 대학·지방공무원 교육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 기존 사업별로 추진하던 기술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 상황에 따라 기술지원 조직 통합 추진가능
 - 시도 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 부서' 공동 운영 가능

시도 단위 각종 지원단 통합 운영

- 2012년까지 국고로 지원·운영되었던, 「지역보건의료계획 광역기술지원단」, 「건강증진사업지원단」, 「방문건강관리 위탁교육」은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으로 통합
-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은 별도로 운영되나,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FMTP)」은 통합 운영 권장
 - ※ 기타 시도 자체예산으로 운영되는 지원단의 경우, 지원 내용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범위 일 경우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으로 통합 운영 권장

나. 지원단 구성·운영 기준

❖ 공통 기준

- 지원단장 1인과 부문별 분과로 구성
 - 지원단장은 지원단 운영 총괄 관리(기획-추진-평가-교육), 지원단 회의 주관, 분과 간 업무 및 역할 조정 등 담당
 - 부문별 분과는 시·도 현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사업계획 및 평가 분과와 교육 분과는 반드시 포함
 - 각 분과별 대표는 반드시 선정
- 기획, 평가, 교육, 의학, 보건, 간호, 영양, 신체활동, 구강보건 등 기술지원에 필요한 관련 전문가가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
 - 학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지역사회 의사결정권자 등을 포함 가능
- 지원단에 참여하는 연구진 및 시도 공무원은 동시에 여러 분과 및 업무 담당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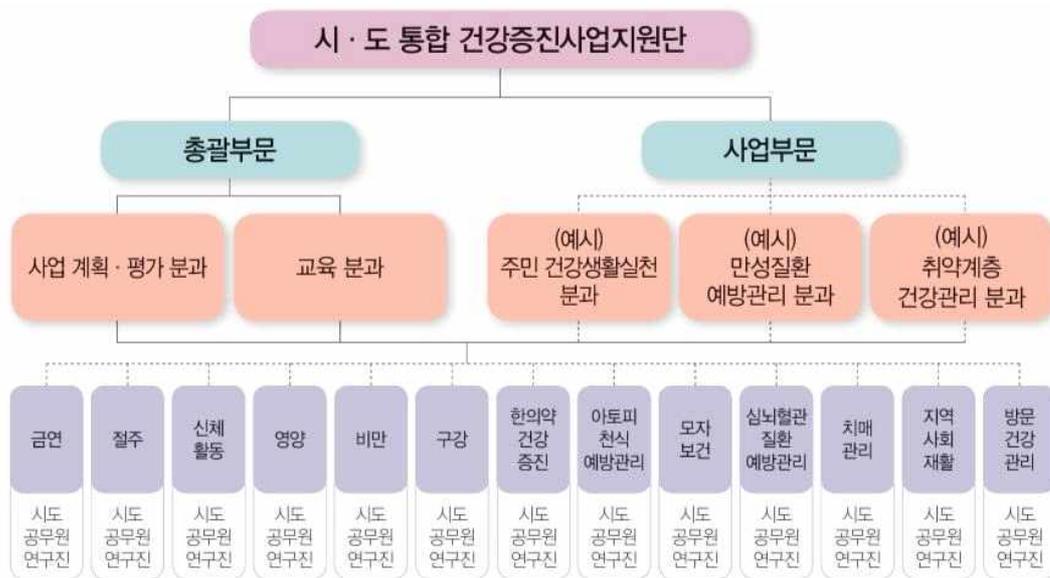
❖ 직접운영 시 기준

- 시·도 지사가 지원단장 및 지원단 위원을 직접 위촉
 - 지원단장 혹은 지원단 위원으로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지정 가능
 - 필요 시 일부 분과 및 업무에 대해서 별도의 위탁기관 지정 가능
- 시도 담당자(공무원) 전담인력 1인 이상 지정

✦ 위탁운영 기준

- 1개 기관에 지원단을 위탁·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개 이상 기관에 분과 또는 업무를 구분하여 위탁하거나 2개 이상 기관의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가능
 - 1개 기관에 위탁할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과별 연구진 (교수 등)은 2개 이상의 기관(대학 등) 소속의 연구진 참여
- 총괄 전담 상근인력을 최소 1인 이상 필수 지정하고, 분과별 전담인력 1인 이상 배치 권장(연구원급 혹은 연구보조원급)
- 신규 지정 시 최대 2년, 기존 기관 재지정 시 최대 3년 지정가능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조직도 예시〉



✦ 인력 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지원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 •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 예외 	
총괄 및 분과별 전담인력	연구원	• 지원단장 및 분과별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
	연구 보조원	•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수행인력	보조원	•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

다. 지원단 주요역할

❖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주요 역할

구분	주요 역할
① 계획수립 기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현황을 고려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방향 수립 지원 지역여건 및 사업목표에 부합하는 시도 및 시·군·구 계획수립 지원 및 계획서 종합검토·환류
② 성과관리 기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 지자체 사업 운영 현황점검 및 자문을 통한 사업수행 지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 지원 및 결과 환류
③ 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구 보건소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기획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구 보건소 사업내용 및 교육수요 파악 교육수요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선정 등 교육 기획 보건사업기획 교육, 사업수행 전략 등에 대한 자체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교육, 신규자 교육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자체 교육계획 수립 시군구 사업담당 공무원 및 기간제 경력자 인력을 대상으로 한 경력자 보수교육 운영 가능(필요 시 신규자에 대해서도 추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필요 시 타 시도 지원단과 협력·교류 교육과정 추진 가능
④ 연구 및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 및 시·군·구 지역 건강현황 자료 분석 및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업 관련 자료 제공 국내·외 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 분석 제공 지역 건강문제, 사업성과 진단 등 지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운영
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 밖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개최하는 워크숍, 회의 등

❖ 시도 및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역할 구분

- (시도) 관할 시·군·구의 계획서 검토, 평가 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을 위한 총괄 업무
-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시도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관할 시·군·구의 계획서 검토, 평가 및 평가결과 환류 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지원

추진주체	기능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결산 시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환류 총괄 시군구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서 검토 및 추진사항 총괄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구성 및 운영 총괄
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방향수립 지원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 및 환류 지원 시군구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서 작성, 사업 운영, 성과관리 관련 기술지원 시군구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 기술지원 수행 방법

- 서면자문 및 현장방문을 통하여 시도 및 시·군·구의 기획과 사업수행 지원
 - 최소 연 2회 이상(상·하반기) 관할 시·군·구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 대면의 방법을 통한 사업 진도점검 및 결과환류 필수
 - 현장방문 시 다양한 분과위원으로 팀을 구성하여 운영
- 시·도와 함께 관할 시·군·구 보건소의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담당인력의 교육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지원단 회의 및 워크숍 운영 방법

-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회의 운영
 - 지원단장이 주관하여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분과별 운영 사항, 추진일정, 논의사항 등을 검토 및 공유
 - 단, 연 2회(상·하반기) 지원단장, 총괄부서 과장·담당 사무관, 사업부서 담당 사무관, 분과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회의 필수 개최
-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워크숍 참석
 -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개최하는 워크숍, 회의 등 반드시 참석

시기	추진 내용(예시)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기술지원 연간 계획 공유 • 1/4분기 운영성과(시군구 보건소 계획수립 지원내용 등) 공유
3~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도 현장 모니터링 추진 방안 공유 • 2/4분기 운영성과(지자체 역량강화 방안 등) 공유
6~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 3/4분기 운영성과(현장 모니터링 추진결과 등) 공유
10~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장기 추진과제 및 2020년 실행계획 논의 • 연간 운영성과 논의 및 개선방안 마련

※ 상기 일정 및 주요내용은 사업추진 과정 중 변경될 수 있음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월별 주요 과업(안)〉

※ 아래의 월별 예상되는 주요 지원단 역할을 참고하여 사업 운영관리

※ 기술지원, 교육, 실적분석 등 기본사항은 따로 명시하지 않았음

시기	내용
1월~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단 구성·정비 • 당해 연도 교육, 기술지원, 성과관리 등 세부 운영 계획 작성·제출(2월 말) • 분기별 워크숍 참석(2월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기술지원 연간계획 공유 • 관할 시·군·구 간담회 등 평가결과 환류 실시
4월~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시·군·구의 사업계획서 종합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 대비 변경사항 및 수행사업 종합 정리 • 중앙정부 주최의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및 컨퍼런스 참여(상반기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우수기관 및 개선기관 포상 현황 파악 -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건강증진사업 최신동향 컨퍼런스 참여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시·군·구 현장방문 실시(5월~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 사업 애로사항 등 수행성과 점검 • 계획수립 컨설팅 필요 지역 선정·제출
7월~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사업실적 중간점검 및 수행지원 • 분기별 워크숍 참석(8월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모니터링 추진결과 등 공유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방문결과 종합검토 및 점검결과 시·군·구 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운영 미흡지역(컨설팅 필요) 집중 기술지원 실시
10월~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주최의 차년도 사업설명회 참석, 계획서 작성 기술지원 실시(10월~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서 작성 미흡 지역 발굴 및 보완 지원 • 관할지역 시·군·구 계획서 종합 검토 및 분석 • 분기별 워크숍 참석(11월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장기 추진과제 논의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연도 기술지원 마무리 및 익년도 운영계획 수립 • 지원단 운영결과 보고서 작성(12월) 및 제출(익년도 2월)

라. 행정 사항

❖ 지원단 구성(선정) 및 결과제출

- (기본원칙) 시·도는 매년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구성·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서에 포함
 - 지원단을 직접 운영할 경우 위원의 임기, 지원단 조직(분과)구성 계획 포함
 - 지원단을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 기간, 선정기준 및 선정계획 포함
- (선정기준)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사항을 준수하고, 그 외에는 시·도의 자체 규정에 따라 선정기준 마련
 - 위탁 기관 선정 시 평가지표, 배점, 기준은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수립
 - 재지정시에도 기존 지원단의 활동에 대하여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재지정
- (선정취소 기준)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취소 가능
 - 부정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 시 적시한 사실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평가 결과 실적이 심히 부진하거나 부실한 경우
 - 관련 규정, 지침을 위반하거나 시정조치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예산 미확보, 정책 변경 등으로 더 이상 지원이 어려운 경우

❖ 사업관리 및 결과제출

- ① 운영계획 보고 ☞ <붙임1> 지원단 운영 계획서 참고
 - 시도는 지원단 선정 후 선정기관 및 지원단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원단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로 제출
- ② 사업 중간보고 ☞ 제출 양식 및 방법은 해당 공문에 따름
 - (중간보고)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도 및 보건복지부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에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현장 모니터링) 정기적으로 관할지역 시·군·구 현황파악 및 성과관리를 위해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
 - ※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 현장 모니터링 결과를 시도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
- ③ 사업 결과보고 ☞ <붙임2> 지원단 운영 결과보고서 참고
 - ※ 교육운영에 대한 추진 결과보고는 별도 제출 공문 양식에 따라 제출

- 시도(시도 지원단장)는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기술지원 및 교육 등에 대한 추진 결과를 작성하고, 최종 운영 결과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익년 2월)

④ 사업계획의 변경  <붙임3> 변경승인 요청서 : 서식 작성

- 사업계획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지원단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의 승인
 - 시도는 변경승인 요청서와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제출

※ 변경승인 요청범위 : ① 연구진, 연구기관, 세부사업, 예산의 변경, ② 그 외 시도에서 정하는 중요 변경사항

구분	제출시기	제출자료	제출방법
계획보고	• (신규, 재지정) 지원단 지정 후 1개월 이내 • (기존) 당해 연도 2월	• 지원단 운영 계획서	• 시도(시도 지원단장) → 보건복지부 공문제출
중간보고	• 요청 시	• 해당 공문에 따름	• 해당 공문에 따름
결과보고	• 차 년도 2월	• 지원단 운영 결과보고서	• 시도(시도 지원단장) → 보건복지부 공문제출
계획변경	• 계획 변경 시	• 변경승인 요청서 • (변경된) 지원단 운영 계획서	• 시도(시도 지원단장) → 보건복지부 공문제출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 (기본원칙) 예산편성·집행 시 투명성·효율성을 고려
 - 사업예산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시도 사업비에서 집행
 -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장은 지원단의 회계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계리 필요
 - 지원단 예산은 지원단이 주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도에서 예산규모를 설정
 - 교육예산은 시·군·구에 편성되어 있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비로 운영 가능
 - 지원단 예산은 해당 광역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수행지원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 추가 업무 배정 시 별도 예산을 배정하여 운영
- (세부기준) 지자체 규정에 따라 비목을 구분하여 편성하되,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기획재정부)’ 참고
 - ※ 수탁기관의 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1항17호’에 따라 전체 예산의 6% 이내 편성·집행
 - 상근인력(지원단장, 전담인력)은 인건비를 편성하여 지급하고 지급기준은 자체 규정에 따르되, 별도 기준이 없을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편성

구분	자격	역할	월 급여
지원단장 (책임연구원)	대학 부교수 수준	• 해당 용역 수행을 지휘·감독하여 결론 도출	3,216,863원
연구원	대학 조교수 수준	• 책임연구원 보조	2,466,647원
연구보조원	대학 조교 수준	• 통계처리, 번역 등	1,648,871원
보조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1,236,695원

- ①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 ② 상기단가는 **2019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17년 1.9%를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 인건비 지급 인력의 참여율은 사업수행 기간 동안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업무시간 비율로 정의하되, 해당 인력(개인)의 용역 참여 내역(타부처 포함) 및 과업의 총합이 100%를 넘지 않도록 참여율 관리
- 비상근인력의 경우 지원단 기술지원 활동사항에 따라 수당 지급이 가능하며, 지급기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를 참고
- (사용증빙) 비목별 사용한 경비는 계산서, 근거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집행

0000년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계획서

0000. 0

* 계획 수립 시 본 작성서식의 틀과 내용은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되, 지자체 특성에 따라 서식 및 내용은 일부 변경하여 작성 가능

○○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목 차 (예시)

〈요약문〉

1. 사업 필요성

2. 사업목적 및 목표

3. 추진체계 및 전략

4. 세부 추진계획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방향 수립지원, 보건소 성과관리 및 평가·환류지원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지원

시·군·구 현장방문 모니터링 및 환류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미흡평가 지자체 지원강화

사업자문 및 건강증진사업 정보교류 등

시도지원단 회의 및 워크숍 실시

6.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7. 사업수행인력

8.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 요약 문 |

사 업 명				
사업책임자			주관사업기관	
			직급/직위	
사 업 비(천원)	총 계	국비	지방비	기타 예산
사업기간	20 . 1. 1. - 20 . 12. 31			
사 업 내 용 요 약				

제 5 장 부 록

1. 사업 필요성

※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의 요구와 현황을 기술

2. 사업목적 및 목표

※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 및 사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목표를 기술

3. 추진체계 및 전략

※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지원단 조직구성 및 주요기능 등

4. 세부추진계획

※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수행방법(사업대상, 일정, 전략, 활동, 시·군·구 간담회 및 모니터링, 평가지원 및 결과환류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5. 사업추진일정

내용	추진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6.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 사업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결과를 확산하기 위한 방법, 전략 등을 기술

7. 사업수행인력

1) 사업참여인력

구 분	성 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 위	수 행 업 무	참여율 (%)	상근/ 비상근	인건비 수령여부

※ 구분 :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

2) 분과별 전체 수행인력

부문	분 과	세부영역	소속기관 및 부서	직 위	성 명	주요역할

※ 상기 표는 지역별 조직구성에 따라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음

3) 지원단장 주요이력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전공 및 학위	주요경력	연락처

8.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단위 : 원)

비목명	예산액			산출내역	구성비(%)
	합계	국비	지방비		
〈총 계〉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					
...					
...					

제 5 장 부 록

※ 상기 표는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비목구분으로 지역별 예산구성에 따라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음

붙임2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결과보고서

**0000년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결과보고서**

0000. 0

* 계획 수립 시 본 작성서식의 틀과 내용은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되, 지자체 특성에 따라 서식 및 내용은 일부 변경하여 작성 가능

○○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목 차 (예시)

〈요약문〉

1. 사업 필요성

2. 사업목적 및 목표

3. 추진체계 및 전략

4. 세부 추진실적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방향 수립지원, 보건소 성과관리 및 평가·환류지원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지원

시·군·구 현장방문 모니터링 및 환류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미흡평가 지자체 지원강화

사업자문 및 건강증진사업 정보교류 등

시도지원단 회의 및 워크숍 실시

5. 사업추진일정

6. 사업수행인력

7. 예산집행내역

8. 결론 및 제언

■ 요약 문 ■

사 업 명				
사업책임자			주관사업기관	
			직급/직위	
사 업 비(천원)	총 계	국비	지방비	기타 예산
사업기간	20 . 1. 1. - 20 . 12. 31			
사 업 내 용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필요성 ◎ 사업목적 ◎ 세부추진실적 ◎ 결론 및 제언 				

1. 사업 필요성

※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의 요구와 현황을 기술

2. 사업목적 및 목표

※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 및 사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목표를 기술

3. 추진체계 및 전략

※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지원단 조직구성 및 주요기능 등

4. 세부추진실적

※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수행방법(사업대상, 일정, 전략, 활동, 시·군·구 간담회 및 모니터링, 평가지원 및 결과환류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5. 사업추진일정

내용	추진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6. 사업수행인력

1) 사업참여인력

구분	성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수행업무	참여율 (%)	상근/비상근	인건비 수령여부

※ 구분 :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

2) 분과별 전체 수행인력

부문	분과	세부영역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성명	주요역할

※ 상기 표는 지역별 조직구성에 따라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음

3) 지원단장 주요이력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공 및 학위	주요경력	연락처

7.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단위 : 원)

비목명	예산액			산출내역	구성비(%)
	합계	국비	지방비		
〈총 계〉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					
...					
...					

※ 상기 표는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비목구분으로 지역별 예산구성에 따라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음

8. 결론 및 제언

- ※ 사업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 사업결과를 확산하기 위한 방법, 전략 등을 기술

변경승인 요청서

사업명			
사업기관		사업책임자	
총사업기간 ~ (개월)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계
	천원	천원	천원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 5 장 부 록

○ 사업비 변경내역

비목	구분	변경전	변경후	증 감		증감사유
				금액(원)	비율(%)	
인건비						
운영비						
...						
총 계						

부록 6 담당자 연락처

가. 보건복지부

• 총괄부서

구 분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 통합건강증진 사업 총괄	건강정책과	이정우	044-202-2808	ljw6950@korea.kr
		정미희	044-202-2805	heeya02@korea.kr

• 사업부서

구 분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 금연	건강증진과	박종억	044-202-2828	jongeok@korea.kr
		박채령	044-202-2839	yzt1358@korea.kr
• 방문건강관리	건강정책과	이정우	044-202-2808	ljw6950@korea.kr
		정미희	044-202-2805	heeya02@korea.kr
• 음주폐해예방(절주)	정신건강정책과	김혜영	044-202-2861	hykim3@korea.kr
		박귀현	044-202-2866	p20061001@korea.kr
• 신체활동/영양/비만예방관리	건강증진과	강차원	044-202-2821	dykang0331@korea.kr
		윤미라	044-202-2835	ymr3615@korea.kr
• 구강보건	구강생활건강과	이승묵	044-202-2841	sm7573@korea.kr
		노병권	044-202-2842	nebk82@korea.kr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예방과	강성현	043-719-7436	ksh10647@korea.kr
		최수미	043-719-7440	choism7334@korea.kr
• 한의약 건강증진	한의약정책과	하예진	044-202-2576	hyj7144@korea.kr
		박성욱	044-202-2577	sunguks@korea.kr
• 아토피·천식예방관리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예방과	김은영	043-719-7432	azusa17@korea.kr
		유연희	043-719-7442	sunmon100@korea.kr
• 여성·어린이 특화	출산정책과	임희주	044-202-3399	hj88@korea.kr
		김진옥	044-202-3402	jinok90@korea.kr
• 치매관리	치매정책과	배기현	044-202-3532	kihean90@korea.kr
		임여정	044-202-3534	firstim@korea.kr
• 지역사회중심재활	장애인정책과 국립재활원 공공재활 의료지원과	김현정	044-202-3296	bear9125@korea.kr
		이신영	044-202-3297	lsy207@korea.kr
		김윤미	02-901-1656	nrcbr@korea.kr

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통합건강팀

- 안내서 및 계획수립 문의
- FAX : (02) 3781-3589
- 팀 전자우편 : chpd@khealth.or.kr

구 분	담당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 사업운영 총괄	강창범	02-3781-3568	seri@khealth.or.kr
• 사업전반 기술지원	김민정	02-3781-3569	bori6712@khealth.or.kr
	김윤구	02-3781-3596	whiteday69@khealth.or.kr
	이희경	02-3781-3574	gmlrud469@khealth.or.kr

* 본 안내서 파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health.or.kr>) → 건강증진자료실 → 발간자료 → 지침/교육/홍보자료'에서 확인 가능함

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건강증진교육부

- 교육관련 문의
- FAX : (043)710-9218

구 분	담당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 교육사업 총괄	이윤중	043-710-9281	yunjonglee@kohi.or.kr
• 교육전반 기술지원	홍지연	043-710-9283	hongz405@kohi.or.kr
	김다양	043-710-9295	yangkk@kohi.or.kr
	이승미	043-710-9289	lsm130@kohi.or.kr

* 교육관련 정보 및 교육지원에 대한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hi.or.kr) 및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홈페이지(inhealth.kohi.or.kr)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함

라.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문의 : 1566-3232

